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정책자료 2025-06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인구정책연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25-06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https://doi.org/10.23060/kihasa.f.2025.06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2025년 센터 운영 개요 ····· 1

제1절 2025년 과제 개요 ····· 3

제2절 2025년 과제 추진 방법 ····· 4

제2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 9

제1절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 11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계획 ····· 13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별 연구결과 ····· 82

제3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 159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 161

제2절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 168

제3절 인구포럼 운영 ····· 170

제4장 인구정책세미나 ····· 177

제1절 제1차 인구정책세미나((구)인구정책기획세미나) ····· 179

제2절 제2차 인구정책세미나 ····· 201

제3절 제3차 인구정책세미나 ····· 217

제4절 제4차 인구정책세미나 ····· 241

제5절 제5차 인구정책세미나 ····· 274

제6절 제6차 인구정책세미나 ····· 295

제7절 제7차 인구정책세미나 ····· 303

제5장 결론 315
제1절 성과 종합 317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320

표 목차

〈표 1-1〉 연구 영역별 2025년 추진 과제 ····· 3
〈표 1-2〉 2025년 인구정책세미나 ····· 6
〈표 2-1〉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목록 ····· 12
〈표 2-2〉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착수워크숍 개요 ····· 13
〈표 2-3〉 향후 생활인구 활용 관련 정책과제 ····· 92
〈표 3-1〉 본 연구의 장별 지표 구성 ····· 163
〈표 3-2〉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데이터처 주요 통계 ····· 167
〈표 3-3〉 2025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 170
〈표 4-1〉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 189
〈표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후 주요 표어(2006~2013) ····· 190
〈표 4-3〉 시기별 가족계획 표어 ····· 191
〈표 4-4〉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과제수 ····· 193
〈표 4-5〉 2024년 보고서 기준 장별 지표 구성 ····· 217
〈표 4-6〉 15~49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2020~2022년) ····· 220
〈표 4-7〉 15~49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도출한 합계출산율(2020~2022년) ··· 221
〈표 4-8〉 A, B, C 세 지역의 특정 기간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출생아 수 변화 ····· 224
〈표 4-9〉 총재생산율과 순재생산율: 2000~2020년 ····· 227
〈표 4-10〉 사망 연령의 중심(M)과 변이(C50) 추이(2018~2022년) ····· 231
〈표 4-11〉 권역별 인구이동의 효과성: 2000~2020년 ····· 233
〈표 4-12〉 시군구(229개) 인구의 공간적 집중: 2020년, 2023년 ····· 239
〈표 4-13〉 돌봄인력 수급 전망 범위 ····· 244
〈표 4-14〉 주요 돌봄 인력 행정통계 ····· 245
〈표 4-15〉 노인 돌봄 인력 수요 전망 기본모형 ····· 253
〈표 4-16〉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수 및 비율 ····· 254
〈표 4-17〉 시나리오별 요양 돌봄 필요 노인 수와 필요 인력 수 ····· 256

〈표 4-18〉 시도별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수요(필요) 추계 ····· 257
〈표 4-19〉 아동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유형 및 개요 ····· 257
〈표 4-20〉 영유아 돌봄 인력 수급 전망 모형 ····· 262
〈표 4-21〉 2021년 보육연령별 공식 돌봄유형별 이용률 ····· 264
〈표 4-22〉 2022~35년 돌봄유형별 이용자 수 추계 결과(중복유형 반영) ····· 265
〈표 4-23〉 2022~35년 필요 돌봄인력 추계결과 ····· 266
〈표 4-24〉 인력 전망 공급 선행연구 방법론 요약 및 우리 연구 계획 ····· 269
〈표 4-25〉 2024년 돌봄 인력 공급 전망을 위한 모형 ····· 270
〈표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직제 규정 ····· 317
〈표 5-2〉 2026년 과제 편성 ····· 321

그림 목차

[그림 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192
[그림 4-2] 일본 소자화사회대책 백서와 고령사회백서 ····· 193
[그림 4-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197
[그림 4-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198
[그림 4-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199
[그림 4-6]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2014년, 2023년 ····· 228
[그림 4-7] 완전생명표에서의 각 세별 사망자 수(2023년 기준) ····· 230
[그림 4-8] 제주, 경기 전체(위), 남성, 여성(이상 아래)의 전입 기대(2023년) ····· 237
[그림 4-9] 제주, 경기 전체(위), 남성, 여성(이상 아래)의 전출 기대(2023년) ····· 238
[그림 4-10] ADL 1개 이상 도움 필요 노인 비율 ····· 255
[그림 4-11]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 266
[그림 4-12] 주요 돌봄 직종 여성 연령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 271
[그림 4-13] 주요 돌봄 직종 연령별 취업자 진출입 ····· 272
[그림 4-14] 장기요양보험 DB로 본 시도별 성별 5세 단위 요양보호사 취업률 ····· 272
[그림 5-1]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과제 선정 과정 ····· 319

제1장

2025년 센터 운영 개요

제1절 2025년 과제 개요
제2절 2025년 과제 추진 방법

제 1 장 2025년 센터 운영 개요

제1절 2025년 과제 개요

□ 2025년 세부과제 편성 개요

○ 연구과제(16개 과제)

- 인구현상 심층 분석 관련 5개 연구과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관련 7개 연구과제,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관련 4개 연구과제

○ 사업과제(4개 과제)

-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3개 사업과제 편성

〈표 1-1〉 연구 영역별 2025년 추진 과제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연구과제	인구현상 심층 분석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I)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2024년 출생아수 반등 원인 분석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대응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 분석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사업 과제	연보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인구포럼 운영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제2절 2025년 과제 추진 방법

1. 착수, 중간, 최종워크숍 추진

□ 총 20개 과제 중 사업성 과제 4개를 제외한 16개 연구과제에 대해 착수워크숍, 중간워크숍, 최종워크숍을 추진함.

○ 착수워크숍은 2회로 구분하여 진행함.

- 1회는 13개 과제에 한해 원장(직무대행), 연구기획조정실장 등의 참여로 원내외 자문위원 및 공동 연구진의 대면/비대면 참여로 집체식으로 진행
  - 일시 및 장소: 2025년 3월 10~11일(월~화) / 세종실
- 2회는 신규로 개발된 3개 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 주관으로 진행하고, 부서 내 결과 공유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4~5일(수~목) / 다복실, 집현실
  - 3개 과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 중간 및 최종워크숍은 연구책임자 주관 개별 과제별로 진행하고, 부서 차원에서 결과 공유회를 개최, 이후 원장 결과 보고 형태로 진행

- 중간워크숍: 2025년 8월 12~29일 기간 내 자율 개최
- 최종워크숍: 2025년 10월 14~22일 기간 내 자율 개최

○ 각 과제별로 원내외 자문위원 의견 수렴 진행, 워크숍 결과서에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작성

2. 인구정책세미나

□ 개최 목적

○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에서 다루는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확산시키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인구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이는 2022년부터 4년째 진행된 세미나로 인구 변동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및 대응에 대하여 발표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2025년 인구정책세미나는 총 7차에 걸쳐 진행됨. 주제는 인구 관련 지표에 대한 이해와 도출 방법에서부터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됨(〈표 1-2〉 참조).

〈표 1-2〉 2025년 인구정책세미나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와 전망	2025. 6. 18.(수) 1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2	인구·가구추계 모형 개발 현황 및 과제	2025. 6. 30.(월) 16: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3	인구변동 모니터링: 인구통계 및 지표 산출 방법	2025. 7. 24.(목) 1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4	돌봄 인력 수급 전망과 쟁점	2025. 8. 14.(목) 1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5	가족과 출산 조사 변화 과정과 전망	2025. 10. 23.(목) 1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6	인구정책 성과관리의 현황과 쟁점	2025. 11. 13.(목) 1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7	대체출산율(RF)의 의미와 인구학적 함의	2025. 11. 27.(목) 10: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3. 인구정책연구실 워크숍

가. 제1차 인구정책연구실 워크숍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 9. 10.(수), 제주특별자치도 휘슬락호텔

○ 참석자: (직함 생략) 이소영, 황남희, 이윤경, 강지원, 고제이, 박종서, 김은정, 이지혜A, 이지혜C, 최선영, 오신휘, 임지영, 최인선, 황안나, 김은지, 임준경

□ 주요 내용

○ 2025년 인구정책연구실 실 현안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지역인구정책 인식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논의

□ 세부 내용

○ 2025년 인구정책연구실 실 현안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 2025년 하반기 인구 관련 환경 변화 논의 (인구변동, 정책대응, 거버넌스 등)
- 중기 핵심의제 및 연구 추진방향 관련 논의
- 2026년 인구정책연구실 과제 논의
- 기타 건의사항 논의 등

○ 지역인구정책 인식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논의

- 조사 실시의 필요성 논의
-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문항 설계 및 검토
- 지역 인구정책 인식조사를 이용한 인구포럼 실시 계획

나. 제2차 인구정책연구실 워크숍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 12. 18.(목), 공주시 솔향스테이

○ 참석자: (원외) 김근태 교수(고려대), 황선재 교수(충남대)

(원내) (직함 생략) 이소영, 이윤경, 고제이, 우해봉, 김은정A, 김은정B, 이지혜A, 이지혜C, 정희선, 오신휘, 임지영, 최인선, 황안나, 김은지, 임준경

□ 주요 내용

○ 2026~2027년 인구정책연구실 과제 발굴, 향후 인구정책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세부 내용

○ 2026~2027년 인구정책연구실 과제 발굴

- 2026년도 세부 과제 진행 방향 논의
- 2027년 이후 인구 핵심 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연구실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

○ 향후 인구정책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편과 대응 방안
- 조사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 생성형AI의 급성장과 대응 방안

제2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계획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제 2 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 2025년 세부과제 편성 개요

○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내 16개 연구과제, 4개 사업 총 20개 과제 수행

○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내 연구과제는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됨.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연보 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분야임.

-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영역에서는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I)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5개 과제가 수행됨.
-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영역에서는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 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

조 제도를 중심으로',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대응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7개의 과제가 수행됨.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영역에서는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4개 과제가 수행됨.
- 연보 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영역은 사업 과제로,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기반 조성, 정책 사례 수집을 위한 4개 사업과제를 편성

〈표 2-1〉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연구과제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I)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대응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구분		과제명
사업과제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연보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인구포럼 운영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제2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수행계획

□ 연구과제별 세부 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과제의 착수워크숍을 개최하며 발표하였고, 1년간의 연구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였음.

□ 착수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1차) 2025. 3. 10.(월), 11.(화), 세종실
- (2차) 2025. 6. 4.(수), 5.(목), 다복실, 집현실

〈표 2-2〉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 착수워크숍 개요

연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025. 3. 10.(월)						
1	13:00-13:30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우해봉	원내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서영	통계청

연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	13:30-14:00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장인수	원내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3	14:00-14:30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I)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송창길	원외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원외	이가은	한양대학교
4	14:30-15:00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황남희	원내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5	15:00-15:30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박소은	원내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6	15:30-16:00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제이	원내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2025. 3. 11.(화)						
1	10:30-11:00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고숙자	원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최바울	국가통계연구원
2	11:00-11:30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최선영	원내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3	13:00-13:30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이소영	원내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민연경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4	13:30-14:00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김은정	원내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5	14:00-14:30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최혜진	원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6	14:30-15:00	국내 유입 아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김기태	원내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7	15:00-15:30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강지원	원내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황선재	충남대학교

연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025. 6. 4.(수)						
1	15:00-16:00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김은정	원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계봉오	국민대학교
2	16:00-17:00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이지혜	원내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계봉오	국민대학교
2025. 6. 5.(목)						
1	10:00-11:00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분석	이지혜	원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근태	고려대학교

1. 과제별 자문 의견과 반영 계획

가. 인구 현상 심층 분석

□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사회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구(가족 포함) 형태를 아우르는 분석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클 것임.
- 가구 규모와 구성의 변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매우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구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줄 수 있다고 생각됨. 특히 1인가구, 한부모가구, 비친족가구 등은 인구학적 변화와 동거 성향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들(통계청, 전통적 분류, 국내외 연구사례들)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가구 유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특정 인구집단(돌봄 필요 인구집단)을 포함하는 가구(아동 포함 가구, 노인 포함 가구)(2세대 가구 통칭 가능), 1인가구와 다인가구 등 대안적 가구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필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분석'인데, 자료의 한계를 넘어 적절한 분해분석이 수행되어,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구변동의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함.
-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 각 자료를 연계분석하거나 각각의 분석결과를 최소 상호 연계하여 해석해보는 방법도 제안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기존의 다양성 증가 가설이나 가족해체 가설, 나아가 개인화 가설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연구가 전체 인구의 가구구성의 시기적 변화를 다루는 만큼, 이 가설들은 부분적인 설명에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어떤 거대 서사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가구변동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줄 수 있기를 기대함.

○ 반영 계획

-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가구변동을 아우르는 이론이나 가설이 없지만, 다양한 시각에 기초하여 가구변동을 이해하고자 함. 다만, 이 연구는 인과적/이론적 설명보다는 가구변동의 추세나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가구변동의 국제동향 분석에서는 전체 국가(지역)와 함께 OECD 같은 주요 국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검토할 예정임. 가구주 개념에 한계가 있지만, 이차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UN이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
- 가구(주) 개념이나 가구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을 진행하겠음.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구변동의 맥락과 인구학적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볼 예정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다른 자료원을 사용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겠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정보의 일관성이나 비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생활인구는 국가-지방 관계와 주요 지역정책에서 제도적 변화의 핵심에 있는 주목해야 할 대목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명문화가 된 이후, 인구감소지원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재정형평화 수단인 보통교부세에도 반영될 예정임.
- 생활인구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기준이 됨.
- 이런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의 기반이 되는 생활인구 예측모형

을 개발하려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성이 있고 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생활인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수준에서 집계된 생활인구의 결정요인과 지역별 유형화에 초점을 맞춤. 반면 제안된 연구는 50m 수준에서 수집된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우 미시적인 공간단위에서 공간분석 기법으로 생활인구 결정요인 분석 및 예측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지역별 생활인구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고 생활인구를 전망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이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하여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대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공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인구 결정요인의 지역별 차이를 밝히고, 특히 공간 격자 수준에서 수집되는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생활인구를 예측하는 것은 기존 연구보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방법론과 자료활용 측면에서 수월성과 적절성을 가짐. 그럼에도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기를 바람.
- 첫째,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MPSD 자료는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의 내재적인 한계도 명확하게 제시

- 둘째, 생활인구 분석모형 구축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계적인 과정을 도식화여 제시
- 셋째, 독립변수에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변수를 설정하는 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변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
- 끝으로, 기초지자체 단위 외에도 광역지자체 단위의 분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위계적 방식의 분석 모형을 설계하는 것을 검토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생활인구 개념, 선행연구 검토, 생활인구 발생 원인 실증 분석, 생활인구 예측 모형 개발, 지역밀착형 정책과제 발굴 등 연구 내용의 포괄성과 목차 구성이 적절함. 그럼에도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기를 바람.
- 첫째,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고찰에서 기존 정주인구 개념과의 비교 관점에서 특징과 가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시되, 생활인구 개념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한 균형감 있게 정리해주시길 바람.
-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외에 국토부(도시재생정책), 농림부(농촌협약 사업 등), 해수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행안부(지역사회 활성화 추진, 청년마을 만들기 등) 또한 검토를 고려해주시고, 특히 2026년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또한 생활인구 관점에서 검토
- 셋째,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수급 등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서 변화 또한 살펴봐주시기를 요청

- 끝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정책 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증적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공간분석 기법 활용이 방법론 측면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정책활용 가능성)
  - 생활인구와 관련된 지역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에서 지역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추가 의견

-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 100m X 100m 격자 수준이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활인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라 생각함.

- 그런데 이때 고려할 점은 공간 데이터의 분석단위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임.
-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공간 단위로 설정할 경우, 자치행정의 최소 단위로서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분석 단위에 대한 의문이 적을 수 있음.
- 반면 100m X 100m 격자 단위의 공간자료를 쓰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격자의 크기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진다면 분석 단위 선택의 당위성과 정책시사점을 설명하는게 어려워질 수 있음.
- 왜 100m X 100m 격자가 공간 자료의 scale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음.

- Multicollinerity
  - 100m X 100m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WR을 시행할 경우, 횡단면 관측치가 400개를 넘어서 각 cell별 local regression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100m X 100m 격자 수준에서 측정된 outcome과 predictors의 variation이 인접한 cells을 비교할 때 크지 않다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cf. GWR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 심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추정된 local parameters의 방향이 + 와 - 모두 나타나고 계수값이 양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임.
  - 더 세밀한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분석할 때,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지만, 계산 시간이 길어지고 분석결과가 민감해질 수 있다는 비용이 있으므로 편익-비용

간 trade-off를 고려해서 공간데이터의 scale를 고민해보면 좋겠음.

- 생활인구 예측모형의 validation과 함께 시나리오별 값의 변화도 설명하면 좋겠음.
  - 생활인구 예측모형의 예측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predictor에 의해서 생활인구의 예측값이 크게 바뀔 수 있는지, predictor로 통제된 변수가 미래 전망치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생활인구 예측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해도 좋겠음.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 상주인구를 사용할 때에 비해, 생활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교부금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지 확인하면 좋겠음.

○ 반영 계획

-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가 띠는 내재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독자의 가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 모형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서에 언급하도록 하겠음.
- 독립변인과 관련하여,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음.
- 생활인구 개념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한계점과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균형있게 논의를 전개하겠음.
- 행안부 이외 관련 부처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을 생활인구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전망결과에 대응

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광역지자체 단위의 분석 및 관련 정책적 함의(정책 추진 주체 및 역할 등)는 당초 연구를 설계하고, 구상할 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현재의 다양한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고려하겠음.
- 추가의견과 관련하여, MAUP을 고려한 격자 단위 데이터 resolution 변경, 다중공선성 문제, 시나리오 값의 변화, 보통교부세가 생활인구 기준으로 배분되는 경우 지역 격차 변화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에 반영하겠음.
- 원시자료의 해상도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음.
- 격자/읍면동 단위에서의 분석 결과와 정책 도출 간 유기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견지하겠음.

□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Ⅰ)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인구추계 도구 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함.
- 인구추계결과는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충분히 공감함.
- 기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모형의 개선과 활용 두 가지 모두 중요하고 이를 통해 통계청 인구추계와의 차별성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수요 파악을 위해 인구추계는 필수 요소이며 기존의 통계청 인구추계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의 인구구조 파악으로 정책분석하기에 용이할 것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인구추계에서의 한계연령을 보다 확장한다는 점, 저출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출산 시나리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MSM에 연계하여 구축하므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임.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면, 기존의 인구추계 결과와 달리, 출생코호트별 추계 결과를 제시하면 보다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됨.
- 건강 수명 관련하여, 건강 보험 또는 민간 보험사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으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계연령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세 이후의 밀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함.
-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경험생명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적절해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인구추계에서 기본적인 3가지 요인 중에서 출산과 사망을 다루고 있는데, 남은 한 가지 요인인 이동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으면 좋을 듯함(후속 연구로라도 다루면 좋을 듯함).

- 활용 가치가 높은 인구추계 모형을 구축해 놓고 보다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MSM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예상 연구 목차에서 2장과 3장은 인구추계 자체에 해당하고 4장은 활용에 관한 부분으로 다소 이질적임.
  - 1부에서는 기존 모형 개선을 포함한 인구추계 자체로 구성하고, 2부에서는 MSM을 포함한 활용을 다루는 구성해 볼 수도 있을 듯함.
- 2장과 3장을 각각 이론적 검토와 방법론 개선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출산력, 사망력, 건강수명 및 노동수명으로 주제별로 담으면 편리할 것 같음.
- 서론에서는 기존의 통계청 방법론과 다른 새로운 인구추계를 구축하는 이유와 그 방향성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한계연령을 확장하는 점과 건강수명과 노동수명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음.
- (정책활용 가능성)
  - 다양한 출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MSM 모형에 연동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정책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함.

○ 추가 의견

- 통계청 모형의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 출산력과 사망력 전망이 핵심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130세까지 연장하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건강 수명과 노동 수명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인구 추계와 다소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며 MSM 연계의 논리성이 필요함.
- 보고서 평가는 통계청 모형 대비 도출된 모형이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외부연구진들의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연구책임자가 출산력과 사망력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기존 모형들 대비 좀 더 정확한 혹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반영 계획

-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령별 횡단면 분석과 함께 코호트별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건강수명 관련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음.
- 본 연구는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연구로 설계되었으나, 국제이주 및 국내이동을 다루는 후속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 목차 구성에 있어 보고서의 분량을 고려할 때 1부와 2부로 물리적 구분은 하지 않되, 장의 구성과 흐름을 개선하여 인구추

계 모형 자체와 MSM 연계 활용 부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음.

-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한계연령 확장(130세)과 다양한 출산 시나리오 구축에 있으며, 기존 100세 한계 모형에서 확장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정책 대응에 필요한 추계가 가능해질 것임. 또한 출산패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MSM과 연계하여 미시적 차원의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통합적 접근법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겠음.
- 100세 이후 생존확률의 밀도 설정은 추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Coale-Kisker 방법론 등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고 국내 초고령층 사망률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음.
-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경험생명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음.
- 2장과 3장을 출산력, 사망력, 건강수명 및 노동수명이라는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내용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서론에서 통계청 방법론과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겠음.
- 초저출산 상황에서 출산력 전망 방법론의 차별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한계연령 확장(130세)에 관해서는 정책적 활용도와 실질적 기여도를 재검토하여,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음.

- 건강수명과 노동수명이 일반적 인구추계와 별개의 개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사망력과 정합성을 갖춘 건강수명 및 노동수명 추계는 보건복지 정책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이 부분이 기본 인구추계 모형 개선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적 추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음. 특히 MSM과의 연계가 단순한 기술적 결합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인구변동을 둘러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출산율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로 이해됨.
- 혼인상태 이행, 출산순위 이행 등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요인을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출산율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최근까지의 발전 상

황을 고려하는 차별성을 보임.

- 분해분석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혼인상태 및 출산순위 이행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전이확률 행렬을 활용한 출산율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인구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자료를 사용하며, 분석 방법 또한 최근까지의 방법론적 발전을 충실히 반영함.
- 계획서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전이확률은 센서스 자료와 인구동태 자료를 결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보임.
  - 센서스가 시행된 2010, 2015, 2020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센서스 사이의 연도의 경우에는 사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연령/혼인상태/출생아 수별 사망률을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물론 가임기 여성의 사망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망을 고려하지 않아도 추정치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센서스 시행 연도와 그렇지 않은 연도의 추정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혼 출산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얻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음. 추정치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 smoothing 등)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기간(5월~12월) 제한적인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됨.
- 분석 대상 기간을 2000년대 이후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선행 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과도하게 복잡한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인구동태율이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 구축이 바람직함. 예컨대, 혼인확률과 이혼확률을 고정시키는 대신에 집단별로 세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5장의 합계출산율 분석과 6장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가 연계되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혼인상태 변동과 출산순위 변동을 고려한 본 연구의 출산율 분석은 매우 포괄적인 연구라고 판단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새로운 인구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 변화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마르코프 전이확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활용 가능성)
  -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 정립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혼인상태 변화와 출산순위 이행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추가 의견

-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면 함.

○ 반영 계획

- 분석 대상 기간을 2000년대 이후로 확대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강조하겠음.
- 혼인확률과 이혼확률을 연령별, 자녀수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방법 검토하겠음.
- 5장 합계출산율 분석과 6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가 매끄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 및 구성을 보완하겠음.
-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센서스 데이터가 실시되는 2010년, 2015년, 2020년만 분석함. 그리고, 내부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 연도를 2000년, 2005년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비혼 출산율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혼 출산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추정치의 안정성을 검토하겠음. 분석 결과, 두 방식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비혼 출산을 포함한 값을 제시하고, 차이가 클 경우에는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비혼 출산을 제외한 값을 중심으로 제시하겠음.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출생아 수가 2024년에 들어 반등한 현상에 주목하여, 해당 변화의 원인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음.
  - 2024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반등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나타난 현상으로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현상임.
- 단, 여전히 매우 낮은 출산율 수준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반등이 일시적인 변동(fluctuation)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출생아 수 반등 자체가 새로운 현상임.
- 기존 연구가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최근 변화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인구구조 요인과 행태 요인을 분리하여 반등의 성격을 규명하고, 혼인·출산 이행 과정과 정책·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기존 연구와 구별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에코붐 세대의 30대 초반 진입에 따른 출산 증가가 인구 효과

를 넘어 행태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코호트의 출산행태 변화는 향후 출생아 수 추세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 출생아 수 분해분석(인구변화+출산율)은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함.
- 1,000명 규모의 서베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항목을 수집하게 될 것인데 사회조사나 출산력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음.
  - 기존 자료를 분석하거나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
- 4장의 내용 중 거시동태모형 구축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의 시계열 분석, 인구 요인과 행태 요인의 분해 분석, 코로나19 기저효과 검토, 인식 변화 및 정책 효과 분석, 출산율 설명 모형 구축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 설계의 논리성이 확보됨.
- 2024년 출생아 수 증가가 단순한 양적 반등인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계층별(소득·교육), 교육, 직업별 차이를 중심으로 반등의 이질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특정 집단에 국한된 현상인지, 확산 가능성을 지닌 변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혼인 증가,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 상승, 정책 및 인식 변화 등 반등 요인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요인별 기여도를 비교·정리함으로써 정책 개입이 유효한 지점과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가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 조합 설계로 연결되도록 명시적 정리가 필요함.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을 인구변화, 출산율 변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파악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음.
- 4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최근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출산력 변화 연구의 시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는 연구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함.
- (정책활용 가능성)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인구구조, 혼인·출산 행태, 인식 및 정책 요인을 결합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변화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추가 의견

- 설문조사에서 출산 시점의 결정/지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존 조사들과 차별점 강조 필요(결정/지연요인을 1-10까지 점수화 등 고려)

○ 반영 계획

- 기초분석에서 교육수준, 직업별 분석 등 포함, 보고서 구성 상 지역별 분석은 차기 연구에서 고려 예정
- 심층분석에서 각 요인별 영향력 확인, 출산결정모형에서 종합적으로 요인별 영향을 확인하고 중점 정책방안 등에 대한 함의 도출(전문가 자문 등 추진 예정)
- 30대 초 코호트의 인구요인과 출산행태요인을 분석하여 제시 예정,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가능부분 확인 예정
- 기존 조사들을 활용하되, 2024년 출산/혼인/임신 결정에의 영향요인(인식변화,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 형성 등) 식별을 위한 설문 구성 계획
- 인구동향 보도자료 중 집계변수를 활용하되, 10월 미시자료 공개 시점에서 분석 결과를 보완
- 심층분석은 2023년까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형식으로 제시
- 기존 조사들을 활용하되, 2024년 출산/혼인/임신 결정에의 영향요인(인식변화,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 형성 등) 식별을 위한 설문 구성 계획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형 구체화 예정(연도별/연령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코로나19, 정책적 요인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24년 추세 변화 확인)

- 기존 조사들을 활용하되, 2024년 출산/혼인/임신 결정에의 영향요인(인식변화,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 형성 등) 식별을 위한 설문 구성 계획

나.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전국적 수준에서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뚜렷한 점에 대해 지역 수준에서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되며 이러한 문제제기와 접근방식에 매우 공감함.
  -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 출산 관련하여 주로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 수준의 소득, 일-생활 균형과 보육인프라 등 노동시장 조건이나 보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가족형성 여건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판단됨.
- 통상적인 접근과 달리,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남는 이들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중에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이들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이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본 자문자가 볼 때 연구자는 결혼, 출생의

문제는 단순한 노동시장 조건이나 보육제도 등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 중요하게는 가족형성의 젠더관계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보임.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이 연구의 핵심 측면이자, 이 연구가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제기하면 좋겠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지역 단위에서의 가족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고, 노동시장 조건이나 보육제도,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저출생문제에 접근하려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젠더관계의 측면, 구체적 지역과 가족 단위에서 전개되는 젠더관계의 측면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독창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고 있음. 양적 연구로 전국 15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와 개별 지역수준 조사자료들을 결합하여 다양한 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기반하여 전형적인 사례분석 시군을 도출할 계획을 제출하고 있음. 질적 연구로는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려 하고 있음.
- 시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단위 조사자료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

다지 중요한 의미를 찾기 힘들어 보이는 양적 조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지, 분석을 통해 원하는 소기의 분석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해 보임. 차라리 통계분석을 최소화하고 몇 가지 지표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례 몇 개를 선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분석의 효율성과 더불어 이 연구의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양적 연구는 해당 지역 사례의 질적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해당 지역 사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를 동원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 측면에서 사회지표를 통한 분석은 최소화하고 질적 연구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질적 자료수집과 관련해 다음의 방식을 검토하시길 바람.
  - 첫째, 질적 연구 설계를 위해 단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탐색적 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1차적으로 한 후에 보다 체계적인 질적 연구의 대상과 질문의 내용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드림.
  - 둘째, 지역을 사례로 할 때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보다는 광역단위 혹은 초광역권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의 실질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 셋째,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연구이므로 해당 지역의 주요대학과 학과별 졸업생을 조사 대상자 풀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함.

- 끝으로,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어떻게 방법론을 통해 접근할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질적 분석 결과물의 형태에 대해서도 구체화가 필요함(예: 가족형성 사례의 유형화 등).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이 연구에서 핵심 개념인 가구 성별분업과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구조 등과 관련된 상세하게 논의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정교화하여 가능하다면 지역 단위에서의 가족형성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기를 바람.
- 사회지표와 관련된 분석은 지역 현황 혹은 배경 정보 수준에서 다루고 가능하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림.
- 예상목차를 보면, 2장과 3장 두 개 장에 걸쳐 양적 분석을 수행하고 4장에서 지역 사례연구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적 분석을 최소화하고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2, 3장에 걸친 양적 분석을 하나의 장으로 합치거나 심지어 양적분석을 제외해도 좋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4장 사례연구의 경우 A지역, B지역, C지역을 각각의 절로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아예 사례별로 별도 챕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비교범주별로 별도 챕터를 구성해서 서술하는 것을 권고드림. 아직 사례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조사 주제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연구자들이 논의해서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지역의 노동시장과 가족의 성별분업에 대해 젠더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오늘날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 젠더관계적 접근, 나아가 지역별, 가족별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학술적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활용 가능성)
  - 기존의 저출산 정책수단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 관점에서 보완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단지 노동시장 조건이나 주거, 보육인프라 등에서 찾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가족과 젠더 관계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영 계획

- 지역 수준의 (양적) 분포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양적 분석을 두 개의 챕터로 구성하였으나, 본 과제를 다년도 과제로 진행할 경우, 양적 분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함.
- 지역 수준의 통계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자료의 질적 연구와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 방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음.

- 연구 진행 과정 전반에 가족형성의 젠더관계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장의 선명성을 더욱 과감하게 강조하겠음.

□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기존 저출생 정책은 출산축하금, 양육지원비 외에도 임신지원을 위한 난임 및 무료건강검진(산전검사), 건강교실, 영양제 지원 등이었음. 즉, 출생을 위한 사전지원에 집중되었음. 하지만 착수보고서에 작성해준 바와 같이 분만 후 50~70% 산모에게 경증 산후우울감 발생, 산모 8~20% 산후우울증 경험, 최근 5년(2019~2022) 산후우울 환자 수 17.6% 증가 등 통계적으로 본 연구 필요성이 확인됨. 출산여성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산후우울증 환자는 54%로 급증), 적극적 예방책과 임신 및 출산 전 과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건강과 아동 성장발달 영향요인으로 산모의 우울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 생각됨.
- 나아가 2023년부터 정부는 14개 광역, 54개 기초지자체 보건소 대상 '생애초기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2024년 시행 중간점검을 통해 보다 촘촘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세부적으로 해당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근거로써 산후우울증 실태파악 및 사업성과, 세부지원방안 방안 연구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산후우울감을 포함한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고, 2020년 시행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연구자가 착수보고서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15~2020년 보건소에서 산후우울 선별검사산모 10~12%가 이미 10점 이상의 고위험군 판정결과에서 산후우울 범위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산후우울감+우울증을 포함하는 본 연구범위 설정 필요성에 100% 동의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가족과 출산조사', '산후조리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산후우울감을 포함한 산후우울증의 현황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질적면담을 통해 정량자료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연구하는 현 연구방법론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정량데이터 분석을 위해 [산후 정신건강 데이터 현황] 분석계획은 적절함. 우울수준 분석을 통해 우울감과 우울증을 비교분석, 폭넓게 표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해당문항 응답자에 대한 샘플수, 지역분배, 조사시점, 문항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5개 데이터 중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할지 기대됨.
  - 개인적으로 본 연구 심층면접 대상자 역시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로 설정하고 있듯이 [산후조리실태조사]보다는 [한국아동패널조사]가 출산 이후 우울수준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문항 다양성은 [산후조리실태조사]가 높기 때문에 고민 필요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산후우울 관련 지원 사업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이외 산후우울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림.
- '산후우울 관련 지원 사업' 고찰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4장 산후우울 관련 지원 사업'은 5장과 6장 뒤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현재 산후우울과 관련한 공식적인 국가통계가 없는 점, 자료원에 따라 산후우울 관련 통계수치가 상이함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산후우울통계치가 제시되었으면 함. (같은 자료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령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산후우울증 환자 유병률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석코드를 사용하였느냐, 또는 산후우울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유병률은 상이함. 산후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질병분류기호 포함 여부에 따라 발병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임. 가령, F53.0와 O99.3을 주상병으로 보느냐,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코드(F31-34, F38-39, F41.2, F53)로 보느냐에 따라 유병률은 달라짐)
- 목차만 본다면 본 연구는 산후우울의 전반적인 실태보다는 '산후우울 영향 요인 및 산후우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 본 연구 제목이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점에서 5장의 제목을 '산후우울 현황과 산후우울 결정요인 분석' 등, 산후우울 현황을 포괄하는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림.

- 심층분석 조사 대상을 출산 후 3년 이내의 산모로 정의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에 출산 여성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최근 남성의 산후우울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성의 출산 직후 남성의 역할이 여성의 산후우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산후우울도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림.
- 전체적인 연구목차 구성에 동의함. 다만 본 연구는 정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성과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논의가 충분히 소개되어야 된다고 의견드리고 싶음.
- 특히 해당사업(14개 광역, 54개 기초지자체 보건소)의 시도별 사업추진 지역현황이 논의되었으면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저출생 최전선 지역으로 매년 1,700억 원을 출생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음. 대부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당장 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태백시에서만 유일하게 2023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100만 원 지원(산모 출산용품 및 산후우울증 예방관리비용)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시행 중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만 산후우울에 특화하고 있지 않음. 이는 산후우울에 대한 인식이 미흡에 따른 산후우울증 경험자의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부산과 광주, 전북, 인천 서구, 충북 진천군 등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산후(8주 이내) 우울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 '산모 산후우울증 관리(비예산)'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출생아 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력 필요함. 특별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저출생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대해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산모우울 및 정신건강사업 대상지역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함.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하지만 해당사업이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차 정책점검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 및 고려해 주길 부탁드림.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산후우울의 개념, 이론적 배경, 산후우울 영향 요인 분석을 다룬 최근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클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정책보고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목차 구성상 산후우울증 개념 및 영향요인, 척도 등은 이론 검증 측면에서 매우 기여도가 큼.
- (정책활용 가능성)
  - 산후 정신건강 증진의 정책방안 마련 및 정책개선을 위한 근

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점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및 지속성, 세부사업내용 보완 등에서 매우 유익한 연구임.

○ 반영 계획

- ‘산후우울 관련 지원 사업’ 고찰 범위를 확대하고, 장 구성을 반영하여 재고하겠음.
- 유병률을 자세하고 다양하게 산출하고자 함.
- 심층면접 대상에 출산 여성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구성하겠음.
- 활용 데이터로 문항 다양성이 높은 [산후조리실태조사]를 고려하고자 함.
- 제안해 주신 부산과 광주, 전북, 인천 서구, 충북 진천군의 임산부, 산후(8주 이내) 우울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 ‘산모 산후우울증 관리(비예산)’ 사업에 대해 정리하겠음.

□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이 연구는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지원 환경변화를 시간지원제도 활용측면에서 검토하고, 시간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단축근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부모급여가 2023년에 도입되어 3년차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부모 급여의 다양한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의의가 충분히 인정됨.

- 부모급여와 시간지원제도 이용 양상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연구 제목이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보기에는 어려움.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음. 주로 일가정양립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돌봄 정책 및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음. 특히 아직까지 부모급여 성과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 연구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함. 이 연구는 부모급여 정책이 양육환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연구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등 적절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정책 이용 현황과 효과를 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1,500명 조사 규모는 충분한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사 설계 시 이런 점을 잘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시간지원 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에서 부모급여, 시간지원제도 이용 외에 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의 내용 및 목차 구성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음. 향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할 내용으로, 서비스-현금-시간지원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균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세심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 사회의 정책 환경에서 이 균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은 많은 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 방안에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세심히 검토하여야 함. 부모 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첨을 둘 것인지, 시간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현금-시간지원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모급여의 영향력과 시간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진 연구로 판단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연구 계획에 따라서 적절히 분석이 진행된다면,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부모급여가 시간지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분석하면, 관련 정책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추가 의견

- 연구범위의 축소: 시간지원제도 중 육아휴직제도에 초점

- 기존 데이터의 활용: 일가정양립실태조사는 사업체 대상 조사이기때문에, 경활 부가조사 검토하는 것이 적합할 것

○ 반영 계획

-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현금/시간지원제도/서비스의 범위 제시
- 시간지원제도의 활용 양상, 관계, 양상 또는 격차 요인 등 분석 방향의 구체화
- 부모급여와 시간지원제도 관계 분석에서 장기적인 제도 설계와 정합성, 재원 연계성 고려
- 기존 통계자료의 검토(고용보험 DB,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경활 부가조사 등)
- 신규 조사 실시시 다양한 영향요인 검토 및 표본의 대표성 고려
- 선행연구 검토시, 해외사례 분석은 최소화하고, 한국의 정책 운영방식에 집중하여 분석
- 부모급여/시간지원제도 중 초점화 하여 개선방안 도출
- 신규 조사 실시시 다양한 영향요인 검토(부모급여 특례제도, 다른 시간지원제도와의 복합적 사용패턴 등)
- 활용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와 세부 변수 검토

□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지역 인구감소와 보육시설 접근성 격차와 이에 따른 현행 보육시설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

출하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필수보육시설’은 지원 방안의 하나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필수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하여 보다 연구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책 변동으로 인한 어린이집 정책 변동 사항을 잘 추적하여 연구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농어촌 지역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지역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차일드케어 데저트(Childcare Desert)과 필수 보육시설에 대한 개념 등을 도입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단순한 지원금 지급 분석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에 특화된 차등 지원 모델(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어린이집 폐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4년 도입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림. 해당 사업은 보육 품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지원 대상을 700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시간제 보육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하고 있음. 지원 내용으로 어린이집 1개 반당 최대 월 140만원의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최대 700만 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진단 컨설팅(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등), 동행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임.

-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분석을 수행하며,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GIS 등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계획되었음.
- 다만 또 다른 영유아 돌봄기관인 유치원을 포괄하여 연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 연구에 포함하는지 등을 고민해 볼 것.
- 향후 조사 수행에 있어서 부모 설문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주요 연구내용으로 지역별 보육수요를 분석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내용은 보육시설 공급실태 분석으로 "정원충족률"을 살펴봄. 시설 보육이 필요한 또는 시설 보육을 원하는 아동의 수가 보육수요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사막(child care desert) 개념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역에 50명 미만의 아동이 없다면 보육시설사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개념에서는 child care provider라고 되어 있지 시설보육이라고 정의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5세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이 가정보육 대신 시설보육인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육수요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형평성, 균등한 교육 및 돌봄권은 보육의 질과도 관련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단순 읍면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으면 함.
- 재정지원 이외에 폐원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 등도 함께 다루면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기존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단순한 물리적 공급과 효율성 분석에 집중했으나, '필수보육시설' 개념, 선정 지표화 등 새로운 보육정책 연구의 틀을 제시하여 학술적 기여도가 큼.
- (정책활용 가능성)
  - 저출산과 지역 인구감소라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보육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필수보육시설 지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기타 보육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과 연계할 수 있음.

○ 추가 의견

- 법률상 보육시설이라는 단어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용어 검토 필요

○ 반영 계획

- 연구의 목적을 보다 확대해서 제시하고, 서울 동행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음.
- 보육수요의 측면은 1~6세 아동 수로 파악할 예정이며, 실제

해당 연령의 아동이 보육을 원하는지는 자료의 한계상 분석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며, 보육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보강하겠음.

- 보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단순 읍면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겠음.
- 재정지원 이외에 폐원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포함하고, 용어 검토를 수행하겠음.

□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21세기 인구 변화에서 국제이주 확대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임. 한국에서도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지역특화비자와 같이 지역에서 정주외국인을 유인하는 제도가 등장하는 등 이민정책의 정책환경과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이 아닌 이주민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권 제고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이주민 사회권 현황과 근거 등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주배경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1세 인구가 고령, 2세 인구가 성인기로 진입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회권 제고방안 연구는 시급하고 연구의 목적 또한 적절함.

-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비자(E-9, H-2)는 귀국을 전제로 하고 국내체류가 취업과 연계됨. 따라서 고용허가제 적용 집단은 구직기간(3개월 이내로 제한됨) 또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권리구제 기간 취업비자가 아닌 임시체류비자(G-1)로 체류함)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 공공부조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고용허가제 등 취업을 전제로 한 임시취업비자 적용집단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 외국국적 동포는 이주민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포비자(F-4)로 정착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난민의 경우 그 수가 1500여명에 불과한 난민인정자 외에 인도적 체류자와 난신청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주민의 사회권 관련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이주민 집단 또는 특정 분야를 한정하여 이주민의 사회권 문제를 파악하였음.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수급권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도깊은 이론적 고찰과 비교사회정책적 검토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현상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을 아우르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이주민의 사회보장 수급권리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목적에 적합하에 문헌 분석, 2차 자료 분석, 해외 사례 분석 등으로 연구를 구성함. 국가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시도하기 위해, 이후 연구 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국가별 분석대상의 범위(이주민 범주, 공공부조의 범위, 수급권 보장의 구체화된 요소 등)를 체계화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함.
- 공공부조에 관한 해외 사례연구는 영국의 무상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등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전반적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연구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주민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술한 것처럼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사회보장제도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 연구는 국내 이주민 중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집단으로 고용허가제 적용 집단, 난민,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이 연구가 변화하는 시민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이주민 포괄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집단을 제한하기보다는 사회적 인정 가능성, 장기체류 여부 등의 부분을 고려하여 미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으로 정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 특히 국내 공공부조/사회서비스(사회보험 제외)의 제도 상의 수급권 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민을 구분해보자면 난민, 영주권

자,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난민신청자 등으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외국인근로자 내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음.

- 다음으로, 연구계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공공부조로 한정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인 범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고서에서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공공부조가 기여 기반이 아닌 세금 기반의 제도이고 가장 기초적인 보장이라는 점과,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이주민 보장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 등의 설명 추가가 가능해 보임.
- 또한 국가별 분석에 앞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제도의 자격 기준까지만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수급권 보장까지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지막으로 복지체제 또는 이민체제별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는 대륙유럽국가 사례를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륙유럽국가이고 이주민에 좀 더 포용적인 사례인 프랑스를 포함하면 어떠할지 제안함.
- 해외 사례에서 난민신청과 임시체류(난민 신청 거절) 등이 한 범주로 묶일 수 있음.
- 난민은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제도 접근성에서의 어려움 발생 가능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에서도 세금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수

급권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해외국가의 제도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음.

- (정책활용 가능성)
  - 향후 국내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관련 정책적 논의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관성과 목적적합성 있는 정책 부재 상황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활용 가능성 높다고 봄.

○ 추가 의견

- 이주민 사회보장 수요와 실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왜 공공부조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 정책이 퇴보하는 사례도 연구하기를 당부함.

○ 반영 계획

- 연구 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범주와 사회보장제도의 범주에 대해서 연구진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보고서에서는 그 근거를 적시하도록 하겠음.
- 연구 대상 집단을 취약 집단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숙지하도록 하겠음.
- 연구에서 대상 제도를 공공부조를 한정하는 이유는,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한다는 점 외에도 이주민의 제도 적용에서 가장 논쟁적이라는 점도 고려했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공부조로 대상 제도를 한정한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겠음.

- 국가별 분석에서 제도적 기준과 더불어 실질적 수급권 보장 실태까지 보기 위해서 통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음. 분석틀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 난민신청자와 임시체류자도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프랑스 사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 연구 대상 그룹을 체류 자격에 따라서 나누고, 어디까지를 포괄할지에 대해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연구진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음. 보고서에 그 근거를 적시하도록 하겠음.
- 영국의 NHS 등 공공부조를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까지 포괄할지에 대해서도 연구진과 협의해서, 그 근거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자문위원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연구 과정에 인사이트를 받기 기대함.
-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의 진전과 후퇴, 그 이유에 대한 해외 경험 살펴보겠음.

□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대응을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미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를 초래할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저출산 대응 과제는 하나의 분야나 부문,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이고 다부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재정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재정 규모에 대한 파악은 재정성과평가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 2025년 현재, 한국의 저출산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 대응(특히 재정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저출산대응 재정전략'을 다루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음. 특히 정부의 저출산대응 예산뿐 아니라 예산 집행을 둘러싼 거버넌스까지 함께 고려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필요해 보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자료 기반 집계와 함께 국가재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재정 중 관련 예산을 추가함으로써 재정 현황 파악이 보다 포괄적이고 국가 책임양육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함.
- 급변하는 인구 현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다수 수행되었음.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인구 변동 전반이 아닌 '저출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다수의 선형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임. 다만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1) 저출산 예산 범위의 실효성 있는 설정 및 2) 저출산 예산의 효율적, 효과적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은 특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두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자료 분석, 전문가 포럼으로 구성됨. 저출산 대응 사업과 관련 예산이 방대할 수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 방향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전

문가 포럼을 통한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

-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당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잘 알려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함. 다만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이 저출산 대응 재정 현황 파악과 성과 평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전략 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히 포괄적임. 단년도 과제로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내용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과 연구 결과들의 연계를 무리없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배포된 자료에 구체적인 목차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저출산대응을 위한 효과적/효율적 재정 정책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적절히,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함.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학술적인 관점에서 저출산대응 정책 및 예산의 효과성을 보다 적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근거가 되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정책활용 가능성)
  - 애초에 정책적 개선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저출산대응정책, 나아가 인구대응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높아 보임.

○ 반영 계획

- 장별 구체적인 연구질문과 결과로 초점을 정리하고자 함.
  - 특히, 1) 저출산 예산 범위의 목록화와 총량 규명, 2) 저출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적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3) 저출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과를 위한 재정 전략으로 구성할 예정임.
- 인구구조, 인구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직접 생산할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
  - 1)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정책 범위, 2) 저출산 영향 요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도출할 계획임.
  - 2)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현재 OECD는 2019년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는데, 향후 2022년까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임. 이에 맞춰 연구자료의 활용 등을 보완하겠음.
  - 3) 목차는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겠음.

□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 분석**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2021년 개편된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임.
- 저출산 관련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고 보여지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생각됨.

-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혼 여성과 남성의 혼인 및 출산 과련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새롭게 개편된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됨. 혼인상태와 성별 측면에서 기존 출산력 조사와 구분됨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의 확대 개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미혼 여성과 남성까지 분석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6개의 연구 주제 중 "임신출산의 보건의료적 경험과 추가 출산 의향", "일가정 양립 실태와 추가 출산 의향". "자녀 양육비와 정부지원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등은 여전히 기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연구 주제인 것으로 보여짐.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혼인과 출산 관련 다양한 이슈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주제 간 분석 수준이 균형을 이루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혼인과 출산 '의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의향'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가족과 출산 조사가 횡단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고 문항들이 존재하므로 사건사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혼인과 출산의 결정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며, 전체적인 내용 구성 또한 짜임새 있다고 생각됨.
  - 특히 주요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도출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였다는 점이 평가됨.
- 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 의향 분석에서는 미혼 남녀뿐만 아니라 기혼 남녀를 함께 분석하여 세대(코호트)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 이동 분석에서도 실제의 생애 사건(결혼)에 추가하여 '의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른 주제들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서론에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면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심층 분석 과정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후속 조사 과정에서 재검토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저출산 관련 이론적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활용 가능성)
  -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혼인 및 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선정된 주제들이 모두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 입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

- 계획임신에 대한 분석에서 미스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가치관이나 성평등 부분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니, 대상자를 20~30대로 좁혀서 분석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음.

○ 반영 계획

- 분석 수준에서 장별로 1절은 기초분석을 기술하고, 2절은 심층분석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서 수준을 통일하도록 하겠음.
-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분은 추가출산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이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출산시기에는 이동이 거의 없어 결혼시기를 중점으로 분석하려고 함. 그 밖에 다른 주제는 횡단면 자료의 한계로 혼인 및 출산 의향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연구진 간의 조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기혼남녀, 코호트 분석, 지역 이동에서 결혼 의향에 대한 분석 추가 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음.
- 서론 부분에는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추가하고, 결론 부분에는 후속 조사를 위한 검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도록 하겠음.

- 가족과 출산조사가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남성과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기혼 여성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 각 연구 주제별 분석방법 및 사건사 분석 등에 대한 기법 등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연구진 간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제안해 준 분석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고, 가치관과 성평등 부분 분석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에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다.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매우 급격하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부문인 기업의 대응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 과제로 판단됨. 정책적으로 고령자 고용 기업에 보조금(또는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에서 정책적 지원과는 별개로 선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기업의 입장에서 인구 고령화는 근로자의 고령화, 생산성 둔화, 인력수급 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기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고령

사회 대응 방향에 관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관련 정책 발굴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기업의 고령화에 대한 활동과 대응이 법령, 정책 등 비자발적 책무성에 기반하고 있는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 기여 활동의 일환인지 “고령화와 기업의 포지셔닝” 확인이 연구의 출발이 되면 좋겠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선행연구는 고령자의 고용 또는 소득 관련 특정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거나, 기업 측면에서는 인사관리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됨.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고용’ 부분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 범위를 고루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고령화 급진전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많지 않고, 고령자 고용정책, 퇴직연금 등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는 의미가 큼.
- 기업과 고령사회 대응 관련 연구범위와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나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업 관계자 대상 FGI, 사례연구 등의 연구 방법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

는 정책(영역) 범위를 좁히고, 해당 정책 범위에 대한 기업의 현 상황을 FGI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기업의 규모, 업종별로 대응 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떤 특성의 기업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또한, 각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사례연구는 국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되, 국내에서 유의미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시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연구범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 제약요인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도출하여 연구대상과 내용이 명쾌함. 다만,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타 법령, 타 계획 등의 포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우수사례 분석(유형, 대상, 효과 등)은 현재 혹은 향후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활동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정년 혹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활동을 포함하면 좋겠음.
- 요구분석, 사례연구 등의 방법과 함께 행정자료(고용보험DB)를 활용한 다양한 노동시장 대응 및 지원 현황 분석도 검토해 볼 수 있음(기업 관련 프로그램의 고령층 참여 및 지원 현황 등).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인구 고령화와 기업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검토,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황 검토 및 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높은 정책 범위 파악, 관련 정책 범위에 대한 기업의 현 대응

실태 파악, 우수사례 발굴 등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도 연구 내용을 반영하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고령사회 대응 정책 범위 규명'보다 '기업의 대응 실태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4장의 구성을 2개의 장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예: 정책 범주별(고용, 그 외 등)).
- 고령화 시대 기업의 역할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에 앞서 고령화와 기업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등 고령화와 기업의 상관관계와 영향 구도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음.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지원 제도, 관련 법령, 기업의 지원 현황-참여 프로그램, 참여자 수, 기업의 지원 유형, 성과,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분석 결과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적 대응과 함께 해외기업 사례도 포함하면 좋겠음.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높은 고령사회 대응 정책 범위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취합한 기초자료 제공함으로써, 인구고령화 관련 연구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 실태와 요구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술적 기여도는 높음.

- (정책활용 가능성)
  -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인지정도, 기업내 제도 현황,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정책 협조를 높일 수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령, 제도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무엇보다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추가 의견

- 기업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하는 지점은 대부분 노동인력의 고령화에 한정되어 있음. 기업의 고령화 대응 책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업에서 대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논의나 경영학 쪽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정리를 잘해서 기업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함.
- 기업복지나 ESG의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반영 계획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기업의 역할 중요성이 요구되는 정책영역의 범위를 좁히고, FGI를 통해 기업 특성별로 기업의 고령사회 정책 참여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임.
- 한국은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국외 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사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기업의 대응 실태 및 정책적 요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목차 구성을 재검토할 예정임.
- 1장에서 연구범위와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되는 지점을 가독성있게 부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사항을 찾는 데 집중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함.
- 2장 이론적 배경에서 고령화와 기업의 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자 함.
- 현재 기업에서 고령화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고령화와 기업의 포지셔닝'을 확인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코자 함.
- 기업의 우수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포함하며 연구를 진행하며, 우수사례는 가급적 국외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학제적 관점에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이 연구는 기존 공급 중심 성과목표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수요 측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

의적절함. 연구 제목에서도 밝혔듯,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 정책 성과분석이란 것이 인구 통계적 변화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모든 연령층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중장년층은 인구 변화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변화는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유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이제껏 개별 사업 단위에서 성과지표로 측정되었던 산출물 중심의 지표들(output: 참여자 수, 이용률 등)은 단기간의 사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였음. 그러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업들도 결국 궁극적인 상위목표는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등임.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지표를 발굴하는 것은 공급자 마인드가 아닌 수요자 마인드에서 삶의 변화(영향)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껏 획일화된 산출물 중심의 지표를 수정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공급 중심 성과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통해 차별성을 가짐. 또한, 중장년층 관련 기존 연구가 주로 고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들의 사회적 위험 및 변화를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측면이 차별성을 가짐.
-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생애주기별 가장 다양한 특성을 가진 중장년(40,50,60)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

연구는 차별성을 가짐.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연구 방법론으로서,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 동안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기존 사업을 분석하는 행정자료 사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의견을 드리면, 수요 측면 성과지표만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 지표와의 연계를 고려한 분석 모델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의견 드림. 계획서에도 작성되어 있지만, 애초에 공급이라는 것이 수요 요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공급 중심 성과지표와 수요 중심 성과지표라는 게 연관성을 가짐. 공급 중심 지표는 정책이 얼마만큼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투입과 산출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수요 중심 지표는 정책이 대상자 삶에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정책 대상자의 실제 필요와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됨. 이런 면에서 공급과 수요 지표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됨. 동시에 수요 지표는 상위 지표가 될 것임.
- 기존 공급 측면 성과지표는 주로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수요 지표는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둠. 예를 들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공급 측면 지표이자 산출 지표이고, 실업 기간 단축이나 소득 회복률 같은 지표는 결과적 성과를 나타내며 수요 측면 지표가 될 것임. 이런 지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사업의 효과적 관리와 질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성과평가가 가능해질 것임. 만약 공급 측면 지표와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면, 사회보장행

정데이터에서의 사업별 수혜자 분포 분석과 연결하여, 관련 사업들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수요 기반 성과지표가 결과 측면의 지표들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지표 개발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구설계에서 나타나듯이 중장년 수요 측면에서 조사한 항목,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궁극적으로 중장년 정책사업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파악이 될 것임. 40, 50, 60의 수요가 각각 다를테니 기존의 중장년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과지표를 파악해 주시길 바람.
  - 그러면 중장년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표가 사업목표를 잡아줄 수 있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연령 기준 설정은 필수이며, 이러한 연령 기준에 따라 연구 내용 및 범위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됨. 기존 문헌 및 조례 등을 통해 연령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사업들의 연령 선정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중장년층 연령 범위를 50대 이후(퇴직 연령 즈음)로 설정하는 안도 의견 드림. 40대가 포함될 경우, 이들의 고용, 돌봄 등 관련 정책이 상당히 이질적일 것으로 생각됨. (중장년 대상 정책 파악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장년 대상 지원 정책 관련 방향성을 검토해 보길 의견 드림.)

- 4장과 5장에서 이들의 생애이행 과정에서의 변화와 위험을 파악하여 세분화된 사회보장정책 수요 집단을 설정했으면 함.
  - 노동시장 참여 여부, 가족 형태(독거, 부양책임 유무), 건강상태 등 중장년층의 세분화된 사회보장정책 수요 집단 설정 → 정책 수요와 연계한 정책군 도출 → 상위 목표와 연결되는 지표 도출의 논리 흐름에 대해 의견 드림.
  - 현재 목차에서 이들의 수요 집단 관련 고용, 돌봄, 주거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분화된 수요 집단 분석을 통해 좀 더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길 의견 드림. 고용과 소득 안정성, 노후준비 중요성뿐 아니라 최근 돌봄에 있어 돌봄 제공자이자 수혜자,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관련 고독사 등 사회적 관계 측면(고독사에서 중장년층 남성은 중요한 정책대상자임) 수요 변화도 함께 고려하길 의견 드림.
- 4장 고용영역이 분량이 많아질 것임. 현재 중장년 정책은 고용서비스 위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40대를 위한 중장년 정책방향은 5060과 차이가 있음. 40대는 아직 재직자가 많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의 직무역량강화가 목적임. 또한 40대 구직자도 고려해야 함. 50대의 중장년 정책 방향은 직무전환, 재취업활성화, 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목표임. 60대의 경우에는 (물론 정년연장의 논의도 있지만) 유연한 일자리로의 재고용임. 또한 고용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임. 민간일자리에서 더 구분을 해보자면, 경력설계상담,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이 있음.

- 5장의 돌봄, 주거영역은 (연구자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중장년의 요구는 일자리 다음에는 여가, 건강영역임.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학술적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
  - 중장년 수요를 기반으로 outcome, impact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면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음.
- (정책활용 가능성)
  -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며, 중장년층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반영 계획

-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성과를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층을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연구 서두에서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행정데이터의 수혜 사업 내역 이외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 측면의 지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 이를 통해, 자문위원이 주신 의견처럼, 사업 공급 측면의 지표와 사업 수요 측면의 지표의 유기적 연계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음.

- 현재 정책 공급 현황을 파악한 후, 대상 연령 집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함. 의견 주신대로, 중장년층 중 40대와 50대 이후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 부문 이외에 다른 사회적 영역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있기에, 40~60대 연령 집단을 모두 고려한다면, 연구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된 정책 수요 집단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군 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다만, 가용한 통계자료 여부에 따라서, 정책군 영역별 수요 지표의 발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할 정책군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 개별 사업의 궁극적인 상위 목표를 파악하여, 이러한 목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음.
- 기존의 중장년층 대상 연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중장년층의 실태를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음.
- 중장년층에서 고용,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군 영역임. 의견 주신 내용처럼, 정책 대상 집단별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잘

판단하여, 4장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제시된 주거, 돌봄은 하나의 예시일 뿐 확정된 정책군 영역은 아님.

□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본 연구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행·재정적 변화를 통하여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제반사항(중앙 및 지자체별 비용분담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주소는 법적으로 민법상 주소와 공법상 주소로 구분되며,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법상 주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최소한의 개념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복수주소제 또는 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은 적절함. 다만, 본 연구는 복수주소제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에 영향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변화와 전달체수주소제 도입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재정시뮬레이션 수행은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됨.

- 우리나라에서의 복수주소제 도입은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 대

응적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 해당 쟁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현실적 가정에 기반을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다수의 정책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요 급여에 대한 선택적 분석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예를 들어 연구계획에서 제시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분석 사례로 적절함. 그 밖에 수급대상 규모가 큰 일부의 수당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 등을 선별, 추가적 분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추가 의견

- 인구감소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수주소제 도입의 의도와 목적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복수주소제 도입이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적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학제간 연구도 필요할 수 있음.

○ 반영 계획

- 전반적인 지방인구 소멸 대응 기제로서의 복수주소제 논의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논의의 배경과 정책경과를 요약하고, 해외사례 또한 분량을 줄이되 주요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 예정임.
- 재원의 공유방식은 본 연구의 주된 범위에서 벗어나며, 지출분담과 관련해서는 인구소멸지역과 도시지역 3~4개 지자체로 한정하고, 제도 또한 지방비 부담이 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또는 아동수당 등 주요 제도로 한정할 계획임.

- 제도적 쟁점 분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및 법제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할 계획임.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의 적절성

-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복지 분야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임.
-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높은 연구임. 특히, 이를 복지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등의 지표가 세대 간 재분배나 형평성 문제를 적절히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접근은 진일보한 접근임.
- 다만,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있고, 분석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기에 이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학술적인/이론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 회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구체적인/실천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임.
- 기존 연구에서, 재정정책, 건강보험 및 조세 부담, 국민연금 등

의 세대간 형평성을 세대회계모형과 코호트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음.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건보,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세대간 수익과 재정부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방법론 또는 자료수집 방식의 적절성

-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향후 연구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모형의 설계와 함께 분석 대상 복지재정정책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의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타당성(예, 할인율)은 물론이고 설정된 가정들이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세대 간 회계 모형에서 지역 및 소득계층별 분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세대회계모형과 코호트모형을 결합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며, 코호트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최근의 인구분야 코호트 분석 연구를 참고할 필요

○ 연구 내용의 포괄성 및 목차 구성의 적정성

- 세대별 수익과 부담의 형평성만을 분석하여 정책 방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세대 간 회계 모형이 세대별 순조세 부담의 수준을 측정하지만, 제공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적절성(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단순한 모수적 개편 논의를 넘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나 재원의 다원화 등도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음.

- 국민이전계정(NTA)을 검토해 필요시 본 연구에 접목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제도/재정정책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적정함. 다만, 정책 변화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도 제시해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세대간 형평성과 부담, 세대간 격차 현황 검토 부분에서, 수익자와 부담자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지 등이 사회보장제도별로 상이할 수도 있음(사회보험의 경우 해당 이벤트(실업, 질병 등)가 미발생할 경우 수익과 부담이 다를 수 있음). 이러한 검토가 4장의 모형 분석 결과와 연계되어 설명할 필요

○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술적 기여도)
  - 인구구조변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세대간 형평성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함을 통해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사점 제시
- (정책활용 가능성)
  - 세대 회계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어떤 정책적 개입이 더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인지, 어떤 시점이 더 효과적인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영 계획

-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와의 차별성있는 분석 방법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임.

- 모형의 설계에서 복지재정정책을 어떤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시뮬레이션을 구상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가용데이터에 따라 지역 및 소득계층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세대회계모형, 코호트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임.
- 제시해 주신 기존문헌에 대한 고찰을 보완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재검토할 예정임.
- 기존 문헌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재검토 할 예정임.
-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시뮬레이션, 모형분석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제3절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수행과제별 연구결과

1. 인구 현상 심층 분석

□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청년 가구주 가구 등 특정 유형의 가구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함.

-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봄.

○ 주요 연구 결과

- 첫째, 이 연구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았음.
  - 자료상의 한계와 국가 및 지역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에 기초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이로 인한 평균 가구 규모의 축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진행이 확대 가구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비록 평균 가구 규모와 비교할 때 가구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수렴 패턴이 관측되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북미 등 인구변천을 선도한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확대 가구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됨.
  - 유럽이나 북미처럼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사한 가구변동 양상이 관측된다

는 점은 가구 규모의 축소와 구조의 단순화처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가구변동의 전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변동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구의 규모와 유형 및 구성에서 관측되는 국가(지역) 간 이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을 아울러 나타나는 출산율과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기대수명의 상승 같은 인구변동이 향후 가구변동이 전개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할 수 있지만, 가구변동의 세부적인 양상은 개별 국가(지역)가 발전해 온 다양한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둘째, 통계청의 센서스 2% 표본 자료에 기초하여 1980~2020년에 걸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았음.

-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 과정은 전체 인구 가운데 확대가구나 비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에 속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부부 단독이나 자녀 혹은 동거가구원이 없는 소규모의 단순화된 가구 구조가 주류로 등장하는 가구의 파편화-원자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줌.

- 가구변동에서 관측되는 가구의 파편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가구의 원자화 과정은 인구학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구처럼 가구의 생애주기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학적 기초가 됨.

- 한편, 최근 들어 혼인력에서의 변화가 가구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셋째, 성, 연령, 혼인 상태로 정의된 인구학적 변화(인구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구성비 변화)와 가구 선택 성향(가구주율)에서의 변화로 구분하여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가구변동(가구수 변화)을 분석하였음.
  - 1980~2020년에 걸친 가구 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 선택 성향 요인으로 분해한 분석 결과는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에서 두 요인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지만,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더 컸음을 시사함.
  -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특히 유배우 남성)의 고령층 진입이 가구 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동거하는 대신에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가구주율)의 증가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여성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가구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이었음을 시사함.

○ 결론 및 시사점

-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가구변동은 유럽 등 가구변동의 선도국이 보여준 추세를 따라가는 상황으로 이해됨.
  -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인구변동의 양상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훨씬 가파른 모습을 보임.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는 선진국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가구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출현시킬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임.

- 인구변동과 독립적 거주 성향의 증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1~2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음.
  - 그러나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가구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단순히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대신에, 제도적 조건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예측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는 총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 인구 감소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바, 구체적으로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다양한 범주에서의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재정적, 행정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생활인구 활용에 있어서 현재 두루 활용되고 있는 인구통계는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로서 생활인구 개념과는 상이한 동시에 생활인구가 띠는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실제 생활규모나 인프라 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음.
- 생활인구 활용 정책 대응 방향은 기본적으로 생활인구의 정교한 파악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 구축과 분석이 요구되며, 최근 통신사 유동인구 및 카드사 빅데이터 등의 가용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부각되고 있음.

-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생활인구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체류, 유동, 방문 등 인구의 정주 이동뿐 아니라 단기적 이동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봄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생활인구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는 생활인구 분포 등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향후 생활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소위 전망하는 일련의 분석은 최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생활인구가 두루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 추진 상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측면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활인구 정책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생활인구 관련 논의와 쟁점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보다 선제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분포를 전망하여 관련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주요 연구 결과

- 생활인구 통계 검토 결과 및 함의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협동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24년 기준의 생활인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였음.
  - 생활인구 통계의 주된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분포는 소위 계절에 따라

두드러진 특성과 더불어 관광 중심의 인프라가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관광 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배수의 특성은 관광 기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지역의 부존 자원과 특화 자원이 정책 추진의 주요 기반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수도권과의 거리 및 교통 인프라 접근성 등이 이들 관광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카드 사용액 분석과 업종별 소비 특성 분석은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의 인구 위기 극복, 생존과 재성장을 위해 생활인구 기반의 창발적 지역발전정책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전망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공표된 2024년의 월별 생활인구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2030년과 2040년의 생활인구 분포를 전망함.
- 향후 생활인구의 전망 결과는 현재 생활인구의 분포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생활인구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인구의 양극화, 즉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을 시사함.
- 생활인구의 상주인구 대비 비율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작은

지역보다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을 보다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층적이고 유연한 접근은 당연하게 수반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나, 인접 지역끼리의 생활인구 뺏기와 같이 비효율적인 양상을 유발하는 논의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 전국 유동인구 분포 전망

-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는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인 배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추가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결과적으로 생활인구의 효율적 유입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줌.

- 먼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동시에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배수와 생활인구 간의 정적(+) 비례 관계는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방향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생활인구 활용을 통한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선택과 집중 및 지역 특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추가로, 보다 정교한 전망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시메트릭 매핑(dashmetric mapping) 기법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유동인구를 전망한 결과, 전망 시에 고려한 다음의 종사자밀도, 인구밀도, 주택노후도, 접근성, ln(인구)과의 연관성이 높게 도출되었음. 구체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지역 및 주민등록인구(상주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유동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 주택노후도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유동인구가 작은 특징이 도출되었음.

- 지역의 단기 유동인구 전망

  - 4개 지역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추정한 결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추정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활인구 정책 사업의 추진은 단기 유동인구의 분포와 집중 형태에 따른 지역의 유형화, 가령 통근통학형, 관광형(체류형, 소비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단의 차별적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이 도심형보다는 관광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은 단기 유동인구의 체류기간을 보다 연장하고, 성,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말 및 성수기 집중 방문을 넘어서 이들의 평일 방문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사회적 당면과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생활인구를 활용하고 있는 최근의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의 향후 분포를 전망하고 관련 이슈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인구감소지역 및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생활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 과정에서 대시메트릭 기법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모형을 개발하였음.

- 생활인구 분포 및 전망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음.

  - 생활인구 기반 정책과 지역 양극화 심화 간 연관성, 생활인구의 지방교부세 산정 반영과 재정형평기능 변화, 생활인구 기반 지방교부세 확대 배분의 타당성, 생활인구 기반 행정서비스 공급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된 찬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생활인구 활용을 통한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 생활인구 전망 결과가 상주인구 분포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생활인구 세부 범주에 포함되는 여러 인구 이동 및 체류의 특성이 정주 여건 및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함.

- 최근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및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분포와 집중이 여전히 수도권에 크게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심으로의 생활권 확산이나 초광역 연계 효과는 제한적임.

- 현 정부에서 지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생활인구의 실제 분포와 집중,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정주인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통해 정주인구 이동 및 분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향후 생활인구 관련 정책적 시사점(정책과제)은 다음과 같음.

〈표 2-3〉 향후 생활인구 활용 관련 정책과제

정책과제 범주	세부 내용
지방재정 관련	• 생활인구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의 점진적 도입
지방교부세 반영 관련	• 지역 간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 가능성 • 다만 교부세 산정 방식의 기술적 문제, 지자체 간 경쟁 심화, 체류 인구의 질적 고려 미흡 등의 한계 지속 보완 필요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	• 공공서비스 정책 수요의 질적 측면을 보다 고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할 필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 시군구 기초지자체 생활권 단위의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공급 통합 및 조정 가능성 지속 검토 및 추진 필요 • 기능공간, 기능권역(장인수 외, 2020)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 모색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 반영 가능성 검토

□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Ⅰ) 출산력과 사망력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지역 소멸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정밀하고 정책 연계성이 높은 인구추계 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 그러나 기존 인구추계 방법론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GLG 분포 등 모수 분포 기반 출산력 추계는 정책 경로가 불명확하고, 생명표 한계연령 100세는 초고령층 분석을 제약하며, 인구·가구 분리 추계 방식은 혼인·가구 정책과 출산력의 연계를 저해함.
- 본 연구는 출산진도비(PPR) 방식 도입, 한계연령 130세 연장, 혼인상태 기반 통합추계 모형 구축, KIHASA-SIM 연계 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 지향적이고 독자적인 인구추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출산진도비(PPR) 방식을 도입하여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과 출산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였음. 통합형 PPR을 적용하는 PPR_SIMPLE 방식을 채택하고, 초혼율을 핵심 정책 변수로 설정하여 초혼율 유지, ‘+1.5%/연’, ‘+3.0%/연’의 3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2023~2055년 PPR 기반 추계 후 역산된 연령별 출산율(ASFR)을 저장하여 재현 가능성을 확보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혼인 지원 정책이 유배우 인구 증가를 거쳐 출산율로 연결되는 전체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음.

- 생명표 한계연령을 기존 100세에서 130세로 연장하기 위해 Coale-Kisker 방법과 Coherent Kannisto 방법을 모두 구축하였음. 본 연구에서 구축한 두 방법론은 기존 Lee-Carter 계열 모형의 추계 결과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사망력 추계 모형의 선택과 관계없이 한계연령 연장 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하였음. 한계연령을 130세로 연장한 결과, 0세 기대수명 증가 효과는 0.3~0.4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0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추적함으로써 향후 기대수명 지속 연장에 대비하고 요양·의료·돌봄 등 초고령층 대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3계층 데이터 구조(actuals/assumptions/projections)와 6개 핵심 모듈로 통합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Projection Pipeline 클래스를 통해 5단계 추계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였음. 2022년 기준 2122년까지 100년 추계 결과, 총인구는 초혼율 유지 시나리오 1,238만 명, '+1.5%/연' 1,486만 명, '+3.0%/연' 1,803만 명으로 전망되었음. 시나리오 간 격차는 2050년 118만 명에서 2120년 565만 명으로 확대되어 초혼율 정책의 장기 누적 효과를 확인하였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8.4%에서 2080년 51.4~57.4%로 급증하고, 합계출산율은 초혼율 유지 0.62, '+1.5%/연' 0.84, '+3.0%/연' 1.08로 수렴하였음. 기대수명은 2023년 83.9세에서 2090년 93.0세로 상승하며 성별 격차는 5.9세에

서 2.7세로 축소되었음.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 대비 본 연구의 '+1.5%/연' 시나리오는 2120년 총인구가 24.4% 낮게 전망되었으며, 주요 차이는 PPR 방식이 혼인 지연과 비혼 증가를 구조적으로 반영한 출산력 가정에서 발생하였음.

- 인구추계 모형의 혼인상태별 전이확률, 가구수, 출생·사망자수를 KIHASA-SIM에 외생변수로 투입하는 단방향 연계 체계를 설계하였음. Sullivan 방식 기반 건강수명 추계와 건강-고용 상태 동시 고려 건강노동기대여명 산출 방법론을 제시하여, 향후 KIHASA-SIM 연계 시 고령화 정책의 통합적 효과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PPR 방식 도입으로 출산력 추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계연령 130세 연장으로 초고령층 분석을 정밀화하였음. 혼인상태별 인구 전이 기반 통합 체계로 인구·가구·정책시뮬레이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듈화된 구조와 자동 아카이빙으로 재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추계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 초혼율 '+3.0%/연' 시나리오는 '+1.5%/연' 대비 2120년 총인구 348만 명(23.4%) 많고 합계출산율(TFR)은 0.24 높아, 혼인 지원 정책의 장기 효과를 확인하였음. 그러나 초혼율 증가가 출산으로 연결되기까지 10~20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2080년 고령 인구 비율은 시나리오 간 6.0%p 차이에 불과하여 고령화는 출산력 정책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움.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장기 관점에서 지속 추진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노인부양 체계 개선 등 고령사회 적응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

실적임.

- 방법론 측면에서 PPR 분리형 확장, 혼인 매칭 이론 도입, 혼인 상태별 사망률 차이 반영이 필요함. 데이터 측면에서 건강-고용 통합 패널 구축, 지표 표준화, 지역별 세분 데이터 확보가 요구됨. 시스템 측면에서 시·도별 추계 확장, 확률적 추계 도입, KIHASA-SIM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한 정책 리스크 관리 지원이 필요함.

□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0년대 이후 급락, 특히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8년 연속 감소하였음.
- 그동안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묾. 특히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전무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음.
  - 첫째,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을 중점으로, 2000년~2020년 이들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2015년~2020년 사이 출산율 하락에 초점을 두고, 2000년~2015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음.

- 둘째,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혼인 및 출산 등 주요 인구동태 요인의 감소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으로,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혼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였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째 자녀(1 → 2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더 크거나 비슷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두드러진 변화를 보임. 그리고, 연령대별 영향력에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전에는 25세~29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 2020년에는 30세~34세 연령대의 영향력이 25세~29세를 역전하게 됨.

  - 분해분석 결과, 2000년~2015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과 2015년~2020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2000년~2015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전이확률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 해당 기간 유배우 출산율은 상승하여 오히려 혼인 전이확률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15년~2020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전이확률 감소(약 56%)가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인 가

운데, 유배우 출산율도 동시에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하락(약 31%)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감소가 가장 크게 기여(약 19%)한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이며,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5년 대비 2020년 유배우 출산율,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은 과거 출산율 하락 양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2015년 이전에는 혼인이 줄어도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 합계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었다면, 2015년 이후에는 혼인 하락과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충 장치가 소멸하여 합계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혼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 일자리 부족”,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음.
  - 그리고 2015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여, ‘패닉바잉(panic buying)’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연속 상승은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이 컸는데,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주거 등 새로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 비용 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임.

- 첫째 자녀 출산의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차등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림. 일부 전문가는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보편주의로 확대·전환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음. 반면, 일부 전문가는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적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돌봄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고 함.
- 기타 의견으로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따라서, 후속 연구로 급여 유형별 차등지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
- 다자녀 정책이 지극히 국가 중심적 정책으로, '평등'과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고, 정책의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쟁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본 연구결과 한국에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이기 때문에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혼인으로 이행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해주는 정책이어야 함.
  - 특히,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의 생애사건적 순차적 이행을 완화(탈표준화) 해주는 것이 중요함. 즉, 좋은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함(아동수당,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
  -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형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독일 및 네덜란드의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가 좋은 사례).
- 둘째,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음. 특히, 주거 안정성은 출산의 진입인 첫째 자녀 출산과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사실혼 관계의 법적 혼인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셋째, 본 연구 결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정부 정책은 다자녀 중

심으로 설계되었음. 첫째 자녀 양육 경험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속 출산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전문가마다 어떤 정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보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급여 유형별 차등지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또한, 현행 다자녀 차등 지원 정책이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함.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는 빠른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23.8만 명으로 9년 만에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하며(전년비 3.6%, +8,289명) 출생아 수 추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원인과 향후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출생통계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반등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또한 분석 기반의 향후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2024년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의 특징은 9년 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 30~34세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증가, 혼인 외 출생아 수 역대 최대치 기록(전년비 +약 3천 명), 평균 결혼생활 시작-출산 기간이 팬데믹 출산 연기 해소로 소폭 축소(2년 미만 비중 증가, 외국인 모(母)의 부분 영향), 평균 출산 연령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2015~2024년 출생아 수 시계열 분석 결과, 2024년을 추세에 포함한 모형(in-sample)에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추세 대비 출생아 수 추가 하락분이 2024년 반등으로 소폭 상쇄된 것으로 나타남(기간 누적 증감분 약 △890명~△6천 명).
  - 다만,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연령대별 출산율의 경우 2024년 30대 이상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 대비로는 상승했으나 2022년 대비로는 미흡한 수준이며, 팬데믹 전후 비교에서도 35~44세에서 팬데믹 이전 및 영향기 대비로 소폭 증가(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음.
- 2021년 이후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30대 진입으로 가임여성 인구수가 증가하여 2024년 30대의 출생아 수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변화를 가임여성 인구수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여 영향을 파악하였음.
  - 전년 대비 2024년 출생아 수의 증가(약 8천 명)는 30대 출산율 변화(+1.5만 명) 및 30~34세 인구 변화(+2천 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 인구 감소로 1.8천 명, 25~29세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약 1.7천 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유배우 여부 및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심층분석 결과, 2024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증가(+약 2만 명),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2.5천 명)였으며, 유배유 여성 비율(-1.5만 명)과 가임여성 인구(△762)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유배우 여성 출산율 중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 증가(+약 6.3천 명),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율 증가(+6.3만 명),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구성(+6.8천 명)이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증가한 인구학적 요인은 팬데믹으로 누적된 혼인 지연 현상의 해소로 유배우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신혼부부의 증가가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또 출산의 선택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의향이 강하거나 양육 여건이 양호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 출산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무배우 여성 인구 증가로 혼인이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적 인구 현상으로 해석됨.

- 출생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2024년 출산자의 출산결정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결과(25~44세 여성 2,064명 대상, 2024년 출산자 1,003명 포함), 2024년 출산자들은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의지, 연령 및 건강,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지원,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을 결정했으며, 추가 출산자는 첫 출산자보다 보육시설/서비스 이용 가능성 및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추가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출산자 중 코로나의 영향 받은 비중은 8.7%(첫 출산 9.2%, 추가 출산 7.4%)이며, 정책의 영향 받은 비중은 9.2%(첫 출산 8.4%, 추가 출산 11.5%)임. 2024년 추가 출산자는 첫 출산 당시보다 결혼·출산·주거지원 및 양육·교육·돌봄 정책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외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변화 체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에의 영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 안정적 일자리, 양육비/교육비 부담,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 주거 안정성, 육아시간 확보 가능성, 연령 및 건강 순으로 나타났음. 저출생 대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휴가·휴직의 유연한 사용, 누구나 휴가·휴직 사용, 틈새 돌봄 보장, 부부 간 가사·양육 동등 분담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유자녀 가구에서는 유자녀 및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2015~2024년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인구학적, 경제·사회학적 요인 등을 반영한 동태패널모형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에 출산율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며, 팬데믹 기간 대비 2024년에는 감소세가 더 줄어들었음.

- 혼인율, 여성고용률, 주거비 부담, 정책지원 확대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했으며, 2024년 출산율 변화에서는 특히 30대 초반 여성과 첫째아 출산율의 회복이 두드러져,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혼인과 출산의 보상 효과와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팬데믹 이후 연령대별 혼인율의 증가, 30대 여성인구 수 및 30대 출산율의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은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이상으로의 반등을 위해서는 혼인율 및 유배우 여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혼인-출산의 연계가 강한 상황에서 혼인 건수는 2024년 2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고 2025년에도 증가세에 있어 향후 몇 년간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에코붐 세대('91~'95년생)의 30대 진입으로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인구는 2024~2030년까지 7년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30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저해 요인 파악 및 추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2000년 이후 주 출산 연령대인 25~44세의 여성인구 중

기혼 비중은 감소세에 있고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증가세에 있어, 혼인율이 증가해도 유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 증가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2023년 이후 저출생 정책의 추가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추세의 유지를 위해서는 학업-취업-혼인-출산의 생애 단계별 이행이 강한 우리나라의 구조하에서 생애 단계, 연령대별, 출산순위별 출산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혼인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25~29세의 출산 장려가 아닌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일자리 및 주거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0대 초는 혼인 및 출산 결정의 주된 연령대로 혼인 및 출산 이행을 원하는 경우 어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30대 인구의 증가가 향후 몇 년간 예상되기에 해당 코호트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주거 안정성, 육아 지원,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 출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등이 주요해 보이며, 30대 후반은 고령산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난임·고위험 의료지원과 추가 출산 및 자녀의 긴 학령기 동안의 돌봄 부담 완화 지원, 재취업/경력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출산 전후 여성 일자리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중장기 일·가정 양립의 성평등 및

생애 기획이 가능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계층별·집단별 출산율 변화 추이 파악 기반의 정책 설계도 필수적임.

- 2024년 이후의 출생아 수 추세 분석 및 향후 정책 효과성 측정을 위해 생애 전환 사건(혼인, 출산 등)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코호트·계층별·집단별·지역별 패널 자료 및 조사자료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 경제·고용 및 산업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저출생 정책 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저출산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 연구

□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5년 이후 전국적 합계출산율 하락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적 인구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이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음.
- 저출산 연구가 주로 전국 평균이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넘어, 지리적 위치와 지역 경제 특성이 상이한 대전, 울산, 광주 세 광역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인식과 가족형성 인식과 실천을 비교 분석하였음.
- 특히 지역 노동시장 구조가 남녀에게 서로 다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젠더화된 실천에 차별적

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산업가부장제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이 청년 남녀의 생애경로 설계와 가족형성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세 지역 청년의 지역 경험 및 인식과 가족형성 차이

  • 대전, 울산, 광주 세 지역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대전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중심으로 전문직/연구직 비중이 높지만 민간 대기업이 부족하고 남녀 간 직종 분리와 임금 격차가 큼.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남초 사업장 구조로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높으나 여성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도 낮아 산업 가부장제가 재생산되고 있음. 광주는 중소 제조업과 대인서비스업 중심으로 모든 계층에서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며 청년 고용률이 낮음.

  • 지역 인식과 정주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대전은 '적당한 도시'로 수도권 접근성과 도시 편의성을 갖춰 정주 경향이 강한 반면, 울산은 '풍요로운 도시'로 경제적 풍요와 좋은 자연환경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함. 광주는 '낙후된 도시'로 인식되며 청년층의 지역 이탈 의향이 높고 일반화되어 있음.

  • 결혼 및 출산 전망에서 대전은 남녀가 함께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전통적 가족 규범도 작용하는 신전통주의적 결혼이 일반적임. 울산은 안정된 남성 일자리 기반의 중산층 남성부양자 가족을 추구하나 여성 이탈로 인한 성비 왜

곡과 '여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광주는 남성의 강한 부양자 의식에도 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여성은 노동시장 자립 기반 마련이 어려워 결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

- 세 지역의 가족형성 조건과 실천의 공통성
  - 첫째, 세 지역 모두 지역 노동시장 조건과 장소 정체성이 가족형성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기회에 대한 태도와 젠더 정체성에 따라 개인의 전략은 달라짐.
  -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청년 노동시장이 직업 분리와 임금 격차를 통해 남녀 일자리를 분할함.
  - 셋째, 여성 청년들은 노동시장 경력 개발의 성별화를 인식하며, 노동시장 지위만으로 안정감 있게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음.
  - 넷째, 모든 지역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당연한 의무가 아닌 개인이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부담을 느낌.
  - 다섯째, 지역의 한계를 체감하는 청년들은 타 지역 이주나 투자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고자 함.
  - 여섯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남녀에게 상이한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가족생활의 틀을 만들어 냄.
  - 일곱째, 지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남성이 주 부양 책임을 지고 여성이 보조하는 '한국형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을 전제하며, 청년들은 새로운 젠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서에 적응함.

○ 결론 및 시사점

- 그동안 청년기 이행과정이나 가족형성 연구에서 경제적 배경과 노동시장 지위의 영향은 강조되었으나, 지역 노동시장의 구체적 제약과 기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
  - 가족형성이 점점 더 개인의 노동시장 성취와 경제적 자원에 의존할수록 지역 노동시장과 자산의 영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기반 기준은 전국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그러한 자원을 얻을 기회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
- 중요한 발견은 세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것임. 지역 내 여성 일자리의 협소함으로 학위나 자격,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며, 하위 사무직이나 보건의료직 등 획일적인 여성 직업만이 존재함.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은 여성들에게 낮은 급여와 보상을 강요하는 수단이며, 이것이 최근 20대 여성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초래하는 핵심 맥락임.
- 여성 일자리 진전이 부재한 지역 노동시장은 '남성의 부양자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재생산함. 여성들도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지속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보장되는 여성 일자리의 수준과 안정성이 낮아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과된 경제적 책임이 완화되기 어려운 구조임.
-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가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가족형성 전망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음.

- 남성 일자리 중심의 산업구조와 제한적인 여성 고용 기회는 여성의 지역 이탈을 촉진하고, 잔류 청년의 경제적 안정성과 가족형성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산업 및 고용정책에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경력 축적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돌봄과 부양을 분담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함.
  - 기업은 성평등한 채용과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강화하고, 대학은 여성 인재의 지역 정착과 취업 연계를 확대해야 함.
  - 지방정부 역시 성별 영향평가를 체계화하여 산업 및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성별 격차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됨.

□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속화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산모가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산모 자신에게뿐만 아니

라 자녀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영아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산후의 향후 출산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맥락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생애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 영역 중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세부 분야 내에서 산후 정신건강 관리를 하나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적인 배경에서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산후우울감 및 산후우울증의 유병률 등 실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산후우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산후우울이 산모의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음.

  -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후기 정신건강 지원사업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분석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출산 후의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산후우울감(maternity blues, postpartum blues)은 산후우울 스펙트럼 중 가장 경미한 형태로 일시적이고 경미한 정서적 반응임.

  -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은 분만 이후 약 4주 이내에 발생하는 주요 우울 삽화(major depressive episode)(APA), 산욕기 관련 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associated with the puerperium)의 하위 항목인 출산 후 6주 이내에 시작된 기분 장애(ICD-11), 출산 직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기분장애 등으로 정의됨.

  - 전 세계적으로 임산부의 6.5%에서 20%는 주산기 우울증(perinatal anxiety and depression)을 경험하고 있음(Sharma et al., 2024).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의 발생률은 평균 39.0% (Tosto et al., 2023)으로 보고됨.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산후우울증 유병률을 산출한 결과, 2022년 기준 시기별 산후우울증 진단 비율은 4주 0.34%, 6주 0.52%, 6개월 1.85%, 12개월 3.2%로 나타남.
- 2024 산후조리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의 68.5%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하였고, 평균적으로 6개월을 조금 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음. 또한,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의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24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산모의 541명의 28.4%가 분만 이후 1년 이내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산후우울의 발생에는 개인 차원에서의 생물학적·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연령일수록 산후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고, 자연분만한 경우와 초산인 경우 산후우울증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가입자 대비 약 2배 높은 발생

가능성을 보였고, 과거 우울증 진단 이력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남.

-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초산에 비해 경산인 산모는 산후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0.76~0.77배 낮았고, 기저질환이 있는 산모는 기저질환이 없는 산모에 비해 산후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1.42~1.44배 높았음.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후우울감 경험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결혼 당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었더라도 산후우울감을 경험하면 출산을 중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최근에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고위험군 산모와 비위험군 산모는 산후우울의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음.
  - 고위험군 산모는 무기력,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이유 없이 우는 비정상적 정서 반응, 자기 비하 및 자책, 분노 감정의 조절 어려움, 자기혐오, 더 나아가 자살 및 살인 충동 등이 나타남.
  - 반면, 비위험군 산모는 출산 후 경미한 산후우울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체로 산후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충분한 정서적·경제적·사회적·물리적 지지와 도움의 여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산후우울의 원인으로 지적된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제

도적 한계 등이었고, 대체로 산후우울은 임신 중의 우울, 더 나아가 임신 전의 우울과 연결되었음. 산후우울을 완화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수면 보충과 휴식,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육아 도움, 심리 상담 등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은 미흡하며 산후우울증에 특화되어 단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한적임.
- 개별 임산부의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조기 개입을 통해 산후우울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은 24개월까지 지속 관리하고,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역전문기관(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생애초기 사업은 산후우울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함.
  - 그러나 2025년 현재 전국 73개소 보건소에서만 수행되고 있어 서비스 접근도와 이용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분절적인 여러 가지의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산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가장 크고, 산후우울에 특화된 정책의 이용이 어려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확대를 통

한 정책의 확대는 필수적임.

-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고위험 임신으로 이환을 예방하는 계획된 임신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예방해야 하며, 임신 전부터 산후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에 걸친 정확한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정신건강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후 정신건강 예방은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대상에 있어서는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포함해야 함.
- 산후우울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개별화되고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기존에 산재해 있는 개별 사업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합하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됨.
  -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보건소,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지역사회 단체,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산후 정신건강의 실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후 정신건강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산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 관리, 인력 양성, 정책 홍보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정책 집행 인프라를 확보해야 함.

□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23년 만 0세~1세에 대해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해당 급여를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아기 현금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음.
- 부모급여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돌봄유형에 대한 부모 선택권 확대'효과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보전 기능을 하여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이 밖에도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의 확대 등에 따라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수요 변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련제도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이용 사각지대, 계층 간 격차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부모급여 도입이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층 간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부모급여의 효과 및 영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수급하는 기간이 다소 길고, 엄마나 아빠가 중소기업에 종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수급기간이 짧아 이들이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함.
-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소' 효과와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82.1%, 75.6%,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 효과와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56.2%, 49.9%로 나타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 등의 비율은 64.5%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하는 경우 부모급여의 '직장 및 경력유지 도움'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 부모급여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됨.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경우 월급여 수준을 줄여서라도 지급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약 41.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은 비맞벌이,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남.
- 실제 시간지원제도 이용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육아휴직 시 엄마의 소득대체율은 56.2%, 아빠의 소득대체율은 60.1%로 나타나, 남성이 저임금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현재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 가장 크며, 이 밖의 이유로 엄마는 '근

로환경', 아빠의 경우 '회사 분위기'로 조사되어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의 경우 43.5%, 아빠의 경우 21.4%이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각각 23.4%, 11.3%로 여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엄마는 소득이 높을수록, 아빠는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최근 출생아 부모일수록,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시사점

- 부모급여의 도입은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그 영향이 수요자 특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육아휴직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부모급여는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로 시간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던 계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높여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근로 특성상, 또는 회사 분위기상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들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임.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하던 사람이 일을 멈추는 인센티브 기능은 크지 않지만, 일 안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비취업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발견되었음.

- 상대적 취약성이 있는 집단의 경우 부모급여의 지급수준을 줄여서라도 지급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영아기 소득보장과 시간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지원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유연화와 대상 포괄성 강화, 부모급여 재설계를 위한 아동수당과 연계, 시간지원제도 이외의 돌봄서비스 보장 강화 과제를 제안함.

□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되었고, 2020년부터는 감소 국면에 진입했음.
- 특히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불균등이 두드러지며, 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의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구감소 국면에서 보육서비스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공간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결과

- 첫째, 문헌·사례조사를 통해 보육 접근권의 국제적 규범과 주요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

라의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음.

- 한국은 보육의 무상화 등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갖췄으나, 서비스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집행-구제' 메커니즘은 부재함.

- 둘째, 2016~2024년 영유아 100m 격자 자료로 생활권의 수축·저밀화·거점집중 등 공간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시군구를 변화 패턴에 따라 유형화하여 "취약이 농어촌을 넘어 중소도시·수도권 구도심·도심 외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셋째, 보육·교육기관 좌표·정원(및 수용여력), 격자 영유아 인구, 도로망(네트워크 접근성)을 결합해 접근성·대체가능성을 계량화함. 특히 특정 시설이 사라질 때 곧바로 '무(無)서비스'(coverage void)가 발생하는지와 그 규모를 시뮬레이션하는 유일커버(unique coverag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활권 내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필수 거점 후보를 도출하고 분포를 파악하였음.

- 넷째, 유일커버 시설의 시설장(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해 정량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접근성 장애요인(통원 시간·비용, 차량·동승인력 부담, 교사 채용난, 운영 불안정, 폐원 충격, 취약가구의 돌봄공백 위험 등)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과제(법·제도·재정·운영 설계)를 도출하였음.

○ 결론 및 시사점

- 현재의 보육 생태계는 '시장 수요의 함수'에 맡길 경우 지역 간

불균형과 보육 사막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생활권 기반의 권리 보장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는 (1) 보육 공백 관리 및 권리 제도화가 필요함. 보육 접근성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배치 불이행 시의 구제 절차(대체수단 제공 등)를 마련해야 함. (2)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함. 인구 희박 지역에는 시설 요건을 완화한 소규모 시설, 파견형 보육, 지자체 직영 등 다양한 공공형 모델을 도입하여 '유일커버' 기능을 유지해야 함. (3) 격오지 지수 도입 및 재정 보정이 필요함. 행정구역(읍·면) 기준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와 접근성을 반영한 '격오지 지수'를 개발하여 도농 경계지역 등 실질적 취약지에 대한 운영비 차등 보조를 실시해야 함. (4) 유일커버지역 등 영유아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대해 통학 수단의 공공화를 제안함. 개별 시설에 전가된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또는 교육청 주도의 공공 셔틀(권역별 순환 버스 등) 도입을 제안함. (5) 폐원 관리 체계화가 필요함. 폐원 예고 기간 확대(최소 3~6개월), 전원 계획 수립 의무화, 폐원 시설의 행정·재정적 연착륙 지원을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본 연구는 격자 기반 미시분석과 유일커버 알고리즘, 그리고 현장 질적 증거를 결합하여 "인구감소 시대의 보육 접근권"을 생활권 단위에서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증 기반과 제도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 404만 명(전체 인구의 8.1%)으로 증가할 전망
- 2003년 이후 장기체류 외국인 비중이 단기체류를 넘어섰으며, 영주자격(F-5) 보유자도 2020년 대비 2024년에 26% 증가했고, 이러한 이주민의 정주화 경향은 사회보장 수요를 높이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국민(citizenship) 중심 사회보장 제도는 이와 긴장을 유발하며, 관련 선행 연구는 희소함.
- 본 연구는 이주민 사회보장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공공부조 영역에 초점을 맞춰 이주민 사회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4체제 12개국 국제 비교, 영국·일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결과

- 제2장에서는 이주민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마샬(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은 복지국가 사회권의 토대였으나, 현대 복지국가는 사회적 배제와 권리/의무의 재구성을 강조함.
  - 복지수급자격은 전통적으로 필요(need), 노동(work), 시민권(citizenship)의 세 원칙에 기반,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및 자립 촉진 기능을 수행하며, 앞선 세 원칙과 연계되며, 이 원칙들을 이주민에게 적용할 때, 포용과 배제의 논리로 동시에 작동함. '필요'는 인도주의적 포용의 논리가 되지만, 동시에 '복지 자석' 우려를 동원한 배제 논리가 되며, '노동'의 원리는 기여를 근거로 수급권을 정당화하지만, 비노동 이주민을 배제함. '시민권'은 국적 기반의 강력한 배제 원칙으로 작동하지만, '거주(residence)' 기준으로 확장될 경우 이주민 포용의 근거가 되기도 함.

- 제3장에서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함.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동아시아 4개 복지체제로 분류하여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를 비교 분석함.
  - 분석틀은 ①제도적 포괄/배제 여부, ②수급 조건 및 의무, ③국가별 배경 및 논점으로 구성됨.
  - 분석 결과, 체제별 차이가 명확했음. 사회민주주의 체제(스웨덴, 핀란드)는 '거주(residence)'를 기반으로 가장 포용적이었으나, 덴마크는 예외적으로 배타적이었음. 보수주의 체제(독일, 프랑스)는 '5년 이상 장기체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거주 조건을 부과함. 자유주의 체제(미국, 영국, 캐나다)는 영주권자나 난민 등 특정 자격자만 포괄하는 배제적인 특성을 보임. 동아시아 체제(한국, 일본, 대만)는 '국민(nationality)' 원칙에 기반하여 이주민을 원천 배제하는, 4개 체제 중 가장 배제적인 모습을 보임. 세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은 난민과 일부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체류 외국인을 공공부조에서 제외한 가장 배타적인 유형이었음.

- 제4장에서는 영국의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 및 현황을 사례분석함.
  - 영국은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2012년 복지개혁법으로 6개 급여를 통합한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도입. UC는 근로 유인과 선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영국은 이주민의 공공부조 접근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함. 핵심 기제는 '공공기금 청구 금지(NRPF)' 조항과 '상시 거주 요건(HRT)'임. 이 이중 장치로 인해 영주권자(ILR)나 난민 지위 인정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는 공공부조에서 배제됨.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도 EU 정착제도(EUSS) 지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짐. 극심한 빈곤 시 '조건 해제(CoC)'를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이 어렵고 한시적임. 영국 사회에서는 '복지 관광' 우려에 기반한 배제 논리와 인도주의 및 사회통합에 기반한 포용 논리가 대립해왔음.
- 제5장에서는 두 번째 사례국가인 일본의 외국인 공공부조 보장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은 법적 수급권이 없음. 대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재일조선인이 국적을 상실하자, 1954년 후생성 통지를 통해 행정 재량으로 보호를 '준용'하는 조치가 시작되었음. '준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를 안고 있음. 1990년 후생성 구두 지시 이후 준용 대상은 영주자, 특별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난민 등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으로 한정되었음. 일본 내에서는 사회권 보장 책임이 본국에 있다는

'본국주의' 입장과 장기 거주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음.

○ 결론 및 시사점

- 이주민 포괄 논점은 ①필요/인권 원칙, ②노동/기여 원칙, ③시민권/거주 원칙, ④사회통합/재정부담 등 기타 요인으로 검토됨. 참고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 복지 수급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유럽 평균과 유사했음. 특히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공공부조 포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영주 및 정주 이주민에게 공공부조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 급격한 제도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의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빈곤 이주 아동을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향적 검토가 요구됨. 빈곤 아동의 복지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접근이 필요함.
  - 셋째, 공공부조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은 대상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명기하고 있음에 주목했음.
  - 넷째,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보건복지부에 이주민 사회보장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도 제언하였음.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복지국가 시민권의 재구성을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음.

□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 저출산대응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20년 넘게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시대에 살고 있음. 최근에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져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하게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음.
- 저출산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대한민국 정부, 2006; 대한민국 정부, 2011),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2021).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7496호)」을 제정(2005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은 2006년에 수립됐으며, 이후 총 4차례 수립되었음.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총 699.3조 원으로, 여기에는 고용보험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는 포함하지만, 공적연금과 노인의료비, 장기요양보험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출산율 쇼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체계(법, 위원회, 기본계획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음. 일부 연구자들은 현행 체계로는 인구정책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인구기본법 제정,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인구 전담

연구원 신설 등을 제안하였음(김정석, 2025; 이상림, 2025).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의 총량을 알지 못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 실증도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고 지적함(강지원, 2021; 국회예산정책처, 2021; 홍석철, 2023; 정재훈,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3).

- 제정 법률 제20조 3항의 3호에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제시했으며, 4항에서는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 현행 법률(법률 제20112호)에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은 여전히 포함되지만,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삭제되었음.
-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안 과제들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미 부처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중복 업무를 해소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하지만, 위원회가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한 재원이나 조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없이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만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함.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인구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인구정책 대응 재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다만, 연구기간의 한계와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정 전략은 가족정책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포함하는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에 초점을 맞춤.

○ 주요 연구 결과

- 2장에서 인구문제와 인구정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음. 인구문제는 복합적이며,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시대와 공간이 결합하면서 변화하기도 함. 이런 이유로, 인구 변동을 측정하는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인구 이동이 대표적이지만, 인구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회, 경제, 환경적 맥락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도 중요함. 즉,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인구문제는 2025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 우리가 지금 인구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양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개인 수준의 방해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인구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만, 정책의 목적이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인구정책의 관리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인구정책 거버넌스와 재정을 살펴보았음.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은 포괄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써의 지위와 기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정책 대응 재정은 현행 거버넌스 운영에서 재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한 다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현행 인구정책 거버넌스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조직구성, 전략계획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해관계 조정과 위험관리'는 법령에 근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고려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거버넌스는 정부-민간을 포함하나, 정부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의 성과관리는 시행계획 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위원회는 별도의 운용 자금을 갖지 않으므로, 예산 편성 권한은 없음.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의 과제를 발굴하면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화'하며, 각 사업의 예산은 부처에 편성됨. 인구정책 대응 재정 사업의 목록은 명확하지 않음. 각 부처에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의 목록(부처명, 사업명, 예산 등)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별 예산의 합을 재원 규모로 제시함. 이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기보다는 부처별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구조임. 따라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이해관계 조정', '위험관리', '성과관리' 등 전략적 지출 검토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정책 대응 재정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제안하였음.

  - 첫째, 재정 총량은 일반재정과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반재정 사업은 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와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목록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 자료를 데이터베이

스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 재정은 급여비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액을 합산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국민연금 등의 연금지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노인 의료·요양비를 산출하여 합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 지출 검토 방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AHP 조사 결과, 과도한 재정 효율화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동시에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문제도 제기되었음. 각 부처는 「정부 조직법(법률 제21065호)」에 명시된 소관 사무를 수행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제도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각 부처 단위에서 전략적 지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됐으나(김태곤, 하연섭, 2025; 지은초, 2023; 탁현우, 2017), 인구정책 거버넌스는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AHP 분석 결과, 현금지원의 재구조화, 교육돌봄서비스의 효율화, 일가정양립지원 확대, 근린환경과 정주여건 관리 등의 정책 과제가 도출됐으며, 기존 공급체계에 대한 우려와 저출산 대응 재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한편, 인구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조정과 위험 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 조정은 국가의 장기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방향과 인구정책 방향 간 조정,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수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조정회의가 경제정책 조정회의와 연계해서 운영될 것을 제안함. 사실상 인구정책은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면서 경제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짐.
- 또한, 본 연구는 위험 관리를 위해 인구통계의 정량 분석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한 사전 경보'를 강화하고, 인구정책의 정성 분석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제안, 이와 함께 인구정책 대응 재정의 총량 관리와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해 재정에 대한 위험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와 기본계획이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음.
  - 특히 국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와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7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인구문제와 인구정책의 범위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불일치에서 찾았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위험 관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문 개정을 제안함.

□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심층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현상의 복잡성과 만혼·비혼, 동거와 혼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3년마다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로 개편하여 혼인상태와 성별에 상관없이 19~49세 남녀로 조사 대상을 변경하고 조사 항목을 다양화하였음.
  - 2024년에는 2021년 개편된 조사 대상을 유지하되 조사 문항을 보완하고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변경한 문항을 중심으로 혼인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가족과 출산조사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가치관과 미혼 남녀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일 경우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결혼 및 출산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신뢰와 미래 전망이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에, 여성의 경우 안전은 결혼 의향에, 신뢰와 안전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다음으로 부부가구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계부양 부담의 성분리 정도는 완화되었으나 맞벌이 가구라도 부양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분담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그리고 이러한 가사분담 방식과 여성의 성평등 태도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의 대부분을 여성이 분담할 경우, 출산 의향이 높았고 성평등 태도가 강할수록 출산 의향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음.
- 지역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학 진학 전후로는 서울과 지방 광역시 거주가 증가하고 첫 취업 전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가 증가하며 첫 결혼 전후로는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도지역 거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이동 경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그 반대의 이동에 비해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 전까지의 생애 이동 경로와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미혼 남성에게서만 일부 관련이 있었으며, 기혼 여성의 출생아 수는 서울 계속 거주 집단에 비해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 거주 경험 시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3년 이내 출산한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과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임신을 원했고 계획했고 임신 시기가 적절했던 집단에 비해 임신을 원했고 계획했으나 시기가 부적절했던 경우, 과거 사산이나 유산과 같은 부정적 임신 결과를 경험한 경우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났음.

- 자녀 양육비와 정부 지원금, 그리고 추가 출산 의향에서는 0~6세 영유아 연령대보다 7~18세 연령대에서 정부 지원금과 자녀 양육비 간의 부적(-) 연관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제외 시 양육비와 정부 지원금 간 뚜렷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사교육비를 제외하면 정부 지원이 양육비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자녀의 양육비가 높을수록 한자녀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은 낮아졌으며 정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자녀 여성의 본인과 배우자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실태와 추가 출산 의향 분석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은 최근 출산으로 올수록 확대되었으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 사회의 안전이나 신뢰, 미래 전망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 전망의 불투명성이나 신뢰나 안전 인식과 같은 가치체계가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나 제도의 연속성을 통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평등 수준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 실천과 태

도가 강할수록 출산에 소극적이라는 결과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 관계를 정(+)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함.

- 주요 생애 사건과 지역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도 지역은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가장 많은 지역 이탈이 일어나는 반면 광역시는 대학 진학 시 청년층의 유입이 일어나지만 취업 시점에서 다시 유출이 일어나 도 지역의 대학에서부터의 이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결혼에서는 주거비가 높은 지역의 신혼부부 주거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임신·출산의 보건의료적 경험과 출산 의향 분석 결과, 계획 임신이나 부정적 임신 결과 경험 등이 추가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준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생식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임신군에 대한 정책 강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심리·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녀 양육비나 정부 지원과 출산 관련해서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이 심화되지만 정부 지원은 영유아기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현재의 양육지원정책이 실제 자녀 양육 관련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양육비 지원정책은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이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저출산 정책으로서 일·가정양립 제도의 출산 효

과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제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출산 관련 분석에서 기혼 여성이 중심이 되는 한계가 있었는바, 향후 조사에서는 남성에 대해서도 자녀 수 등의 추가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남녀의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이나 자산, 지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는 횡단면 조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 이력이나 임신·출산 이력 등 이력에 대한 조사임. 다만 주거 이력 등에 대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족과 출산 조사의 문항이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문항에 대한 추가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력에 대한 부분은 매 조사마다 실시하기보다는 모듈을 통해 2~3회차에 한 번씩 조사하는 방향으로 문항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연구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임. 인구고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 사회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아 확대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며 정부 정책보다 앞선 저출산 대응을 기업복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업의 참여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 정책의 기업 참여도와 참여 제약요인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이며, 단편적인 제도별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고령사회정책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됨.

- 이 연구의 목적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의 범위를 짚어보고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기업 중심의 민간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재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역할 수준을 짚어보고자 함.

  - 또한 기업 특성별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참여수준과 인식,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36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비 기업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고 기업규모와 업종, 노조유무 등에 따른 고령인력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민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하의 정책 실현을 위한 권고가 있어야 하며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정년이전 조기은퇴,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숙력인력 효율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재고용제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특히 숙력기술직이나 중간숙력직 종사 고령근로자는 대체없이 근속을 지속하는 비중이 높았음.
  -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개인시간 활용, 업무 열외 등 비공식적인 배려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의 인식 부족과 시행 착오 등도 정부 제도의 현장 안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퇴직 이후 삶은 기업 책임 밖으로 인식하며 관련 지원 수요가 낮음.

  - 기업현장에서 고령근로자 대상 특화된 산업안전,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없으며, 건강증진과 가족돌봄 부문 역시 모든 연령의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었음.

- 전문가 15~16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서 기업의 참여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됨.
  - (장시간 근로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병행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을 보장해야 함.
  - (노인 일자리 보장)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평생교육·훈련 기반 확립)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재훈련 체계를 구축 필요
  - (고용 안전망 강화) 불안정 고용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 필요
- 기업 관계자 FGI와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령사회 대응 우수 사례를 확인함.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있었으며, 사내동호회, 연차나눔, 경력직 채용, 리버스멘토링, 세대이해 교육 등 자사 특성에 맞춰 추진
  - 타기관 우수사례로 장기근속 고령 근로자의 전환기 지원 제도 수요가 있었으며, 안식월, 정년 전 조기 휴식,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재취업 지원 등 고령근로자의 경력 전환과 심리

적 안정 지원 등으로 추진

○ 결론 및 시사점

- 기업은 더 이상 제도 수용자(passive actor)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고령사회 대응응 주체(active actor)로서 고용 안정성 보장, 역량 강화,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이끌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은 단순한 인사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정책 참여 제고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고령근로자가 조직의 핵심 자산으로 남도록 하는 경력 연속성 확보 전략이 중요하며,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정년연장·재고용, 전문위원제도 운영은 고령근로자가 퇴직 전후 전환기를 원활히 관리하고 조직 자원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권고와 지원
  -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은 고령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단순한 근로편의가 아니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과 건강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사내대학·업종별 맞춤형 교육·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단순 재교육을 넘어 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건강·안전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함. 정기 건강검진, 직종별 안전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등은 고령근로자의 근속을 뒷받침하는 기본 조건으로 기업에서 제공될 필요
-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근로 지속성 장치 마련은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기업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확인됨. 이는 고령근로자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기업의 참여가 필요함.

□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위험의 다양화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가용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시행 중인 정책이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점검하고 정책의 개선, 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임.
-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정의하게 되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의 개념과 성과 분석의 단위(개별 사업 또는 여러 사업을 포괄한 사업군 등)에 따라 지표는 달라질 수 있고, 장단점 또한 명확히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과 평가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개별 사업 단위보다는 유사한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사업군 단위에 중점을 두고, 개별 사업 단위의 산출물 중심 성과와 사회보장정책 전체 단위에서의 결과 또는 영향 중심의 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지표(혹은 매개 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 이는 개별 사업의 산출물 개념 지표는 정책 대상자가 대면하는 사회적 위험 수준이나 변화 정도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한 결과 및 영향 개념의 성과지표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특정 정책 대상 집단에서 직면한 상황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정책 대상 집단은 정책의 '수요자'이며, 이들이 직면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책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본 연구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중간 단계 지표는 정책 수요자의 현황을 반영한 지표가 됨.

-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 중 중장년층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핵심근로연령층으로 그간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장년층의 인구 규모, 인구고령화 속도, 사회보장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의 지속적 인력 활용, 노후준비 내실화 등이 정책과제로서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주요 연구 결과

- 지표 발굴을 위한 중장년층 대상 사회보장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중장년층 대상 구체적 사업(정책)을 검토하였음.
  - 기본계획에 기반할 때, 중장년층이 표적화된 정책 과제는 일자리(고용) 중심이었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 고립, 일상 돌봄

등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었음. 이 외에는 청년층을 포함한 성인 모두가 정책 대상이거나, 특수 욕구(저소득, 장애 등)에 기반한 정책 과제가 대부분이었음. 이러한 특성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중장년층 대상 세부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추가로, 중장년층의 사회보장정책 수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021년 기준)를 활용하여 연령그룹별 인구(또는 가구) 대비 수혜 정도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공공부조나 근로장려금, 주거지원 등은 중장년층(40~64세), 특히 50대 이후 연령에서 저소득가구일 때 수혜 정도가 청년(18~39세)이나 4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 비율 또한 중장년층에서 청년층보다 높게 나타남.
- 중장년층 대상 사회보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정책 기능적으로 고용과 소득 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근로소득은 소득원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 발굴을 위한 중장년층 대상 세부 정책 영역으로 고용 부문을 첫 번째로 선정하였음. 추가로 최근 점차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 부문을 두 번째 영역으로 선정하였음.
- 우선,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중장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황을 장기 시계열 추이로 살펴봄으로써, 활용가능한 중간 지표를 찾아보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긴 시계

열 확보가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1984~2024년까지 5년 단위로 활용하여, i) 다른 연령대(예: 청년, 고령층 등)와 비교하여 중장년층(40~64세)이 어떠한 상황인지, ii) 출생코호트별로 중장년층 나이에 이르렀을 때의 현황을 비교하여 과거의 중장년층과 최근의 중장년층이 어떠한 상황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음. 고용률을 포함하여, 종사상지위 분포, 근속연수 분포,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특성, 종사 직업 분포, 월평균임금, 고용안전망 등의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중장년층이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대로 그동안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줌.

- 고용률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높고,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한 추이를 보이며, 50대 초반과 50대 후반의 고용률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양상이 나타남.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만,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55세 중후반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근속연수의 경우, 핵심근로연령대(30~50대)에서 근속 개월의 중윗값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데, 55~59세에서 근속 개월 중윗값이 최댓값을 보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함.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근속 개월 중윗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다소 늦춰진 모습을 보임.
- 또한, 현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59세의 경우 2009년 이후 대체로 증가한 반

면, 해당 연령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그만둔 평균 나이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부문의 경우, 중장년의 관계 취약이 제도·생애사 요인에 따라 이질적으로 분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누가·어디서·어떤 요인으로' 고립 위험이 집중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식별하고, 개입의 효과를 검증·환류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용한 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이에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고독사 위험군 등 다양한 측정 도구(문항)를 선행연구에서 기반하여 검토한 후, 관계망의 구조(규모·접촉)·기능(지지)·참여, 주관적 외로움의 완화를 핵심 성과경로로 설정하였으며, 지표 포괄성 측면, 표본의 대표성과 충분성, 자료의 품질관리 및 표본설계 가중치 일관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되, 연령 외에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위그룹을 함께 고려(1인 가구 여부, 경제활동 여부, 취약 주거형태, 현재 소득 여부, 활동제약 발생 여부)하였음.
  - 사회조사 자료 기반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기능은 중장년층의 취약성이 확인되는데, 특히 50~64세 중장년은 1인가구·무소득·비경제활동·취약주거·활동제약이 결합될 때 65세 이상과 유사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관계망 구조 측면에서 관계망 결핍률, 비친족 관계망 결핍률, 비친족 교류 비율, 관계망 크기 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결여율이 일관되게 상승하는 연령 경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 관계망 결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취약한 지표는 관계망 결핍률

이라 볼 수 있음. 해당 지표는 65세 이상과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관계망 기능 측면에서 다면적 지지 결여율, 부분적지지 결여율, 지지망 결여개수, 지지망 크기, 대인관계 만족 비율 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며, 다면적 지지 결여율 및 부분적 지지 결여율 모두 50대 이후 절대 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중장년층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며, 1인 가구, 소득 및 주거 취약과 결합될 때 취약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중간 지표는 사회보장정책의 큰 범주에서 다뤄지는 최상위 개념의 성과지표와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연계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
  - 즉, 생애주기별, 정책 기능별로 유사한 대상과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개별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면서, 생애주기별, 정책 기능별 대상자, 즉 정책 수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여야 함.
- 중장년층 대상 고용 부문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의 지표가 수준(level) 자체보다는 이행 과정에서의 위험 완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행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현재 최소 법적 정년 나이인 60세 이전까지는 근로생애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고용률,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의 지표를 선정하여 연령대별(50~54세와 55~59세 또는 55~59세와 60~64세) 격차를 중간 지표로 설정하여, 해당 지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음.

- 이 외에 주된 일자리에서의 지속적 근로 추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50대 또는 60세 전후 5세 단위 연령대에서의 근속기간(개월) 차이, 55~59세(또는 60~64세) 기준 현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한 사람 비율, 55~59세 응답 연령 기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 평균 등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

- 중장년층 대상 사회적 관계 부문의 경우, 고립된 상황과 같은 결과적 현상 지표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발현될 수 있는 그 원인 변수로 관계망 구조와 기능 측면의 지표를 함께 제시하였음.

  - 관계망 구조 측면에서는 관계망 결핍률 활용을 제안하였는데, 관계망 결핍률은 친족 및 비친족과 대면, 비대면(SNS 포함)을 통한 일상적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으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 관계의 기능 측면에서는 다면적 지지 결여율 지표의 활용을 제안하였는데, 다면적 지지 결여율은 정서적 위로·금전 지원·가사도움(아플 때)의 세 영역 모두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하였음. 해당 지표는 중장년 1인 가구에서 다면적 결여율이 높고(50~64세 20.5%, 65세 이상 18.7%), 취약 요인이 겹칠수록 위험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사회적 관계 부문 분석에서 하위 그룹인 취약 요인별 결과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결핍이 특정 취약집단(저소득, 1인 가구 등)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이 나타남을 보임. 이는 중장년층의 고용 이탈과 사회적 고립이 상호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년층이 직면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중장년에 대한 고용 지원 정책이 고용률 유지를 넘어 노동시장 내 이행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함.

□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앙·지방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고, 그중 복수주소제는 생활인구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 간 재정 불균형과 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대부분 지방재정 확충이나 세원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복수주소제가 복지급여의 집행·관리, 수급자 책임 귀속, 부정수급 방지 등 행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복수주소제 도입 시 지방의 복지재정 여건, 특히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와 지방비 대응능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복지급여 집행 과정의 재정적·행정적 쟁점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결과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복수주소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생활인구 이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되, 조세·재정·복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의 제2주택세(Zweitwohnsitzsteuer), 프랑스의 주택세(surtaxe sur les résidences secondaires),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의 제2주택세 등은 생활인구의 이용 기반에 따라 세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부담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파악됨. 이들은 모두 복수주소제 도입 시 세원 이동과 복지수요 변화의 정합적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 특히 복수주소제 도입은 복지급여의 집행과 관련해서 더욱 복잡하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됨.
  - 첫째, 급여유형별로 재·행정적 책임 귀속의 혼선이 예상됨. 현금성 급여의 경우, 주 주소-부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형태로 어떤 방식이든 명확화가 수월할 수 있지만, 신청, 심사, 자격 관리 등 행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혼란이 가능함. 한편, 돌봄 등 서비스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집행지)이 중심인데 주 주소와 생활지가 분리되면서 서비스 공급과 재/행정적 책임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시설 기반 서비스의 공간적 인프라 배치의 불일치와 고정비 부담이 문제일 수 있음. 어린이집 등 시설 기반 서비스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치·운영, 전문인력 역시 예산과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됨. 복수주소

등록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는 증가할 수 있으나, 복수주소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시설은 과부하 및 대기수요로 민원 증가 vs 복수주소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최적 이용률 미만으로 가동, 시설·인력의 유휴비용이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조정속도 차이는 복수주소제 도입 시 제도 운영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

- 셋째, 현재는 집행지=책임지를 전제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흐름이 설계되어 있음. 지자체 간 상계 정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주소제가 시행되면 급여의 집행지와 책임지가 괴리되는 상황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 공백이나 지자체 간 분쟁의 소지가 존재함. 또한 복지수요 예측과 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정 관리에 부담을 초래함.
- 넷째, 중복신청이나 부정수급 및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비 대응과 관련한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마지막 쟁점인 지방의 복지비 대응 능력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중 인구 관련 지표를 가상의 복수주소인구로 대체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총량이 고정된 보통교부세 재원을 가상의 복수주소인구를 반영하여 조정할 경우, 비수도권 군 지역 중 복지수요가 높은 군에 대해서는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복지수요가 높지만 생활인구 순유출이 발생하는 수도권 베드타운형 시 지역의 경우 복지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결론 및 시사점

- 가용자료의 제약으로 복지급여의 집행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모두 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 결과는 총량이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실생활 인구이동을 고려한 배분 시 지자체 간 복지비 대응 여력 구조를 변화시키며, 특히 복지수요가 높은 수도권 베드타운형 시 지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복지급여의 집행체계와 재원 공유방식의 부정합성에 기인함.
- 실생활 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복지형평성과 재정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인구이동(인구통계)-재원의 공유(조세·재정)-재원의 집행(복지)체계 3축의 정합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는가에 달려 있음.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도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자 기초 모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실험과 실무 협의의 과정에서 보완·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격차의 확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 최근 수혜와 부담의 세대 간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세대 간 갈등은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방식을 둘러싸고 고령세대가 “득”을 하고 젊은 세대가 “손”을 하고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로 세대 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향후 기초적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세대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현역세대의 부담이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 부담을 측정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익과 부담의 세대별 귀착 수준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검토

○ 주요 연구 결과

- 선행연구 고찰
  - 세대 간 형평성은 저출산·고령화 하에서 지금까지 고령자에게 편중된 사회보장에서 저출산 또는 청년 등의 전체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라 볼 수 있음.
  -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결과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 계층의 평균 수혜 규모는 944만 원이었으며, 이 중에 485만 원인 51.4%가 연금 외 복지급여이었음.
  - 1인당 국민이전계정으로 살펴보면, 연령증가에 따라 연령초기에는 적자 → 흑자 → 적자의 단계로 변화하며, 28세에 흑자로 진입한 이후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로 전환함.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4,290만 원으로 정점을 찍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되며, 1인당 생애주기는 43세에 1,753만 원

으로 최대 흑자를 달성함.

-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하여 복지재정의 영향을 국민연금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시적으로 9.55%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함.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세대 회계의 모델을 설정하고 현재 세대와 장래 세대의 평생 순부담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 부담이 가장 커지고 80대와 90대에서 수익이 가장 증가함. 세대 간 불균형의 수준은 5,135만 엔이며, 235.7%의 크기가 되어 있어, 장래 세대는 0세보다 3배 이상의 평생 순 부담의 수준에 이르므로, 0세와 미래 세대의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 현재까지 생존하면서 과거에 혜택을 받은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한 보험료, 기타 조세에 의해 부담과 수익을 차감한 순부담의 결과
- 순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는 51세(1972년생)로, 급여혜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욱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순부담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양(+)의 값을 지님.
- 70세가 되면 순부담에 대한 부호의 방향이 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보험료 부담보다는 혜택이 높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음.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

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면서 급여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어 현재의 노령층에서 상당히 높은 혜택을 받으면서 순부담에 있어 음(-)의 부호뿐만 아니라 크기에서도 매우 높은 혜택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방주시적(Forward-looking Generational Accounting, FGA) 세대 간 회계
  - 정부로부터 이전 받게 되는 수입을 개인이 납부할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따라서 미래의 정부 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험료 재정수입과 급여에 따른 지출 총액을 추계함.
  - 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산출을 위해 미래세대의 잔여 생애기간 동안의 순부담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분석의 기준 년도는 2023년임.
- 전생애 세대 간 회계
  - 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의 분석결과와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결과를 합산하여 전생애 세대 간 회계를 산출하여 전체 생애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을 분석
  - 건강보험의 경우 0세의 평생 순부담이 44,084천 원인 것에 대해, 장래 세대는 109,358천 원의 평생 순부담이 산출됨. 세대 간 불균형의 수준은 65,274천 원이며, 세대 간 불평등도는 148.1%의 크기로 미래 세대는 현재의 0세가 당면하는 생애 부담보다 약 1.5배 정도의 평생 순부담의 수준에 이름.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 간

불평등도가 226.6%로, 현재 세대에게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연령이 0인 현세대의 순재정부담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226.6% 높은 수준이 되어야 장기재정균형이 회복됨을 의미함.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122년까지의 저위 인구추계, 고위 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세대 간 부담의 변화를 살펴봄.
  - 출산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미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가 높아져 생애 순부담을 감소시키게 되지만, 인구가 감소할 경우에는 고령인구에 따른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를 부담할 인구가 감소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

○ 결론 및 시사점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현저하기 때문에 향후 기초적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세대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 세대의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 지금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



제3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제2절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제3절 인구포럼 운영

제3장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1. 관련 정책 현안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인구통계의 체계화 필요

○ 한국의 인구변동은 유례없이 급격한 속도에 큰 폭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인구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급격한 한국사회의 인구 변동은 사회정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거대한 조류를 촉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변동의 주된 특성으로서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주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과 정책 간 유기성이 주도 면밀하게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즉, 현재의 인구변동 특성을 정교하게 관측하는 것은 향후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과 적절성,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변동의 현황과 변동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을 관측하고 추적, 관리하는 소위 인구변동 모니터링(demographic monitoring)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관련 인구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생산·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형식임.

○ 또한, 인구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차별성 있는 인구 지표를 추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관측하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기초인 인구변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갱신)하기 위한 목적임.

○ 우리나라의 인구변동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선제적, 차별적 정책 대응을 위하여 2020년 지표 구축, 2022년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시범 사업 추진이 있었고, 이후 연보의 지속적인 발행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2022년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 시범 사업의 틀과 구성을 토대로 2023년, 2024년 수정·보완된 틀과 구성을 준용하되, 정부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기초가 되는 인구변동에 대한 지푯값을 생산(갱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연구내용

□ 본 사업은 2022년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 시범 사업의 '인구 통계의 주요 개념'을 준용하고 2023년, 2024년 수정·보완된 항목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세부 지표는 추가로 수정·보완하였음.

□ 항목은 인구변동의 주된 요인으로서, '출생과 출산', '혼인과 이혼', '사망', '인구이동', '인구 규모와 변화', '인구 구성', '외국인(다문화)', '인구의 분포'임.

○ 각 장별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3-1〉 본 연구의 장별 지표 구성

구분	지표
제2장 출생과 출산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세-49세) 연령별(5세 간격) 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조정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기혼여성 45-49세 출산 진도비
	완결 출산율
	기혼여성(19~49세)의 이상 자녀 수
	모의 평균 출산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연령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 수 및 비중
	모의 동거 기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난임시술(보조생식술) 이용 현황(환자 수)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수 및 비중
	출생 시 체중별 출생
	총재생산율 및 순재생산율

구분	지표
제3장 혼인과 이혼	혼인 건수, 조혼인율, 일반혼인율
	성별 연령대별(5세 간격) 혼인율, 일반초혼율, 합계초혼율
	남편-아내의 연령대별 혼인건수, 초혼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실제 결혼생활-혼인신고 기간
	이혼 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성별, 연령대별(5세 간격) 이혼율, 평균 이혼연령
	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제4장 사망	사망자, 조사망률, 기대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연령별 사망자와 사망률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영아사망자 수, 영아사망률
	사망 연령의 중심(M)과 변이(C50)
	시도/시군구별 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사망비
	10대 사망원인과 전체 사망 건수 대비 구성비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과 구성비
제5장 인구이동	연령별 이동률
	성별 및 연령별 이동자 및 이동률
	권역별 순이동자
	권역별 순이동자의 연령
	권역 간 순이동
	전입 사유 및 연령대별 이동자 규모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유형별 이동자 및 구성비
	권역별 인구이동의 효과성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관심지역(18개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전체 및 성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연령계층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의 규모 및 구성비
	국적별 및 연령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내국인과 외국인 국제이동의 연령별 패턴
	국적별 외국인 순이동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전체 및 연령별 국제이동의 효과성 지수

구분	지표
제6장 인구 규모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성별 및 연령별 장래인구
	인구의 자연증가 및 자연증가율
	시도/시군구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19년 → 2024년)
	시도/시군구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23년 → 2024년)
	시군구 인구증가율: 2020~2023년
제7장 인구 구성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및 중위연령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주요 연령대별 성비
	성별 및 연령계층별 혼인 상태
	가구원 규모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
	세대 유형별 인구 및 구성비
	성별 1인 가구 비율
	시도/시군구 연령대별(65+/75+/85+) 고령인구비율
	시도/시군구 성, 연령대별(20,30대, 65+/75+/85+) 1인가구비율
	시도/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제8장 외국인(다문화)	시도별 외국인주민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시도별 국적취득 여부별 외국인주민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국적별 결혼이민자
	국적별 결혼이민자 성별 비율 현황
	시도별 다문화 혼인
	시도별 다문화 이혼
	시도별 다문화 출생
제9장 인구의 분포	시도별 인구 및 백분비
	시도별 노인인구(65세+) 및 초고령 노인인구(85세+) 규모 및 비율
	시군구 인구의 공간적 집중

□ 통계지표는 대부분 국가데이터처의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활용된 국가데이터처의 주요 통계자료는 〈표 3-2〉와 같음.

- 출생과 출산 영역에서는 인구동향조사 출생 부문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혼인과 이혼 영역에서는 인구동향조사 혼인과 이혼 부문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사망 영역에서는 인구동향조사 사망 부문 자료와 사망원인통계 자료, 생명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인구이동 영역에서는 국내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인구 규모와 변화 영역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인구 구성 영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외국인(다문화)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인구의 분포 영역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표 3-2〉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데이터처 주요 통계

통계명	유형	주요 조사(작성) 항목	조사 (작성) 주기	공표시기
인구동향조사	조사통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월	조사기준 월 익익월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매월1일~말일)
인구총조사	가공통계, 조사통계	인구, 가구, 주택 등	1년	전수: 작성기준 년 익년 7월 표본: 작성기준 년 익년 9~12월 (작성기준시점: 매년 11월 1일 0시)
국내인구이동 통계	보고통계	전입연월일, 전입지, 전입사유, 전출지 등	월	작성기준 월 익월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매월1일~말일)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고통계	주민등록인구, 세대 등	월	작성기준 월 익월 1일 (보고기준시점: 매월 말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보고통계	외국인 출·입국자, 사증발급, 결혼이민자, 체류외국인 등	1년	작성기준 년도 익년 7월 (보고기준시점: 매년 12.31)
장래인구추계	가공통계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 인구관련 지표 등	-	작성기준 기타 익익년 5월 (작성기준시점: t.7.1.)
사망원인통계	가공통계	사망원인, 사망장소 등	1년	작성기준 년도 익년 9월 (작성대상기간: 작성대상연도 1.1. ~12.3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가공통계	외국인주민 등	1년	작성기준 년 익년 10월 (작성기준시점: 11월 1일 0시)
생명표	가공통계	완전생명표, 가공생명표 등	1년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 (작성대상기간: 1.1-12.31)
국제인구이동 통계	보고통계	출입국 구분, 일자 등	월	작성기준 월 6개월 후 하순, 작성기준 년 익년 7월 (보고대상기간: 해당년도 1월1일~12월31일)

제2절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1. 관련 정책 현안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 국외 인구정책 파악과 이해의 필요성

○ 전 세계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나름의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대응해 왔음.

- 우리나라 역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5개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음.

○ 저출산·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검토는 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물론, 최근 출생아 수 증가 등 가시적인 변화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극적인 수준은 아니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가족정책, 노동시장제도,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성과와 한계를 경험한 국가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이 됨.

2. 연구 목적

□ 국외 인구정책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위해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에서는 기획과제로 '주요국(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에는 2024년에 수행한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의 후속 과업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국가별 인구정책을 조망하고 비교·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함.

3. 주요 연구 내용

□ 한국과 해외 4개국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 분석

○ 인구 규모 및 구성, 혼인과 출산, 사망으로 구분하여 5개국의 인구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 분석

○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봄.

□ 한국과 해외 4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제3절 인구포럼 운영

1. 인구포럼 운영 목적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운영됨.

□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유함.

○ 연구 성과 확산은 물론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 사회 대응에 대한 대국민 접점의 기제로써 활용

□ 2025년 총 3차례의 인구포럼과 2차례의 공동 포럼을 개최

〈표 3-3〉 2025년 인구포럼 진행 일정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제37회 인구포럼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	2025년 2월 5일 서울대 우석경제관 107호
제38회 인구포럼	함께 살아갈 미래, 인구정책의 새로운 길	2025년 7월 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제39회 인구포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2025년 9월 25일 엘타워 비바체홀(2층)
제40회 인구포럼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	2025년 11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03호
제41회 인구포럼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2025년 12월 11일 엘타워 엘가든홀(8층)

주: 1) 제37회 인구포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공동 주최
2) 제40회 인구포럼: 기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후원: 행정안전부)

2. 제37회 인구포럼

□ 주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

□ 개최목적

○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장기화, 고착화된 현재 상황을 인구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맥락을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2월 5일(수) 10:00 ~ 12:1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107호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와 노동시장 요인 탐구

○ (주제 발표 2)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주제 발표 3)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토론

3. 제38회 인구포럼

□ 주제: 함께 살아갈 미래, 인구정책의 새로운 길

□ 개최목적

○ 인구의 날(7/11)을 기념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7월 9일(수), 14:30 ~ 17:00

○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사람 중심 인구정책, 숫자보다 삶을 먼저 묻다

○ (주제 발표 2) 새정부 인구미래전략 – 인구정책 평가와 핵심전략

○ 토론

4. 제39회 인구포럼

□ 주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 개최목적

○ 저출생과 성별 고용 격차가 심화되는 시대에,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방향 논의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9월 25일(목), 10:00 ~ 15:30

○ 장소: 엘타워 비바체홀(2F)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세션 1〉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경제활동

○ (주제 발표 1) 일가정 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성평등 과제

○ (주제 발표 2) 저출생 시대, 여성 노동시장 특징과 정책과제

○ 토론

〈세션 2〉 일가정 양립의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주제 발표 1) 해외 육아휴직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주제 발표 2)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현황과 정책적 함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 분석

○ 토론

○ 종합토론

5. 제40회 인구포럼

□ 주제: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

□ 개최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지역 인구 위기 등의 인구변동과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나아갈 길과 방향성을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10:00 ~ 18:00

○ 장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이하는 인구와 관련성 높은 세션에 한해서만 제시

〈총론발표〉 저출생 시대 지방분권과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기본사회

〈세션 2〉 지역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재편

○ (주제 발표 1)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패러다임 전환: 지방 분권과 다양성 기반 소득 지원 제도들의 등장과 의미

○ (주제 발표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개편 방향

○ 토론

〈세션 3〉 인구 구조 변화와 최근 동향

○ (주제 발표 1)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주제 발표 2)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심층 분석: 장래 전망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토론

〈세션 5〉 고령화 시기 기본사회와 진짜 경제

○ (주제 발표 1) 대전환기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

○ (주제 발표 2) 기본사회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토론

〈세션 6〉 고령사회 및 지방분권시대 기본의료정책

○ (주제 발표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보건의료 정책

○ (주제 발표 2)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화와 분권화

○ 토론

〈세션 7〉 인구 위기 극복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주거정책

○ (주제 발표 1) 통합돌봄시대의 지방정부 주거정책의 조건과 과제

○ (주제 발표 2) 안전한 주거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토론

〈세션 9〉 인구 변화 대응 기본사회의 돌봄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

○ (주제 발표 1)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재구조화와 지방 정부의 역할

○ (주제 발표 2) 기본사회와 장애인 통합 돌봄: 현실과 이상

○ 토론

6. 제41회 인구포럼

□ 주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 개최목적

○ 지방소멸로 불리우는 지역인구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인구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

○ 지역 인구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정책적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향후 국가와 지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10:00 ~ 15:00

○ 장소: 엘타워 엘가든홀(8층)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역 인구정책

○ (주제 발표 2) 지역 인구변화 속에서 본 지자체 정책체감과 복수주소제 인식

○ (주제 발표 3) 지역 인구와 정주여건

○ (주제 발표 4) 지역 인구변화 시대의 이웃관계

○ 토론

제4장

인구정책세미나

제1절 제1차 인구정책세미나
제2절 제2차 인구정책세미나
제3절 제3차 인구정책세미나
제4절 제4차 인구정책세미나
제5절 제5차 인구정책세미나
제6절 제6차 인구정책세미나
제7절 제7차 인구정책세미나

제 4 장 인구정책세미나

제1절 제1차 인구정책세미나((구)인구정책기획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6. 18.(수), 10:00

○ 주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와 전망

○ 발표자: 박종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가. 서론

□ 기본계획 수립 前史

○ 인구정책의 시기 구분: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6),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기(2005~)(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기 배경(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 복지부에 인구정책발전위원회 설치(1995. 2), 새로운 인구정책 개발(신인구정책)

- 복지부 차관, 보사연 원장 공동위원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참여
- 우리 원 출산력조사 기반 출산율 수준 검토, 인구모멘텀 사라지면서 인구증가율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
-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정책기조전환 보고(1996. 6. 5), 인구정책 전환 공식화
- 인구증가억제정책 탈피,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주요 내용: 가족 보건 복지 증진, 출생성비 상승 억제, 인공임신중절 예방, 여성 취업 및 인력 활용, 인구고령화 대비 고령자 복지시설 정비 및 인력활용 방안 등
- 이런 기조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을 반영한 것
- 행동계획은 여성의 생식보건, 생식권리,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섹슈얼리티, 청소년 생식 보건, 젠더평등, 여성의 권리 신장 등 주목

○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율 급격히 하락, 2000년대 초반의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 근본적 위기를 알려주는 상징적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2월 설치)가 대통령 주제 국정과제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시 로드맵 보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제정, 위원회 설치,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6)

○ 인구정책 초기 보사연의 역할

1970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대통령령 제5198호)
1971	• 가족계획연구원 설립(법률 제2270호 및 대통령령 제5626호)
1976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및 대통령령 제8061호)
1981	•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통합 발족 (법률 제3417호)
1989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기능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나. 기본계획 추진 체계

□ 법 체계

○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중심주의, 발전주의, 인구의 자질향상, 국민의 책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념으로 표방
-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이후의 표방된 국제 기조는 찾아보기 어려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고령사회 정책의 범위와 주의 의제는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위원회, 사무국, 기본계획, 시행계획, 국회보고

- 위원회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 5. 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2. 2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당연직 의장)

- 위원회 위상 변화와 사무기구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기본계획	위원회 위상	사무기구
노무현정부(03-08)	대통령직속	▸ 복지부 내 사무국
이명박정부(08-13)	복지부 장관직속('08.2) 대통령직속('12.5)	▸ 복지부 내 사무국
박근혜정부(13-17)	대통령직속	▸ 복지부 내 사무국
문재인정부(17-22)	대통령직속(부위원장 상근)1대 김상희, 서형수	▸ 독립 사무처 신설(시행령개정)
윤석열정부(22-25)	대통령직속(나경원, 김영미, 주형환	▸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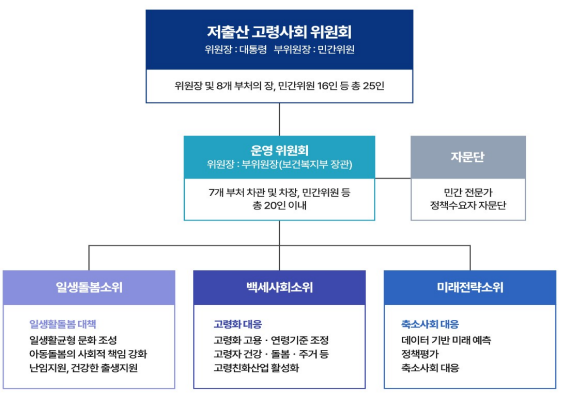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처 간 협조와 국회보고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 거버넌스

○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과정 및 내용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기초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계, 여성가족계, 보건소 등으로 일원화되지 못했고, 수립 전담부서에 따라서 지자체 시행계획의 내용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

○ 다른 한편, 행안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지방자치단체 배포

○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의 추진조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부합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지방의회에는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조례안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역 분과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 관장

▸ 이런 조치는 오히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체계와 거버넌스 혼란 야기

□ 기타(보칙)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다. 기본계획의 변화과정

□ 비전과 목표

○ 비전의 추상성

○ 목표 설정의 방향성

〈표 4-1〉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기본계획	비전	목표	
1차 (06-10)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 2011-2020: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노무현정부 (03-08)
1차 보완판			이명박정부 (08-13)
2차 (11-15)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2016-2030: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	
2차 고령사회 보완판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 2012~2015년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2016-2030년 **잠재성장률 및 재정 지속가능성** 향상	2012. 12월 발표(?)
			박근혜정부 (13-17)
3차 (16-20)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2014년 1.21 → 2020년 1.5**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 빈곤율 2014년 49.6% → 2020년 39%**	
		▸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 +α 대책』 추진	보완대책 2016. 8월 발표
3차 보완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문재인정부 (17-22) 2019. 2월 발표
4차 (21-25)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윤석열정부 (22-25)
1차 보완대책		▸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2023. 3. 28일 발표
2차 보완대책*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고령사회정책 제외) ▸ 추저출생 추세 반전(임기 내 반전계기 마련,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목표로 총력)	2024. 6. 19일 발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06, 2011, 2016, 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인구 비상대책회의 신설」, 2024년 6월-2025년 5월까지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참고] 2016년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

저출산 보완대책 기본방향 및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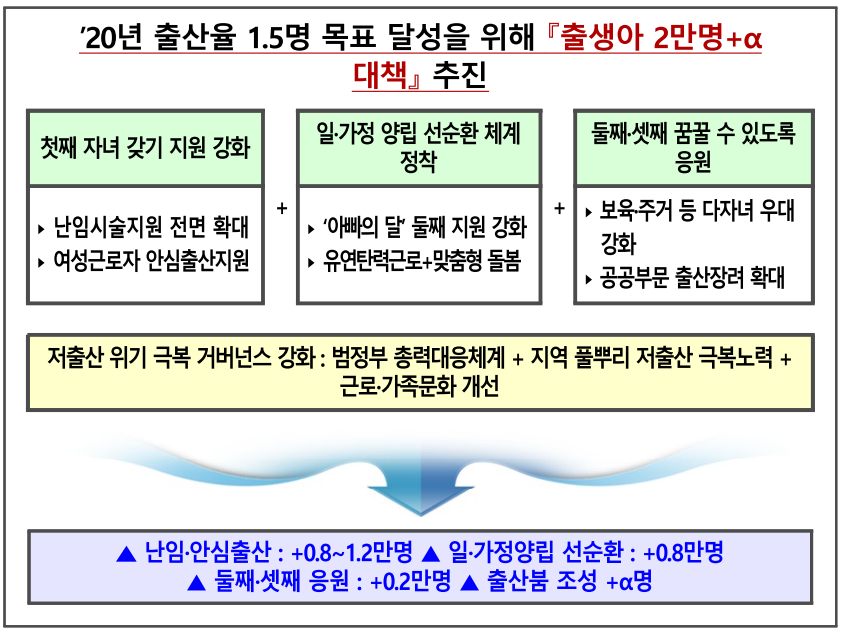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8.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표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후 주요 표어(2006~2013)

연도	기본계획	표어
2006~2008.2	1차기본계획	- 아이가 희망입니다 -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 - 아이와 엄마의 일이 함께 쑥쑥 커나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2008.3~2010	1차보완계획	-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
2011~2013.2	2차기본계획	- 마음을 더하세요 - 행복한 우리아이
2013.3	2차기본계획	-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 - 이집저집 아기웃음, 행복퐁퐁 희망쑥쑥 - 허전한 한자녀, 흐뭇한 두자녀, 든든한 세자녀

〈표 4-3〉 시기별 가족계획 표어

연도	시기구분	표어	TFR
1961~1965	알맞은 수의 자녀 운동기	○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61) ○ 우리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 ○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키우자('63)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3) ○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좋고 자식좋다('63)	6.0~5.0
1966~1970	세자녀 운동기	○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3.3.35)	5.0~4.5
1971~1975	두자녀 운동기	○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남녀는 평등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75) ○ 임신 안하는 해('74) ○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75)	4.5~3.5
1976~1980	가족계획 생활화기	○ 하루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 ○ 좋은환경 밝은가정 알고보니 가족계획	3.1~2.8
1981~1985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 운동기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 하루증가 2,000식구 설 땅마저 없어진다 ○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 둘 낳기는 이제 옛말 일등국민 하나 낳기 ○ 여보 !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 훌륭하게 키운 딸들 새시대의 주역들 ○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 적게 낳아 엄마건강 잘 키워서 아기건강 ○ 좋은 환경 밝은 가정 알고 보니 가족계획 ○ 가족계획 실천으로 복지사회 앞당기자 ○ 신혼부부 첫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2.7~1.7
1986~1990	가족계획 사업의 전환기	○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 늘어나는 인구만큼 줄어드는 복지후생 ○ 한가정 한자녀 사랑가득 건강가득 ○ 하나낳아 젊게 살고 좁은땅 넓게 살자 ○ 한부모에 한아이 이웃간에 오누이 ○ 지구가 두 개라면 해결될까요 ○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 낳아 밝은생활 ○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 사랑모아 하나낳고 정성모아 잘 키우자 ○ 낳을생각 하기전에 키울생각 먼저하자 ○ 내가이룬 가족계획 웃음짓는 우리가정	1.6~1.6

주: 1983년 이후를 한자녀운동기로 분류하기도 함(배은경, 2013)
시기구분과 시기명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30년.

□ 구성

〔그림 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표 4-4〉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과제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계	237	231	134	177
저출산	96	95	47	44
고령화	66	78	34	50
성장동력	71	58	44	42
기타(4차:인구구조변화 적응과제)	4		9	41

출처: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그림 4-2] 일본 소자화사회대책 백서와 고령사회백서



(일본) 2006년 분야별 고령사회 대책

Ⅰ. 취업·소득

1. 고령자 고용 및 취업 기회 확보

가. 지식,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보장

나.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촉진

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취업기회 보장

라. 창업 지원

마.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2.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능력 발휘

가.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에 걸친 능력의 개발

나. 여유로운 직업생활의 실현 등

다.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추진

라. 다양한 근무형태의 환경 조성

3.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가. 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공적연금제도의확립

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중립적인 공적연금제도 구축

다.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추진

라. 사회보험청 개혁 추진 방안

4. 자조적 노력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지원

가. 기업연금제도 등 정비

나. 퇴직금 제도 개선

다. 노년기에 대비한 자산형성 등 촉진

Ⅱ. 건강·복지

1. 건강증진 종합 추진

가. 평생에 걸친 건강 증진

나. 건강증진시설의 정비 등

다. 개호 예방 추진

2. 요양보험 제도의 착실한 시행으로 간병서비스강화

가. 필요한 간병 서비스 확보

나.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 치매노인 지원 대책 추진

4. 노인 의료제도 개혁

가. 새로운 노인 의료제도 신설

나. 의료비 적정화 종합 추진

5. 육아 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

Ⅲ. 학습·사회참여

1. 평생학습사회 형성

가. 평생학습 추진체계 및 기반 정비

나. 학교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보

다.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라. 근로자 학습활동 지원

2. 사회참여 활동 촉진

가. 고령자 사회참여 활동 촉진

나. NPO 등의 활동기반 정비

Ⅳ. 생활환경

1.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주거생활 보장

가.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나. 다양한 거주 형태에 대한 대응

다. 자립과 돌봄을 고려한 주택 정비

2.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대책의 종합적 추진

가. 고령자 배려형 마을만들기 종합 추진

나. 대중교통의 무장애화, 보행공간 조성, 도로교통 환경 정비

다. 건축물-공공시설 등의 개선

라. 통합적-종합적 배리어프리 시책 추진

마. 주거 복지시책과의 연계 시책

3. 교통안전 확보와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가. 교통안전 확보

나. 범죄, 인권침해, 악덕상술 등으로부터 보호

다. 방재 시책 추진

4.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 활력 있는 농산어촌 형성

[그림 4-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일가정양립 강조,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 예산 투입에 부정적: 산재, 입양, 난임 강조

○ 추진기반: 캠페인 강조(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전국조직)

[그림 4-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청년 의제 부각, 노동개혁 과제 갑자기 추가

[그림 4-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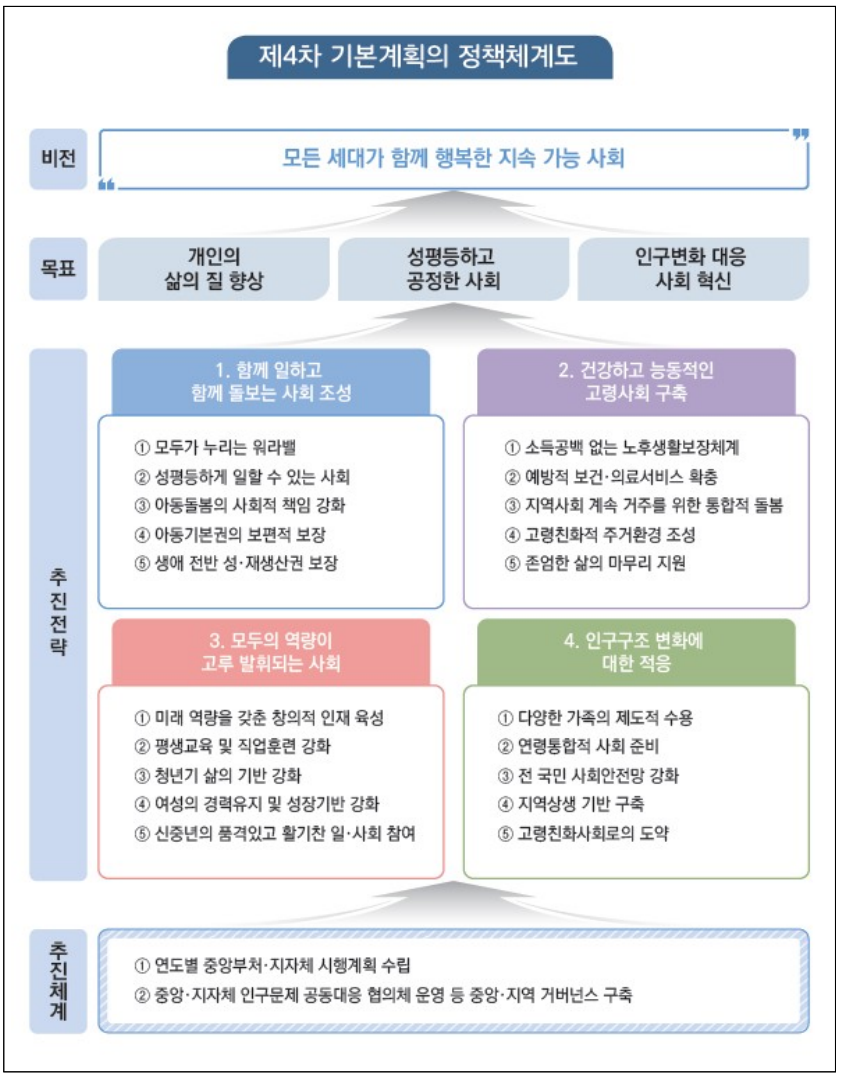

○ 양적 목표 폐기,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 표방, 성평등 가치 표방

□ 기본계획 구성의 문제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vs. 인구정책

○ 고령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라. 평가 체계

□ 성과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 성과평가 절차

○ 중앙정부 시행계획 성과평가

- 평가 시기의 문제와 평가 결과의 반영 시기의 문제

○ 지자체 성과평가

- 자체평가, 위원회 취합하여 심의 안건 처리
- 자지체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검토

마. 향후 전망

□ 사회학적 맥락에서 인구정책의 의미

○ 통치자의 언어(문제인식 틀), 국가주의적 성격을 내포하는 경향성

○ 비판적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현대 사회에서 자명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결혼, 임신, 출산 행동이 (구조 내에서)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청년의 독립과 자립 기반 지원, 가족형성초기 돌봄과 경제적 기반 강화에 중점 필요

□ 기본계획의 의미

○ 기본계획은 ①결혼 출산에 간접적이지만 밀접한 사회정책적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어야하고, ②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①을 통해 (자유 선택적)결혼 출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②를 통하여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해야 함

제2절 제2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6. 30.(월), 16:00

○ 주제: 인구·가구추계 모형 개발 현황과 과제

○ 발표자: 송창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류재린 부연구위원, 이지혜C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제2차 인구정책세미나

인구 · 가구 추계모형 개발 현황과 과제

2025. 06. 30.

송창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목차
Table of contents

01 과제 개요
02 인구 추계
03 가구 추계
04 통합 이슈
05 향후 과제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1 과제 개요

KIHASA 인구 · 가구추계 모형 개발 현황

✓ **2023년: 인구추계 모형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 통계청 코호트요인법 구현
- LC류 사망력 추계 방법론 구현

✓ **2024년: 가구추계 모형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 통계청 혼인상태별 가구주율법 구현
- 인구추계와의 연계 방안 도출

✓ **2025년: 인구추계 모형 개선**
- 출산 및 사망력 추계 방법 개선
- 인구·가구 통합 추계 방법 구현
- MSM 모형과 연계 검토
- 건강수명, 노동수명 등 추가 지표 생산 검토

✓ **2026년 이후: 인구변동과 사회보장 수요 예측 연계**
- 인구-사회보장 연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확보
- 인구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보장 수요 시뮬레이션 체계 개발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1) 개요 – 주요 방법론

✓ **코호트요인법**
- 전체 인구를 출산력(fertility), 사망력(mortality), 이동력(migration) 관련 리스크가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방법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론

✓ **마이크로시뮬레이션**
- MSM은 '개인, 가구 혹은 기업 등의 미시적 분석 단위 수준(micro-level)에서 작동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도구'로 정의
- 인구통계적 MSM은
  ① 출산율과 사망률의 장기 변화, 인구 전환(Demographic transition)
  ② 인구통계학적 사건과 관련된 규칙 및 선호 변화, 가족구성 변화
  ③ HIV/AIDS 등의 질병
  ④ 간접적인 인구 추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인공지능 등 활용한 방법론**
- 국토연구원 -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AI 모델
- 덴마크 - Live to Vec("Using Sequences of Life-events to Predict Human Lives")

※ 주요 국가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개요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독 일	호 주	일 본
작성기관	통계청	U.S. Census Bureau	Statistics Canada	Federal Statistical Offi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작성방법	코호트요인법					
작성명칭	장래인구추계	Population projection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opulation projection	Population projections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최근작성연도	2022년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3년
작성주기	2/3년	2-3년	5년	3년	5년	5년
추계기간	2072(2122)	2060	2068	2060	2066	2070(2120)
작성항목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출산력(출생아, 합계출산율), 사망력(사망자, 기대수명), 순이동 등					
수집자료	기존인구(센서스/등장인구),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통계, 생명표 등)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1) 개요 – 통계청 방법론

✓ **코호트요인법**
- 인구균형 방정식: 인구$_{t+1}$ = 인구$_t$ + 출생아$_t$ – 사망자$_t$ + 순이동자$_t$
- 2023년 연구 구축 완료

✓ **사망력 가정(향후 50년 가정 공개)**
- LC류(LC, LL, LC-ER, LLG 확장) 모형
- 2023년 연구 구축 완료, '25년 연구에서 100세+ 개선 중

✓ **출산력 가정(향후 100년 가정 공개)**
- 단기(혼인추세 고려) / 장기(시계열) 구분하여 가정
-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분포(GLG) 가정
- 개선 필요, '25년 연구에서 개선 중

✓ **이동력 가정 (향후 100년 가정 공개)**
- 내국인과 외국인 분리 가정
- 내국인은 순 이동률, 외국인은 체류유형별 출입국자 추계
- 추후 개발

※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 방법론 비교

	2020년 기준 추계		2022년 기준 추계		비고
추계기간	50년 추계 (2020~2070년) 100년 추계(2070~2120년)* * 100년 추계 결과는 부록으로 제공		50년 추계 (2022~2072년) 100년 추계(2072~2122년)* * 100년 추계 결과는 부록으로 제공		-
자료원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인구동태(출생·사망), 국제인구이동통계 및 국적변동자료		좌동		-
기준인구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인구 (시점만 부합)		좌동		-
출생	단기	혼인추세반영 • '22~'23년 누적출생을 보정	단기	혼인추세반영	코로나發 인구절벽 충분 미 확인/반영 반영
	장기	시계열 모형 출산력 지연과 회복만 추세 반영 로그감마 모형	장기	좌동	-
사망	Li-Lee-Gerland 확장모형(2013)		좌동		-
국제이동	내국인과 외국인 분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		좌동		-
	- 내국인은 순이동률 추계		좌동		-
	- 외국인은 체류유형별 인·출국 추세 반영한 모형으로 입·출국자 추계		좌동		-
시나리오	시나리오 고려 • 초저(27) : 출산 3개 × 사망 3개 × 국제이동 3개 • 특별4추: ① 국제 무(zero)이동 ② 출산율 현수준 지속 (2020년 출산율 지속) ③ 출산율 OECD 평균 ④ 코로나19 장기영향* *출생과 국제이동에 장기간 저속 가정 단순 가정 참고 시나리오 • 출산율 단순 가정 (2070년 출산율이 0.8~2.2명에 수렴) • 출산율 및 주요 연령계층별 구성비를 참고자료로 제공		시나리오 고려 • 초저(27) : 출산 3개 × 사망 3개 × 국제이동 3개 • 특별4추: ① 국제 무(zero)이동 ② 출산율 현수준 지속 (2022년 출산율 지속) ③ 출산율 OECD 평균 ④ 시범적 코로나19 장기영향 단순 가정 참고 시나리오 • 출산율 단순 가정 (2072년 출산율이 0.8~2.1명에 수렴) • 외국인 국제이동 단순 가정 (외국인 순이동자수 30천명, 88천명, 100천명, 150천명, 200천명 저속 지속) • 출산율 및 주요 연령계층별 구성비를 참고자료로 제공	통계수요 반영 의국인 장래인구 감안한 초고령 시나리오 추가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2) 코호트요인법 – 인구균형방정식

✓ **인구균형방정식 성별 연령별 적용 수식**

※ Notation

$P^s_{x,t}$: t년도의 성별(s), 연령별(x) 연앙인구
B^s_t : t년 7월에서 t+1년 6월까지의 성별(s) 출생아 수
$L^s_{x,t}$: t년도의 성별(s), 연령별(x) 정지인구(생잔표)
$l^s_{0,t}$: t년도의 성별(s), 연령별(x) 생존자 수(생잔표)
$T^s_{x,t}$: t년도의 성별(s), 연령별(x) 총잔존연수(생명표)
$N^s_{x,t}$: t년 7월에서 t+1년 6월까지의 성별(s), 연령별(x) 순이동자 수
$ASFR_{x,t}$: t년도의 연령별(x) 출산율

• 0세

$$P^s_{0,t+1} = B^s_t \times \frac{L^s_{0,t}}{l^s_{0,t}} + \frac{N^s_{0,t}}{2},$$

$$B^s_t = w^s \times 0.5 \times \sum_{x=15}^{49} \left(P^f_{x,t} \times ASFR_{x,t} + P^f_{x+1,t+1} \times ASFR_{x+1,t+1} \right)$$

• 1~99세

$$P^s_{x+1,t+1} = \left(P^s_{x,t} + \frac{N^s_{x,t}}{2} \right) \times \frac{L^s_{x+1,t}}{L^s_{x,t}} + \frac{N^s_{x+1,t}}{2}$$

• 100세+

$$P^s_{100+,t+1} = \left(P^s_{99,t} + \frac{N^s_{99,t}}{2} \right) \times \frac{L^s_{100,t}}{L^s_{99,t}} + \left(P^s_{100+,t} + \frac{N^s_{100+,t}}{2} \right) \times \frac{T^s_{101,t}}{T^s_{100,t}} + \frac{N^s_{100+,t}}{2}$$

KIHASA

02 인구 추계

2) 코호트요인법 – 생명표

✓ 주요 연령대별 산식

• 0세 $q_0 = \frac{m_0}{1+(1-a_0)\times m_0}$

$m_0 < 0.107$인 경우
(남) $a_0 = 0.045 + 2.684 \times m_0$
(여) $a_0 = 0.053 + 2.800 \times m_0$

$m_0 \geq 0.107$인 경우
(남) $a_0 = 0.330$
(여) $a_0 = 0.350$

• 1~99세 50세 이전 $q_x = \frac{m_x}{1+0.5\times m_x}$

50세 이후 $q_x = \frac{m_x}{1+(1-a_x)\times m_x}$ $\quad a_x = 1 + \frac{1}{m_x} - \frac{1}{1-e^{-m_x}}$

• 100세+ [통계청] m_x를 110세까지 연장 → [본 연구] Greville 보정

※ 통계청 완전생명표 작성법('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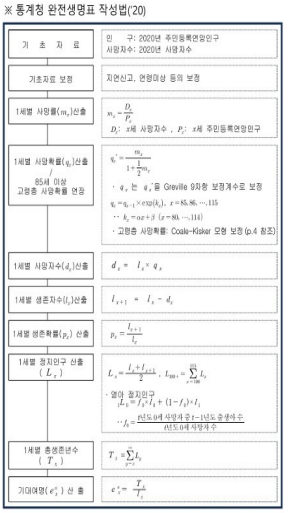

KIHASA

02 인구 추계

2) 코호트요인법 – 생명표

✓ 추계 시 적용 방법

• 연앙인구 기준으로 산출을 위해 두개 연도의 생명표를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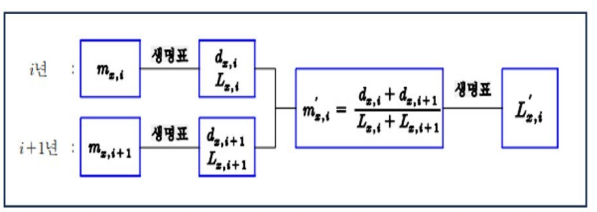

KIHASA

02 인구 추계

2) 코호트요인법 – 결과 비교

✓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

- KOSIS에 제공된 인구변동요인 입력
- 2070년 이후 사망률은 2070년 값 고정
- 2070년 수치는 '70년과 '71년 값 필요

(단위: 명)

구분		차이(B-A)					
		2021	2030	2040	2050	2060	2070
고위	0세	-7	-5	-4	1	30	43
	1~99	-14	-142	-386	-508	-391	-141
	100+	-10	-206	-543	-240	-1,788	-1,110
중위	0세	-2	-1	-4	-3	15	25
	1~99	-14	-87	-202	-267	-285	-98
	100+	-10	-179	-499	-64	-1,214	-504
저위	0세	-5	3	10	1	13	21
	1~99	-14	111	343	514	703	938
	100+	-10	-151	-297	62	-759	-74

주: 1) 통계청의 출생, 사망, 국제순이동 가정을 활용하여 KIHASA 모형에서 실행한 결과임.
2) 연령별 결과 비교에서는 남, 여를 합친 전체 인구를 비교.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2021.12.09) 및 저자 작성.

(단위: 천 명)

구분		통계청(A)			본 연구(B)[1]			차이(B-A)		
		2030	2050	2070	2030	2050	2070	2030	2050	2070
인구	계	51,199	47,359	37,656	51,199	47,358	37,656	0	-1	0
	남	25,534	23,495	18,788	25,534	23,494	18,787	0	-1	-1
	여	25,665	23,864	18,868	25,665	23,864	18,869	0	0	1
출생	계	305	236	196	305	236	196	0	0	0
	남	156	121	101	156	121	101	0	0	0
	여	149	115	96	149	115	96	0	0	0
사망	계	408	680	702	408	680	705	0	0	3
	남	215	345	345	215	345	347	0	0	2
	여	192	335	357	192	335	358	0	0	1
이동	계	46	43	40	46	43	40	0	0	0
	남	25	23	20	25	23	20	0	0	0
	여	21	20	20	21	20	20	0	0	0

주: 1) 통계청의 출생, 사망, 국제순이동 가정을 활용하여 KIHASA 모형에서 실행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2021.12.09) 및 저자 작성.

KIHASA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사망력

✓ **기초자료**

- 1970년~최근의 완전생명표(KOSIS)

✓ **공통사망경향 반영 여부**

- LL, LLG

✓ **사망률 개선 교대효과 반영 여부**

- LC-ER, LLG 확장

✓ **실적 조정**

- 기대수명(e0) 활용
- 사망자 수를 고려하는 부분 반영 X

※ LC류 사망률 모형식과 특징

모형	모형식	특징
LC	모형 : $\ln(m_{x,t}) = a_x + b_x k_t + \epsilon_{x,t}$, $t = 1, \ldots, n$ 추정 : $\hat{a_x} = \frac{1}{n}\sum_t \ln(m_{x,t})$, $\hat{b_x}, \hat{k_t}$: SVD 분해	공통사망경향(X), 사망률 개선 교대효과(X)
LL	모형 : $\ln(m_{x,t,i}) = a_{x,i} + B_x K_t + b_{x,i} k_{t,i} + \epsilon_{x,t,i}$, $t = 1, \ldots, n$, $i = m, f$ 추정 : $\widehat{B_x}, \widehat{K_t}$: 공통사망률 SVD 분해 $\widehat{a_{x,i}} = \frac{1}{n}\sum_t \ln(m_{x,t,i})$, $\widehat{b_{x,i}}, \widehat{k_{t,i}}$: SVD 분해	공통사망경향(O), 사망률 개선 교대효과(X)
LC-ER	모형 : $\ln(m_{x,t}) = a_x + B_{x,r} K_t + \epsilon_{x,t}$, $t = 1, \ldots, n$ 추정 : $\hat{a_x} = \frac{1}{n}\sum_t \ln(m_{x,t})$, $\hat{b_x}, \hat{k_t}$: SVD 분해 LC 파라미터 추정 이후 LC-ER의 $B_{x,r} K_t$와 LC의 $b_x k_t$가 동일해지도록 K_t를 조정	공통사망경향(X), 사망률 개선 교대효과(O)
LLG 확장	모형 : $\log(m_{x,t,i}) = a_{i,x} + B_{x,r} K_t^* + b_{i,x,r} k_{i,t} + \epsilon_{i,t}$ 추정 : LC-ER과 동일한 방식으로 $\widehat{B_{x,r}}, \widehat{K_t}$ 추정 LL과 동일한 방식으로 $\widehat{b_{x,i}}, \widehat{k_{t,i}}$ 추정 $B_{x,r} K_t^*$이 $B_{x,r} K_t$ 와 동일해지도록 K_t^* 조정	공통사망경향(O), 사망률 개선 교대효과(O)

자료: Lee & Carter(1992), Li & Lee(2005), Li & Gerland(2011), Li, Lee & Gerland(2013)를 활용하여 저자 재정리.

KIHASA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사망력

✓ **본 연구 적용 모형**

- LLG 확장 모형

✓ **사망률 개선 교대 효과**

- 기대수명 80세 이후 적용
- 우리나라 2021년 이미 80세 이상
- 저연령층 연령효과 낮아지고
- 고연령층 연령효과 높아짐
- w_t를 적용, 초고령화 될수록 B_x^H에 수렴

※ 사망률 개선의 교대효과 추정식

LLG 확장 모형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 효과 산식

· LLG 확장 모형의 모형식

$$\log(m_{i,x}) = a_{i,x} + B_{x,1}K_t^{*} + b_{i,x,1}k_{i,t} + \epsilon_{i,t}$$

· 사망률 개선 교대 효과

$$B_{x,t} = \begin{cases} B_x & , c_{0,t} < 80 \\ (1-w_t)B_x + w_t B_x^H & , 80 \le c_{0,t} < 103 \\ B_x^H & , 103 < c_{0,t}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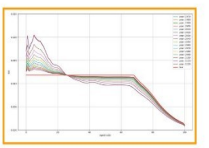

$$B_x^H = \begin{cases} \dfrac{1}{51}\sum_{x=15}^{69} B_x & , 0 \le x \le 67 \\ Bx \times \dfrac{B_{67}^H}{B_{68}} & , 68 \le x \le 103 \end{cases}, \quad w_t = \frac{c_{0,t}-80}{103-80}, \quad w_t^* = \left[0.5\left\{1+\sin\left(\frac{\pi}{2}(2w_t-1)\right)\right\}\right],$$

$c_{0,t}$: t년도 기대수명

자료: 통계청(2021a), 오진호, 김순영(2018), 김현식 외(2016), Li, Lee & Gerland(2013)를 활용하여 저자 재정리.

KIHASA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사망력(결과비교)

※ 인구 및 기대수명

(단위: 천 명)

구분		통계청(A)			본 연구(B)[1]			차이(B-A)		
		2030	2070	2120	2030	2070	2120	2030	2070	2120
인구	계	51,199	37,666	20,953	51,196	37,660	20,946	-3	-6	-8
	남	25,534	18,788	10,571	25,532	18,784	10,562	-2	-4	-9
	여	25,665	18,878	10,383	25,664	18,876	10,384	-1	-2	2
출생	계	305	196	111	305	196	111	0	0	0
	남	156	101	57	156	101	57	0	0	0
	여	149	95	54	149	95	54	0	0	0
사망	계	408	702	300	407	702	300	-1	0	0
	남	215	365	151	215	365	151	0	0	0
	여	192	337	149	192	337	149	0	0	0
이동	계	46	40	36	46	40	36	0	0	0
	남	25	20	18	25	20	18	0	0	0
	여	21	20	19	21	20	19	0	0	0

(단위: 세)

구분		통계청(A)				본 연구(B)[1]				차이(B-A)			
		2030	2050	2090	2120	2030	2050	2090	2120	2030	2050	2090	2120
고위	계	86.6	91.2	94.0	95.9	86.6	91.3	93.9	95.8	0.0	0.1	-0.1	-0.1
	남	83.9	89.3	92.5	94.6	83.9	89.3	92.4	94.6	0.0	0.0	-0.1	0.0
	여	89.3	93.2	95.5	97.1	89.3	93.2	95.4	97.0	0.0	0.0	-0.1	-0.1
중위	계	85.7	90.1	92.9	94.9	85.7	90.1	92.9	94.9	0.0	0.0	0.0	0.0
	남	83.0	88.3	91.5	93.8	83.0	88.2	91.5	93.8	0.0	-0.1	0.0	0.0
	여	88.4	92.0	94.3	96.0	88.4	92.0	94.3	96.0	0.0	0.0	0.0	0.0
저위	계	84.7	88.8	91.7	93.8	84.7	88.7	91.6	93.8	0.0	-0.1	-0.1	0.0
	남	82.1	87.1	90.5	93.0	82.1	87.0	90.4	92.9	0.0	-0.1	-0.1	-0.1
	여	87.3	90.4	92.9	94.7	87.3	90.4	92.8	94.7	0.0	0.0	-0.1	0.0

주: 1) 통계청의 출생, 국제순이동 가정 및 본 연구의 사망률을 활용하여 KIHASA 모형에서 실행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2021.12.09) 및 저자 작성.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출산력(통계청)

✓ **기초자료**
- 인구동향조사

✓ **기간 출산 추이 분석**
-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출생성비 등 분석

✓ **코호트 출산 추이 분석**
- 코호트별 완결출산율(평균출산자녀수), 평균출산연령 분석

✓ **혼인 출생 추이 분석**
- 혼인 중 출생아 비율, 초혼연령, 출생아 모의 결혼기간 분석

✓ **출생 추계**
-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추계
- 단기추계와 장기추계를 가중평균법으로 평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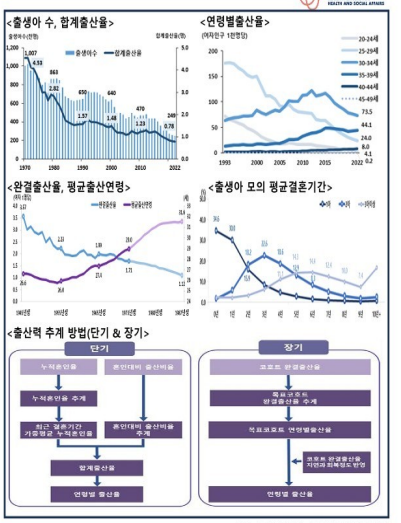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출산력(통계청-단기)

✓ **연도별 누적혼인율 추계**
- 연도별 누적 혼인율 추계(Lee-Carter(1992))
- 최근 결혼기간 가중평균 누적 혼인율 산출(만 39세까지)

✓ **출산순위별 혼인대비 출산비율 예측**
- 출산순위별 혼인대비 출산비율 예측(Lee-Carter(1992))
- 혼인한 사람의 출산순위별 출산 비율을 의미

✓ **합계출산율 예측**
- 누적혼인율과 출산순위별 혼인 대비 출산 비율의 곱

✓ **연령별 출산율 분포(GLG: 일반화로그감마모형) 예측**
- GLG : 정규분포 형태를 갖는 4개 모수로 이뤄진 분포 함수
- 각 모수는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C), 평균출산연령(μ), 출산연령의 표준편차(b), GLG 분포의 형태(λ: Shape)을 나타냄

<합계출산율 예측>

$$TFR_t = \sum_x M_{x,t} h_{x,t} + \epsilon_t$$

- TFR_t : t시점의 합계출산율
- $M_{x,t}$: t시점의 출산순위 x(1,2,3+)별 최근 혼인율*
- $h_{x,t}$: 혼인한 여성1명당 t시점의 출산순위 x(1,2,3+)변체 아이 출산 비율**

$$M_{x,t} = \sum_k m_k w_{x,k}$$

- m_k : 결혼기간 k시점 39세까지의 누적혼인율
- $w_{x,k}$: 출산순위 x(1,2,3+)별 출산의 결혼기간 k시점 출산 비중 가중치

- k: 결혼기간, $\begin{cases} t-2, & t \\ t-6, & t-2 \\ t-9, & t-6 \end{cases}$ $\begin{cases} (\text{if } x=1) \\ (\text{if } x=2) \\ (\text{if } x=3+) \end{cases}$

$w_{x,k} = p_{x,k} / \sum p_{x,k}$
- $p_{x,k}$: 출산순위 x(1,2,3+)별 결혼기간 k시점 비중

* 최근 결혼기간 가중평균 누적혼인율: 연도별 39세까지의 누적혼인율에 출산순위별로 결혼기간별 비중을 가중평균한 누적혼인율, 1아는 최근 3년간 2아는 최근 4-6년, 3아 이상은 최근 4-9년 누적혼인율을 가중평균
** 혼인대비 출산비율 = 출산순위별 출산율 / 출산순위별 최근 결혼기간 가중평균 누적혼인율

<연령별 출산율 분포 예측>

$$f(x) = \frac{C|\lambda|}{b\Gamma(1/\lambda^2)}\left(\frac{1}{\lambda^2}\right)^{\lambda^{-2}} \exp\left[\frac{1}{\lambda}\left(\frac{x-u}{b}\right) - \frac{1}{\lambda^2}\exp\lambda\left(\frac{x-u}{b}\right)\right]$$

- C : 출산순위별 출산확률 (출산순위 1차고위 시, 합계출산율과 동일)
- u : 평균출산연령수
- b : 평균출산연령(u)의 표준편차
- λ : 분포의 형태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출산력(통계청-장기)

✓ **목표코호트의 완결출산율 예측**

- 목표코호트는 2007년생으로 2022년 15세(가임연령 진입)
- 1948~1987년생의 완결출산율을 기초로 시계열모형을 적용
- 목표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분포를 GLG모형에 적합
- 2007년 이후 출생자의 연령별 출산율은 목표코호트와 동일

✓ **1988~1992년생 코호트의 완결 출산율을 예측**

- 출산의 지연과 회복을 계량화, 해당 코호트의 완결출산율 예측
- 해당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 분포를 일반화로그감마모형 적합
-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을 기간 연령별 출산율로 전환
- 1992년생~2007년생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지수보간

✓ **단기추계와 장기추계를 가중평균법으로 평활**

- 단기추계 마지막 연도(2025년)
- 장기추계 시작 연도(2037년)

<출산의 지연과 회복 고려 방법>

$$CFR_c(49세) = \{CFR_b(40세) + d_c(40세)\} \times \frac{CFR_{last}(49세)}{CFR_{last}(40세)}$$

- $CFR_c(49세)$: 적정코호트 완결출산율, $CFR_b(40세)$: 준거코호트 40세 누적출산율, $d_c(40세)$: 적정코호트 40세에서의 출산 지연 수준
- $CFR_{last}(40세)$, $CFR_{last}(40세)$: 기준연도 기준 해당연령(40, 49세)의 출산율이 관찰되는 코호트 중 가장 최근 코호트의 해당연령 누적출산율
- $d_c(40세) = d_c(m) + r_c(40세) \quad = d_c(m) \times PR_c(m) + r_c(40세) \times RR_c(40세)$
- $PR_c(m) = \frac{d_c(m)}{d_c(m)}$, (지연비) 적정연령 m세에서 표준코호트와 준거코호트 간 누적출산율 차이 대비 특정코호트와 준거코호트 간 누적출산율 차이
- $RR_c(40세) = \frac{r_c(40세)}{r_c(40세)}$, (회복비) 40세에서 표준코호트와 준거코호트 간 누적출산율 차이의 회복수준 대비 특정코호트와 준거코호트 간 누적출산율 차이의 회복수준
- $r_c(40) = d_c(40) - d_c(m)$, 지연된 출산의 40세 회복 수준
- 적정연령(m): 준거코호트와 특정코호트의 누적출산율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연령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을 기간 연령별 출산율로 전환 방법>

$$PASFR^{x}_{y+x} = CASFR^{x}_{y}$$

- $CASFR^{x}_{y}$는 y년도 출생코호트의 x세 출산율(코호트)
- $PASFR^{x}_{y+x}$는 (y+x)년도의 x세 출산율(기간)

<단기추계, 장기추계 평활 방법>

$$TFR_t = \sum_{i=15}^{49}(1-w_i)ASFR_{t,i} + \sum_{i=15}^{49} w_i ASFR_{l,i}$$

- $ASFR_{t,i}$: x시점의 연령 i 출산율
- x : 단기추계 마지막 연도, 중위 : 2025년, 고위 : 2024년, 저위 : 2020년
- l : 장기추계 시작 연도, 2037년
- $w_i = \frac{l-x}{l-x}$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15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출산력(통계청-결과)

✓ **누적혼인율 및 혼인대비 출산비율 가정**

- 누적혼인율(만 39세까지)은 2022년 0.50 ~ 2026년 0.46
- 혼인대비 출산비율은 2022년 1.37명 ~ 2026년 1.25명

✓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 평균출산연령은 2022년 33.4세 ~ 2072년 33.6세
- 출생성비는 104.9명(최근 3년 평균 유지)

✓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까지 하락 후 2049년 이후 1.08
- 저위 가정에서는 2026년 0.59명까지 하락 후 2047년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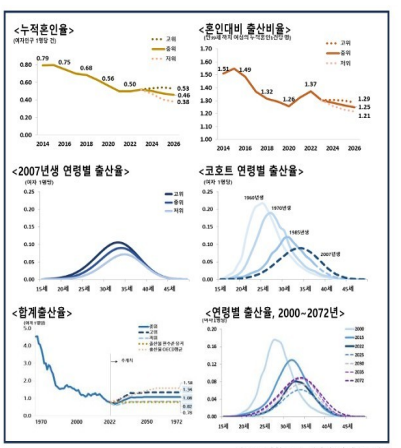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1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이동력(통계청)

✓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성 고려**

✓ **내국인 이동력 추계 가정은 최근 10년 평균 적용**

- 내국인 국제이동은 성 및 연령(각 세)별로 이동률을 가정
- 각 특성별 최근 10년('09~'18년)*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가정

* 10년 중 순 이동률 최대, 최소 1개 연도 제외 8개 연도 평균 활용

✓ **외국인 국제이동은 체류자격별 이동 특성 고려**

- 입국자 수와 출국자 수를 체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계
- 체류 유형은 정주, 교체순환, 단기*로 구분함

*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

- 외국인 입국은 성 및 체류 유형별 AR(1) 적용 후, 특성별 총량을 입국자 연령 구성비의 평균을 활용 배분
- 외국인 출국은 성 및 체류 유형, 연령별로 추계
- 과거 5개년 입국자 평균 대비 출국자 수로 출국률을 산출하고 연령별 입국자에 출국률을 곱하여 연령별 출국자 수를 추계

<내국인 성 및 연령별 국제 순이동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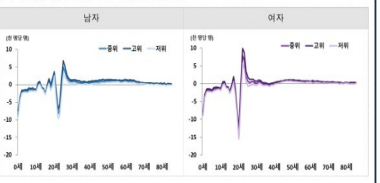

<입국자 수 추계 방법>

$$(E_{g,x,t} - \mu^{E}_{g,x}) = \beta_{0,g,x} + \beta_{1,g,x}(E_{g,x,t-1} - \mu^{E}_{g,x}) + \varepsilon_{g,x,t}$$

- E: 입국자, g : 성별, v : 체류유형, t : 연도, $\mu^{E}_{g,x}$: 2011 – 2018년 평균, $\mu^{E}_{g,x}$: 2010 – 2017년 평균
- $\varepsilon_{g,x,t}$은 $\varepsilon_{g,x,t-1}$과 독립!

<출국률 산출 방법>

$$\text{출국률}_{g,x,v,t} = \frac{D_{g,x,v,t}}{(E_{g,n,x,t} + E_{g,n,x-1,t-1} + E_{g,n,x-2,t-2} + E_{g,n,x-3,t-3} + E_{g,n,x-4,t-4})/5}$$

- D: 출국자, E: 입국자, g : 성별, v : 체류유형, x : 연령, t : 연도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2 인구 추계

3) 인구변동요인 추계 – 이동력(통계청 – 결과)

✓ **장래 국제순이동 가정**

- 국제순이동(중위)는
  2022년 155천 명 2030년 65천 명 ~ 2072년 61천 명
- 고위가정에서는 2030년 124천 명 ~ 2072년 133천 명
- 저위가정에서는 2030년 7천 명 ~ 2072년 13천 명

<국제순이동(전체), 200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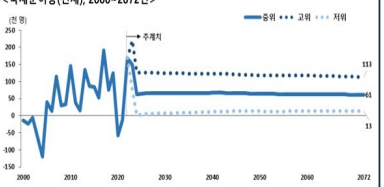

<연도별 국제순이동 가정, 2022~2072년> (단위: 천명)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중 위	전 체	155	155	63	65	65	66	64	63	61
	내국인	-61	0	11	11	11	12	9	8	6
	외국인	215	155	53	53	55	55	55	55	55
고 위	전 체	155	228	126	126	124	123	118	117	113
	내국인	-61	24	31	31	29	27	22	22	18
	외국인	215	204	95	95	96	96	96	96	96
저 위	전 체	155	82	0	3	7	11	13	13	13
	내국인	-61	-24	-10	-8	-7	-3	-1	-1	-1
	외국인	215	106	10	12	14	14	14	14	14

- 2022년 실적치와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잠정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등 입·출국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03 가구 추계

1) 개요 – 주요 방법론

✓ **정태(Static)적 방법론**

- 가구주율법
- 확장 가구주율법
- 개인 특성법

✓ **동태(Dynamic)-거시 방법론**

- 가구주 전이율법
- 다차원 모델
- 생명표법

✓ **동태(Dynamic)-미시 방법론**

- 가구 시뮬레이션 통합모델(INAHSIM) Integrated Analytical Model for Household Simulation

※ 주요 국가별 가구추계 작성 개요

구분	호주[1]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공표연도/추계 기간	2024/(2021~2046)	2010/(2010. 4.~7.)	2020/(2021~2041)	2022/(2022~2050)
작성 주기	5년	10년	5년	3년
작성 기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U.S. Census Bureau	CMHC[2]	환경평가청(PBL) 통계청(CBS)
작성 방법	Propensity method (McDonald & Kippen, 2006)	가구주율법	가구주율법	PEARL(Projecting population Events At Regional Level) model
최근 추계 방법 동향 및 자료 원천	Sequential Propensity household projection model (Wilson, 2013)	2018년 12월 민간 JCHS[3]에서 가구추계 결과 제시 2018~2038	Household Projections – National and Provincial Analysis, 2020: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18 to 2068, Statistics Canada (2019) 자료 활용	가구주 지위별 전이 동태 접근 방법 (LIPRO, NIDI)
지역별 추계	states and territories, capital cities, rest of states	2010.4.1.~7.1 (all states and counties)	sub-national level 2019~2041	regional household or municipal level 2011~2040

구분	영국				일본	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공표연도/추계 기간	2020/(2018~2043)	2020/(2018~2043)	2020/(2018~2043)	2016/(2016~2041)	2024 (2020~2045)[1]	2022 (2020~2050)
작성 주기	2년	2년	3년	비정기적	5년	5년
작성 기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Llywodraeth Cymru Welsh Government	(NISRA) Northern Ireland Statistics and Research Agency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Statistics of Korea (KOSTAT)
작성 방법	HRP에 근거한 HRR 예측	HRP에 근거한 HRR 예측	가구 구성률 propensity model과 유사	가구 구성률 수정 지수 모형	가구주율법과 가구전이율법(지역) 가구주율법	혼인상태별 가구주율법
최근 추계 방법 동향 (정부, 민간 연구소 등)	HRP 자료를 2단계 지수 모형에 대입하여 HRR 예측 HRR*추계 인구	HRP에 근거한 HRR 예측	가구 구성률 (membership rate)		가구 전이행렬법 이용 2024년 하반기 (2020~2040년 가구추계 발표 예정)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동태 접근 방법인 전이행렬법 다차원 모델 (LIPRO, ProFamy) 모색
지역별 추계	region of England	2 national park level and 32 council areas	3 national park level (2021) 22 local authority areas (2021)	11 local Government Districts	도도부현별 (2019.4) 2015~2040	17개 지방자치별 (2022) 2020~2050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03 가구 추계

1) 개요 – 통계청 방법론

✓ **가구추계 대상인구**

- 인구추계(중위)를 기준으로 작성
- 제외인구 추정(외국인, 시설 및 집단 가구)

✓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사망
- 각 상태별 전이율 전망

✓ **가구수 및 가구구성 추계**

- 가구주율 전망(각 상태별 인구에 곱함)
- 가구수(1인, 2인, ..., 5인 이상) 비율 전망
- 가구구성(가구원수별 특성) 비율 전망

<가구추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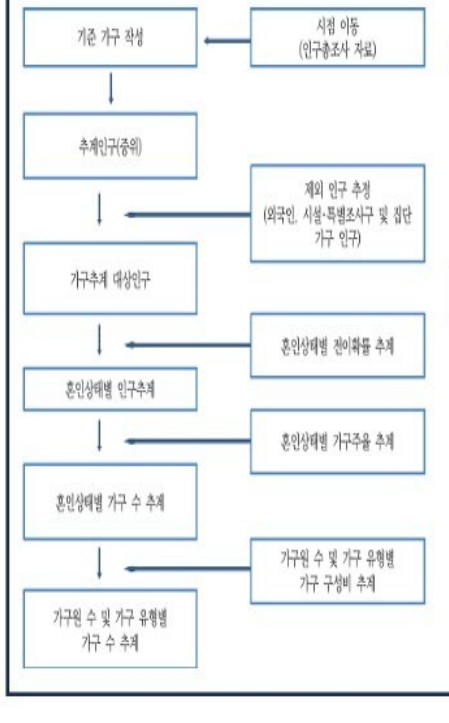

<혼인상태별 전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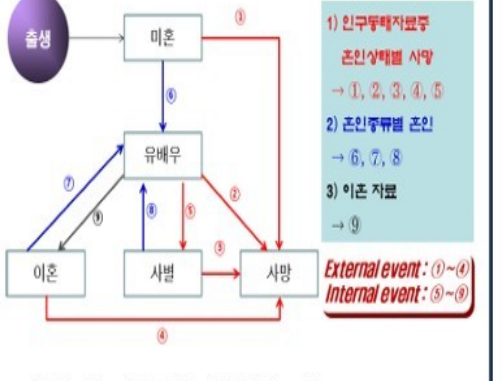

<가구수 및 가구구성 비율 전망 모형>

- 수정지수 모형 : $h_{m\cdot x\cdot t} = d + ab^{c_t}$
- $h_{m,x,t}$: 혼인상태(m), 연령(x), 연도(t)의 가구주율
- d : $\begin{cases} h_{m,x,2020} > h_{m,x,2005} \rightarrow 1 \\ h_{m\cdot x\cdot 2020} < h_{m\cdot x\cdot 2005} \rightarrow 0' \end{cases}$ • a : $h_{m\cdot x\cdot 2005} - d$
- b : $(h_{m,x,2020} - d)/(h_{m,x,2005} - d)$ • c_t : $(t-2005)/(2020-2005)$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KIHASA

03 가구 추계

2) KIHASA 가구추계 방법

✓ **가구추계 대상인구 순서**
-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이후 대상인구 추정
- 가구추계와 인구추계간 정합성 확보 위함

✓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상태-동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사망
- 연도 및 각 상태별 전이율: 인구추계 결과 활용

✓ **가구수 및 가구구성 추계**
- 수정지수모형 활용
- 가구수(1인, 2인, ..., 5인 이상) 및 가구구성(가구원수별 특성) 각각 모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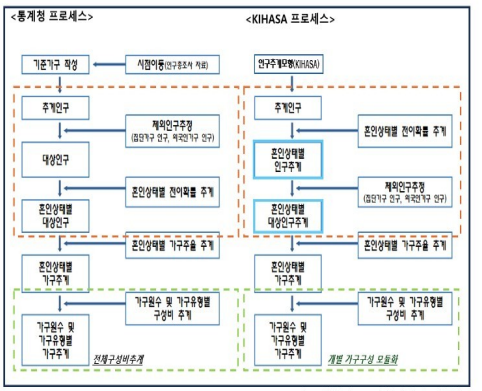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21

KIHASA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혼인상태별 대상인구

✓ **데이터**
- 대상인구: 가구추계(2005, 2010, 2015, 2020, 2022년)
- 혼인상태별 이동: 인구동향조사-사망, 이혼, 혼인(MDIS)
- 인구동향조사-혼인: ①-3, ③-3, ④-3
- 인구동향조사-사망: ①-2, ②-2, ③-2, ④-2
- 인구동향조사-이혼: ②-4

✓ **가정**
- 유베우자 사별: ②-3 ≈ ②-2
- 혼인상태별 사망자 수 ≈ 인구추계 사망자 수
- t-1년 혼인상태별 인구 비중 이용 t년 비중 전망
- 대상인구 비중은 통계청 가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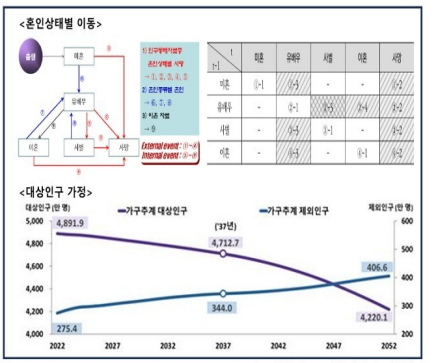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22

KIHASA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혼인상태별 대상인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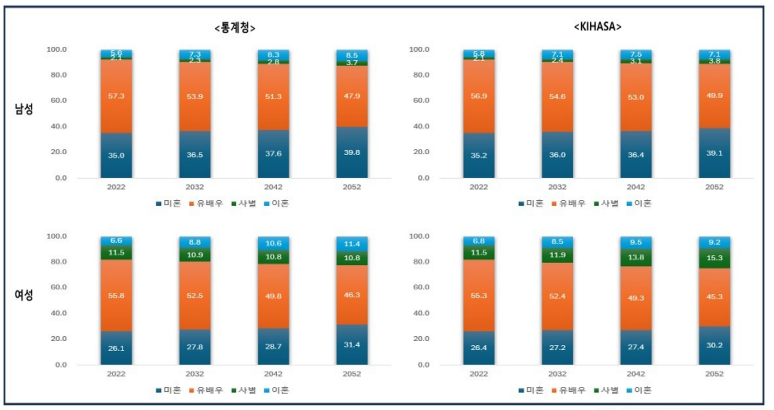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KIHASA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가구주율

✓ **데이터**

- 인구총조사(KOSIS) 데이터 활용
- 인구총조사: 2005, 2010년(전수), 2015년~(20% 표본)
- 인구총조사-인구: 분모
  - 성,연령,혼인상태,세대구성별 인구(일반가구)
- 인구총조사-가구: 분자
  -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인구

✓ **방법론**

- 수정지수모형(120(= 2*15*4)개 모형) 적용
- 2005년, 2020년 시점 활용
- 성별, 5세연령대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데이터 활용
- 5세 단위 연령구간에는 동일한 값
- 5년의 값을 1년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선형보간

<성, 연령대,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단위: 인구 100명당 가구주 수(%))

	구분	2005년					2020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남성	계	55.3	21.6	93.7	74.8	78.6	57.9	23.7	84.5	77.6	78.5
	15~19세	2.3	2.3	19.8	0.0	9.0	3.2	3.2	52.7	0.0	0.0
	20~24세	14.4	13.2	61.8	17.4	28.3	19.5	19.2	61.3	20.2	46.0
	25~29세	35.3	24.3	83.0	36.6	42.0	35.1	31.5	79.6	61.8	56.9
	30~34세	68.0	37.3	89.9	54.1	51.9	56.5	43.3	81.9	76.6	67.0
	35~39세	83.9	48.7	92.8	71.3	65.6	69.4	48.9	82.3	77.4	68.3
	40~44세	90.9	58.7	94.7	83.5	77.2	74.1	50.9	83.4	79.2	71.0
	45~49세	93.6	65.9	95.7	88.3	83.2	78.2	57.2	84.4	83.3	74.3
	50~54세	95.2	71.9	96.3	90.1	86.7	82.0	64.6	85.4	85.4	78.0
	55~59세	95.7	76.5	96.5	89.8	88.1	84.1	73.0	85.4	85.8	81.7
	60~64세	95.0	79.0	95.8	86.5	87.9	84.7	78.1	85.3	84.7	82.6
	65~69세	93.0	78.4	94.2	80.6	85.4	84.0	82.5	84.5	81.5	81.6
	70~74세	89.6	78.9	92.0	72.8	81.8	84.9	87.7	85.1	82.6	83.6
	75~79세	84.4	74.0	88.8	64.5	78.3	84.8	90.5	85.9	77.6	78.1
	80~84세	75.7	79.6	83.9	53.8	71.0	82.9	81.5	85.3	71.8	76.4
	85세 이상	60.7	78.6	76.1	40.8	58.9	77.7	88.5	85.0	60.9	67.7

	구분	2005년					2020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여성	계	15.0	17.3	5.5	63.0	82.5	27.4	19.7	18.1	69.5	82.0
	15~19세	2.5	2.5	4.0	0.0	23.4	3.7	3.7	7.7	0.0	12.5
	20~24세	13.8	14.3	5.6	24.4	41.3	22.0	22.2	13.8	42.7	51.1
	25~29세	15.6	22.7	4.6	56.3	55.5	30.0	32.5	18.1	68.4	69.0
	30~34세	12.0	35.5	4.4	73.5	68.2	29.7	40.0	19.3	80.8	73.5
	35~39세	12.6	49.2	5.2	85.8	79.1	28.5	47.1	19.8	80.8	77.5
	40~44세	15.6	60.3	6.4	90.8	86.5	29.2	52.5	19.6	90.7	84.5
	45~49세	18.9	65.9	7.2	90.0	87.9	30.9	58.0	19.0	88.0	85.4
	50~54세	20.7	70.7	6.7	85.9	86.2	32.2	64.9	19.1	85.2	84.8
	55~59세	23.2	74.1	5.6	80.0	83.4	33.1	73.2	18.9	82.9	83.4
	60~64세	27.2	75.3	4.4	73.4	80.5	34.3	80.7	17.7	79.9	81.0
	65~69세	32.2	78.1	3.6	67.6	78.1	34.8	81.5	14.7	75.6	77.5
	70~74세	38.6	77.0	3.3	60.7	74.9	39.3	86.3	13.4	73.7	77.3
	75~79세	41.9	76.2	3.6	52.4	69.3	45.2	84.5	13.0	68.9	73.0
	80~84세	36.6	73.8	4.0	40.4	57.3	49.6	82.1	14.2	62.7	69.0
	85세 이상	24.2	61.5	4.8	25.0	41.2	47.7	78.0	17.4	51.1	69.0

자료 : 송창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KIHASA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가구수 및 가구주율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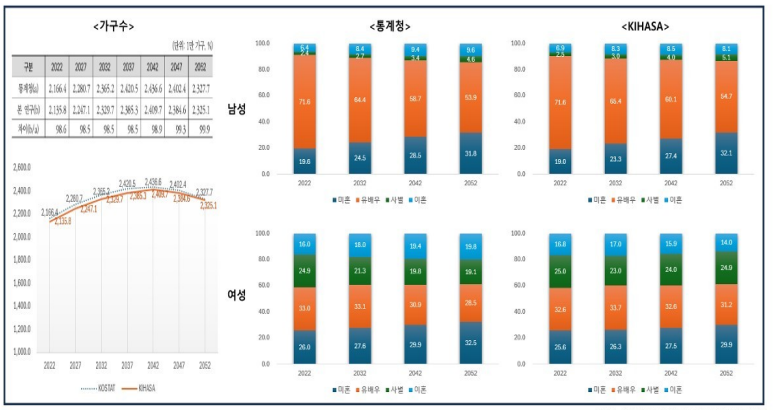

구분	2022	2027	2032	2037	2042	2047	2052
통계청(a)	2,166.4	2,280.7	2,365.2	2,420.5	2,458.6	2,402.4	2,327.7
본 연구(b)	2,155.8	2,247.1	2,320.7	2,385.3	2,409.7	2,384.6	2,325.1
차이(b/a)	98.6	98.5	98.5	98.5	98.9	99.3	99.9

자료 : 송정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25

KIHASA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가구 구성

✓ **데이터 및 방법론**

- 가구주율 데이터와 동일(인구총조사(KOSIS) 활용)
- 수정지수모형 활용

<1인가구 비율 – 남(좌), 여(우)>

(단위: %)

구분	2005년				2020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1.4	70.1	2.2	52.0	44.7	23.5	80.5	5.1	67.5	64.2
15~19세	66.2	67.1	5.2	0.0	75.0	92.9	93.1	0.0	0.0	0.0
20~24세	62.4	69.3	2.6	60.3	36.2	85.1	87.1	5.0	64.7	59.4
25~29세	39.3	68.7	1.8	47.4	39.3	69.5	82.9	4.5	81.3	53.3
30~34세	17.5	71.6	1.6	30.9	38.2	44.3	82.5	4.5	59.6	64.0
35~39세	9.9	70.8	1.8	25.7	37.6	25.0	73.6	3.7	60.4	58.8
40~44세	7.5	69.8	2.3	24.1	37.6	19.3	75.9	4.0	24.4	52.7
45~49세	7.1	69.7	2.8	28.0	41.5	18.1	72.8	4.9	24.4	49.7
50~54세	7.0	72.7	2.9	35.0	48.5	17.3	75.8	5.6	31.2	53.6
55~59세	6.6	76.0	2.6	41.8	52.2	17.2	78.7	6.1	44.1	62.4
60~64세	6.7	79.1	2.2	52.4	61.6	17.2	83.4	6.2	60.4	72.9
65~69세	7.1	81.5	2.0	59.9	71.0	16.8	87.0	5.7	72.1	81.3
70~74세	8.3	83.9	1.6	64.5	75.3	15.2	91.5	4.7	78.0	84.8
75~79세	10.9	78.2	1.5	66.8	75.5	14.2	88.6	3.8	78.9	85.9
80~84세	14.0	76.7	1.3	65.5	73.5	16.1	89.5	3.7	78.4	87.9
85세 이상	18.1	70.1	1.3	57.4	65.0	22.0	82.9	4.6	73.6	85.8

(단위: %)

구분	2005년				2020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50.3	70.8	21.1	55.2	38.5	49.8	78.9	15.5	64.6	66.6
15~19세	62.5	62.9	12.7	0.0	32.4	93.5	95.8	0.0	0.0	0.0
20~24세	65.3	66.9	15.7	61.9	27.7	84.8	86.3	13.5	11.4	38.9
25~29세	68.0	67.0	17.6	19.1	28.7	70.0	78.6	9.7	22.7	51.5
30~34세	59.5	73.7	15.0	10.8	29.7	50.6	76.1	8.9	16.2	53.2
35~39세	37.3	70.5	13.8	8.6	31.4	34.8	75.7	6.6	12.2	57.2
40~44세	30.2	73.6	10.4	12.5	33.0	28.2	75.2	7.0	9.6	55.4
45~49세	29.9	76.5	21.1	18.9	36.5	27.5	73.5	10.6	14.0	59.4
50~54세	32.3	74.8	26.9	26.5	41.7	28.9	73.2	14.9	24.0	55.8
55~59세	39.9	77.3	30.0	38.5	49.8	36.6	75.5	20.6	41.0	68.4
60~64세	51.6	78.6	35.1	52.4	60.1	47.0	77.3	25.2	56.4	81.6
65~69세	62.5	81.4	39.7	63.5	69.8	57.4	84.7	27.5	67.1	71.7
70~74세	70.5	87.2	43.0	71.2	76.6	63.4	83.5	27.9	71.0	75.5
75~79세	75.3	86.6	49.1	75.7	81.4	68.0	87.4	29.5	72.9	77.4
80~84세	77.4	88.1	49.4	77.7	78.8	71.6	86.4	32.4	71.7	81.3
85세 이상	75.0	84.0	47.7	75.2	74.8	73.3	90.8	46.9	74.3	85.2

<가구구성별 비율 – 남(좌), 여(우)>

(단위: %)

구분	2005년				2020년			
	차구 1	차구 2	차구 3	차구 4	차구 1	차구 2	차구 3	차구 4
계	17.7	53.5	2.5	0.9	21.7	38.2	3.5	1.2
15~19세	0.9	0.5	0.1	2.3	0.8	0.1	0.0	0.0
20~24세	5.1	5.8	0.5	3.2	0.5	2.3	1.0	1.8
25~29세	10.1	20.1	0.5	3.3	0.8	7.7	1.4	2.7
30~34세	15.5	52.6	0.7	2.1	14.7	26.1	1.8	2.5
35~39세	5.5	70.0	1.5	1.4	9.6	51.2	2.7	2.8
40~44세	3.8	75.2	2.7	0.9	5.8	58.1	3.5	1.9
45~49세	7.6	68.4	3.5	0.5	6.4	57.6	4.5	1.9
50~54세	14.4	61.0	3.7	0.2	10.4	53.2	5.3	1.2
55~59세	22.0	52.5	3.5	0.1	18.7	45.5	5.2	0.6
60~64세	35.0	37.5	2.6	0.0	33.7	32.3	3.8	0.2
65~69세	49.5	22.9	1.3	0.0	48.4	20.5	2.5	0.1
70~74세	57.6	15.5	1.5	0.0	55.4	14.7	2.0	0.0
75~79세	59.8	8.4	1.5	0.0	57.9	11.4	1.9	0.0
80~84세	58.0	5.9	1.5	0.0	56.0	8.5	1.9	0.0
85세 이상	51.2	4.1	1.5	0.0	48.5	5.3	2.0	0.0

구분	2005년				2020년			
	차구 1	차구 2	차구 3	차구 4	차구 1	차구 2	차구 3	차구 4
계	1.8	2.7	0.1	28.0	6.8	10.2	0.3	20.0
15~19세	0.4	0.1	0.2	1.1	0.0	0.0	0.0	0.2
20~24세	1.4	0.4	0.2	2.0	0.5	1.5	0.7	2.3
25~29세	4.2	2.1	0.2	5.9	3.7	4.6	1.0	5.0
30~34세	4.0	6.7	0.2	22.5	8.5	15.1	0.8	18.0
35~39세	2.0	7.2	0.1	42.1	5.5	28.9	0.5	19.4
40~44세	1.6	5.6	0.1	53.1	4.0	28.1	0.4	28.8
45~49세	1.8	4.2	0.0	54.1	5.0	18.9	0.2	36.2
50~54세	1.8	3.2	0.0	50.4	7.5	13.9	0.1	37.8
55~59세	1.8	1.9	0.0	40.4	11.0	5.1	0.0	30.5
60~64세	1.5	0.9	0.0	27.2	13.6	4.7	0.0	20.4
65~69세	1.1	0.3	0.0	16.0	11.8	2.2	0.0	15.1
70~74세	0.6	0.1	0.0	9.0	7.7	1.0	0.0	12.7
75~79세	0.3	0.0	0.0	6.2	4.1	0.4	0.0	10.1
80~84세	0.2	0.0	0.0	4.1	1.8	0.1	0.0	7.5
85세 이상	0.1	0.0	0.0	3.0	0.6	0.0	0.0	5.4

자료 : 송정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26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3 가구 추계

3) 주요 추계 방법 –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별 가구 비교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구분	2022	2027	2032	2037	2042	2047	2052
통계청(a)	2.26	2.13	2.02	1.95	1.89	1.85	1.81
본 연구(b)	2.29	2.17	2.08	2.00	1.95	1.92	1.90
차이(b-a)	0.03	0.04	0.06	0.05	0.06	0.07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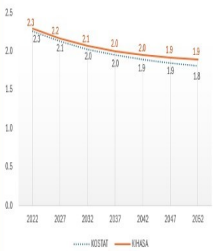

<가구유형별 가구수>

(단위: 1인 가구, %)

구분		2022	2027	2032	2042	2052
통계청 (a)	가구 계	2,166.4	2,280.7	2,365.2	2,436.6	2,327.7
	1인 가구	738.9	855.3	926.6	994.0	962.0
	부부	374.3	419.1	466.4	529.6	531.8
	부부+자녀	590.5	549.7	520.1	464.6	404.8
	부+자녀	50.0	48.0	45.9	42.7	39.8
	모+자녀	150.6	148.2	146.2	143.5	137.6
본 연구 (b)	가구 계	2135.8	2247.1	2329.7	2409.7	2325.1
	1인 가구	700.6	787.6	853.7	941.4	928.5
	부부	372.9	433.1	489.3	567.8	595.2
	부부+자녀	594.3	564.4	539.4	486.7	436.6
	부+자녀	52.5	57.0	60.4	64.4	65.1
	모+자녀	155.8	158.3	158.7	159.8	158.2
차이 (b/a)	가구 계	98.6	98.5	98.5	98.9	99.9
	1인 가구	94.8	92.1	92.1	94.7	96.5
	부부	99.6	103.3	104.9	107.2	111.9
	부부+자녀	100.6	102.7	103.7	104.8	107.9
	부+자녀	105.0	118.8	131.6	150.9	163.7
	모+자녀	103.5	106.8	108.5	111.4	114.9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단위: %, %p)

구분		2022	2027	2032	2042	2052
통계청 (a)	가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34.1	37.5	39.2	40.8	41.3
	부부	17.3	18.4	19.7	21.7	22.8
	부부+자녀	27.3	24.1	22.0	19.1	17.4
	부+자녀	2.3	2.1	1.9	1.8	1.7
	모+자녀	7.0	6.5	6.2	5.9	5.9
	기타	12.1	11.4	11.0	10.8	10.8
본 연구 (b)	가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32.8	35.0	36.6	39.1	39.9
	부부	17.5	19.3	21.0	23.6	25.6
	부부+자녀	27.8	25.1	23.2	20.2	18.8
	부+자녀	2.5	2.5	2.6	2.7	2.8
	모+자녀	7.3	7.0	6.8	6.6	6.8
	기타	12.2	11.0	9.8	7.9	6.1
차이 (b-a)	가구 계	0.0	0.0	0.0	0.0	0.0
	1인 가구	-1.3	-2.5	-2.5	-1.7	-1.4
	부부	0.2	0.9	1.3	1.8	2.8
	부부+자녀	0.6	1.0	1.2	1.1	1.4
	부+자녀	0.2	0.4	0.7	0.9	1.1
	모+자녀	0.3	0.5	0.6	0.7	0.9

자료 : 송정길 외(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4 통합 이슈

1) 인구+가구 추계

✓ **추계 통합 방식**
- 인구추계(+100년), 가구추계(+30년) 검토 필요
- 혼인상태별 전이율을 통한 인구-가구 정합성 확보

✓ **인구변동요인 연계**
- 사망: 혼인상태별 전이율의 사망과 인구추계 사망률 연동
- 출생: 가구원 수 및 출산진도비(PPR) 활용한 출생아 추계
- 혼인: 인구추계 기반 가구형성 및 해체 연계 모형화

✓ **확장 지표 개발**
- 건강·노동수명 등 정책 활용도 높은 파생 지표 생산 검토중
-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연계한 복합 지표 개발 필요

<인구 및 가구추계 통합 프로세스>

인구	가구	출산 프로세스	사망 프로세스	이동 프로세스
인구 t-1		혼인상태별인구 t-1		순 이동자 수 t-1
		↓ 가구주율	↓ 혼인상태별 전이확률	
	가구 수 t-1	혼인상태별 가구주 수 t-1	↓	
		↓ 가구원수별 가구주율	↓	
	가구원수별 가구 수 t-1	혼인상태, 가구원수별 가구주 수 t-1	↓	
		↓ 가구주-배우자 연령 transform	↓	
		↓ PPR 적용	↓	
		출생아 수 t	혼인상태별인구 t 사망자 수 t-1,t 결과	
		↓ 출생아 수 t + 혼인상태별인구 t		
인구 t		혼인상태별인구 t		순 이동자 수 t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4 통합 이슈

2) 인구 · 가구 추계와 MSM 연계

✓ **데이터 통합**
- 동일 DB 활용을 통한 원내 모형간 일치성 확보
- 인구 · 가구 공동 DB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정합성 확보**
- 인구 · 가구추계 결과 → MSM의 조정값으로 활용
- 모형간 시뮬레이션 분석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 동일한 인구 전제 하에서 다양한 정책 분석 수행

✓ **정책 분석 확장**
- 인구변동 시나리오별 사회보장 수요 및 재정 영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 중장기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종합 전망자료 제공

<KIHASA-SIM 순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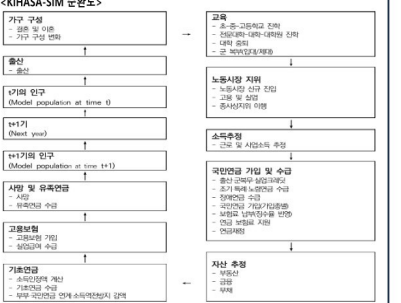

<KIHASA-SIM Simul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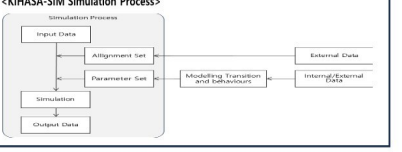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05 향후 과제

✓ **데이터**
- 추계 활용 데이터 한계(공개된 자료의 시의성, 세분화 수준 등)
- 원내 다양한 패널 데이터 등 결합한 추가 데이터 구축 필요

✓ **추계 추진 체계**
- 추계모델 개발 인력 및 유지보수 전담 인력 부족
- 외부 전문기관(통계청 등)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연구과제 중심 추진의 연속성 한계 → 일부 기능 사업성 과제 전환 필요

✓ **지표 개발 및 검증**
- 통계청 추계와의 차별성, 보완 관계 명확화 필요
- 정책 수요 기반 세분화된 지표 개발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추계 결과 검증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결과 공유**
-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연계 통한 추계 결과 및 시각화 자료 배포 예정
- 정기 업데이트 주기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체계 구축 필요

제3절 제3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7. 24.(목), 11:00

○ 주제: 인구변동 모니터링 : 인구통계 및 지표 산출 방법

○ 발표자: 장인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 추진경과

○ 2022년 시범사업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성 과제로 인구정책연구실에서 추진, 발간

〈표 4-5〉 2024년 보고서 기준 장별 지표 구성

구분	지표
제2장 출생과 출산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세~49세) 연령별(5세 간격) 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조정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기혼여성 45~49세 출산 진도비
	(45~49세) 완결 출산율
	기혼여성(19~49세1))의 이상 자녀 수
	모의 평균 출산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연령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 수 및 비중
	모의 동거 기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임시술(보조생식술) 이용 현황(환자 수)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 수 및 비중
	출생 시 제중별 출생
	총재생산율 및 순재생산율

구분	지표
제3장 혼인과 이혼	혼인 건수, 조혼인율, 일반혼인율
	평균초혼연령
	이혼 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 현황
	평균 이혼연령 현황
제4장 사망	사망자, 조사망률, 기대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연령별 사망자와 사망률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영아사망자 수, 영아사망률
	사망 연령의 중심(M)과 변이(C50)
	17개 시도별 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사망비
	10대 사망원인과 전체 사망 건수 대비 구성비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과 구성비
제5장 인구이동	연령별 이동률
	성별 및 연령별 이동자 및 이동률
	권역별 순이동자
	권역별 순이동자의 연령
	권역 간 순이동
	전입 사유 및 연령대별 이동자 규모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유형별 이동자 및 구성비
	권역별 인구이동의 효과성
	전체 및 성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연령계층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의 규모 및 구성비
	국적별 및 연령별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국적별 외국인 순이동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전체 및 연령별 국제이동의 효과성 지수
제6장 인구 증가/감소 (인구 규모)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성별 및 연령별 장래인구
	인구의 자연증가 및 자연증가율
	시도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18년 → 2023년)
	시도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22년 → 2023년)
	시군구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18년 → 2023년)
	시군구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22년 → 2023년)
	시군구 인구증가율: 2020~2023년
제7장 인구 구성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및 중위연령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주요 연령대별 성비

구분	지표
	성별 및 연령계층별 혼인 상태
	가구원 규모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
	세대 유형별 인구 및 구성비
	성별 1인 가구 비율
	시군구 연령대별(65+/75+/85+) 고령인구비율
	시군구 성, 연령대별(20,30대, 65+/75+/85+) 1인가구비율
	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제8장 외국인(다문화)	지역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변화
	지역별 국적취득 여부별 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국적(지역)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국적별 결혼이민자 성별 비율 현황
	17개 시도별 다문화 혼인 현황
	17개 시도별 다문화 이혼 현황
	17개 시도별 다문화 출생 현황
제9장 인구의 분포	시도별 인구 및 백분비
	시도별 노인인구(65세+) 및 초고령 노인인구(85세+)
	시군구(229개) 인구의 공간적 집중

□ 인구변동 3요인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및 인구 분포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주요 지표 산출 방법과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봄.

가. 출생(출산)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 각 세(1세) 단위, 5세 단위 연령대별 출산율의 합

○ 15~49세 여성 각각의 연령별 출산율(각 세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의 합

〈표 4-6〉 15~49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2020~2022년)

(단위: 각 세 1,000명 당 명)

연령(세)	2020년	2021년	2022년
15	0.07	0.06	0.04
16	0.18	0.12	0.13
17	0.36	0.24	0.32
18	0.63	0.39	0.37
19	2.12	1.21	0.92
20	3.29	2.69	1.66
21	4.44	3.51	2.72
22	5.57	4.42	3.62
23	7.07	6.15	5.05
24	9.99	7.83	6.99
25	13.65	11.45	9.66
26	19.10	15.88	14.19
27	28.25	24.08	21.25
28	40.36	36.22	30.95
29	52.77	49.20	43.43
30	68.05	61.32	58.66
31	81.00	75.62	71.45
32	84.97	82.76	82.20
33	83.30	82.91	80.56
34	77.36	78.49	76.59
35	65.73	68.25	69.01
36	54.43	56.18	56.58
37	42.44	43.91	43.40
38	32.78	33.23	33.45
39	22.97	23.87	24.37
40	15.42	15.88	17.12
41	9.78	10.57	10.86
42	5.50	5.84	6.29
43	2.88	3.26	3.39
44	1.19	1.41	1.61
45	0.56	0.59	0.60
46	0.18	0.20	0.24
47	0.05	0.08	0.09
48	0.02	0.05	0.02
49	0.02	0.01	0.01

출처: 통계청(2023b).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10.1.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f).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10.1.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상기 표의 각 열별 합을 도출하고, 1,000명으로 나누면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이 도출됨. 이때 합을 1,000명으로 나누는 이유는 연령별 출산율은 인구 1,000명으로 표준화한 데 반해,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임.

〈표 4-7〉 15~49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도출한 합계출산율(2020~2022년)

(단위: 15~49세 여성 1명 당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출산율	0.8365	0.8079	0.7778

자료: 통계청(2023b).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10.1.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f).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10.1.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TFR = \sum_{x=15}^{49} \frac{B_x}{P_x^f}$ (B_x : x세 15~49세 여성 인구가 출산한 출생아 수, P_x^f: x세 가임기 여성 인구)

○ 일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당해 15~49세 여성인구(P_{15-49}^f)에서 태어난 총 출산아(B) 천분비율

- $GFR = \frac{B}{P_{15-49}^f} \times 1{,}000$

○ 합계출산율은 $\frac{b}{a} + \frac{d}{c} + \frac{f}{e} + \frac{h}{g} + \cdots$

○ 일반출산율은 $\frac{b+d+f+h+...}{a+c+e+g+...}$

(이때, a,c,e,g,,,는 각 연령 및 5세 연령 단위별 여성의 수, b,d,f,h는 각 연령 및 5세 연령 단위별 여성의 출생아 수)

이기 때문에, 두 개념은 상이함.

○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합계출산율은 '해당 연도의 (경험적인) 출산 양상'의 불변을 가정하므로, 출산력에 대한 미래 전망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존재하고,

○ 출산 시기(템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이에,

2) 템포(Tempo) 조정 합계출산율(Tempo-adjusted TFR)

○ $Tempo-adjusted\ TFR = \sum_{1}^{i} adj\,TFR_i$

여기서, $adj\,TFR_i = \frac{TFR_i}{1-r_i}$, $r_i = \frac{MAC_i(t+1) - MAC_i(t-1)}{2}$ 임.

(i: 출산순위, $MAC_i(t)$: 당해연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 당해연도 전후 2개년도의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구하고, 이를 분모에 보정하여 조정합계출산율을 구한 다음, 각 출산순위별로 모두 합한 개념임.

○ 출산 연령이 변화(우리나라 경험적으로는 상승)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제거하여 실제 출산력 수준을 측정함(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 시점이 연기되는 효과를 제거).

○ 출산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당해연도 전후 2개년도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구하고, 이를 분모에서 고려하기도 함.

○ 경험적으로는, 출산이 지연됨에 따라 나타나는 템포효과를 배제하기 때문에($\gamma_i > 0$), 조정합계출산율은 합계출산율에 비하여 큰 특징이 나타남(경험적으로 0.2~0.3명 정도 차이).

3) 지역 단위에서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의 상이성

○ 한편, 지역 단위에서는 출생아 수 변화와 합계출산율 변화가 상이할 수 있는데(보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우), 이는 앞서 언급한 합계출산율 산식에 기인함.

○ 구체적으로, 15~49세 모의 각 세 내지는 5세 단위 연령대별 여성의 수와 이들 여성의 출생아 수의 변화폭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연령대 모의 출산율이 증가하나, 출생아 수는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출생아 수 변화와 합계출산율 변화가 상이함.

○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구 단위 A, B, C 세 개 지역이 특정 기간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였으나, 출생아 수는 감소한 경향이 관측됨. 이때,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였지만, 모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출산율(연령대별 여성의 수 대비 연령대별 여성의 출생아 수의 천분비)의 변화는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음.

○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각 연령대별 분모의 감소폭이 분자의 감소폭보다 더 크면,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게 되는 특성이 관측함.

〈표 4-8〉 A, B, C 세 지역의 특정 기간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출생아 수 변화

지역	항목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5세 단위 15-49세 여성 수			15-49세 여성 5세 단위별 출생아 수		
		연도 D	연도 E	변화	연도 D	연도 E	변화	연도 D	연도 E	변화
A	합계	1.795	1.816	0.021			-	217.99	211.23	-6.76
	15-19세	1.4	0.0	-1.400	658	649	-9	0.92	0.00	-0.92
	20-24세	24.6	9.7	-14.900	639	603	-36	15.72	5.85	-9.87
	25-29세	85.9	50.5	-35.400	565	506	-59	48.53	25.55	-22.98
	30-34세	175.9	201.2	25.300	597	556	-41	105.01	111.87	6.85
	35-39세	58.8	90.3	31.500	709	698	-11	41.69	63.03	21.34
	40-44세	8.4	7.3	-1.100	728	675	-53	6.12	4.93	-1.19
	45-49세	0.0	0.0	0.000	832	821	-11	0.00	0.00	0.00
B	합계	1.652	1.656	0.004			-	415.73	401.19	-14.54
	15-19세	1.3	2.7	1.400	1,501	1,426	-75	1.95	3.85	1.90
	20-24세	20.4	18.3	-2.100	1,439	1,431	-8	29.36	26.19	-3.17
	25-29세	77.5	82.5	5.000	1,091	1,104	13	84.55	91.08	6.53
	30-34세	153.8	154.5	0.700	1,276	1,173	-103	196.25	181.23	-15.02
	35-39세	67.9	63.6	-4.300	1,347	1,369	22	91.46	87.07	-4.39
	40-44세	7.6	7.3	-0.300	1,600	1,471	-129	12.16	10.74	-1.42
	45-49세	0.0	0.6	0.600	1,717	1,735	18	0.00	1.04	1.04
C	합계	1.539	1.573	0.034		-		220.06	217.97	-2.09
	15-19세	2.3	4.9	2.600	843	784	-59	1.10	1.10	0.00
	20-24세	24.0	29.9	5.900	928	882	-46	23.11	13.58	-9.52
	25-29세	85.6	74.8	-10.800	701	732	31	44.79	66.17	21.38
	30-34세	125.5	132.1	6.600	710	669	-41	98.19	92.59	-5.60
	35-39세	59.2	65.1	5.900	616	642	26	41.95	41.09	-0.86
	40-44세	9.5	4.0	-5.500	827	713	-114	9.84	2.28	-7.56
	45-49세	0.0	1.0	1.000	1,084	1,053	-31	1.08	1.16	0.07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4) 재생산율(Reproduction Rate)

○ 총재생산율(Gross Reproduction Rate):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여아 수

- $GRR = \sum_{x=15}^{49} \frac{B_x^f}{P_x^f}$ (B_x^f: x세 가임기 여성이 출산한 여아 수, P_x^f: x세 가임기 여성 인구)

○ 순재생산율(Net Reproduction Rate): 한 명의 여성이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아 중 출산가능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아 수로, 여아 생존율을 감안한 재생산율

- $NRR = \sum_{x=15}^{49} \frac{B_x^f}{P_x^f} \times \frac{L_x^f}{l_0}$ (B_x^f: x세 가임기 여성이 출산한 여아 수, P_x^f: x세 가임기 여성 인구, L_x^f: 여성인구가 x에서 x+n세 생존한 인연수(persons year lived: 특정 인구 집단이 일정 기간 동안 살아온 사람의 수, 여성인구가 각 연령(대)에서 몇 년동안 살아있는지(태어난 여아가 그 연령대까지 생존할 확률)를 추정하기 위하여 분모로 고려됨), l_0: 초기인구)

○ 여기에서의 $\frac{L_x^f}{l_0}$의 예를 들어보면, l_0가 90,000명이고, $L_{15-19세}^f$가 85,000명이라면, 0세→15~19세 생존율은 $\frac{85,000}{90,000} \fallingdotseq 0.944$임.

○ 구체적으로 총재생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 연령 기간까지 생존할 경우 낳을 수 있는 평균 여자 아이의 수를 나타낸 비율로, 사망률(생존율)을 고려하지 않음.

○ 순재생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여아 중 가임연령(15~49세)에 도달해 다음 세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평균 여아 수를

의미하며, 각 연령별 어머니의 여아 출산율 × 그 연령까지의 생존 확률을 구해서 모든 연령 구간을 더하여 산출하며, 총재생산율에 생존율을 추가로 고려한 형태

○ 순재생산율은 여아 연령별 출산율(15~49세 각 연령대 여성의 1년간 여아 출생아 수 ÷ 동 연령대 전체 여성 수)를 구하고, 해당 연령까지의 여성 생존율(출생한 여자아이가 해당 연령까지 살아남을 확률)을 생명표 상에서 구하여, 각 연령별로 [여아 출산율 × 생존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15~49세 구간)을 합산하는 방식(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 활용)

- NRR = 1.0: 인구 유지(부모 세대 여성 수와 자녀 세대의 여성 수가 같기 때문에 인구 규모 변화 없음을 의미)
- NRR 〉 1.0: 인구 증가 (여성 1명이 자신을 대체하는 여아를 1명 이상 출산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
- NRR 〈 1.0: 인구 감소 (여성 1명이 자신을 대체하는 여아를 1명 미만 출산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

〈표 4-9〉 총재생산율과 순재생산율: 2000~2020년

(단위: 가임기 여성 1명당 여아 수)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총재생산율 (GRR)	0.71	0.52	0.60	0.60	0.40
순재생산율 (NRR)	0.70	0.51	0.59	0.60	0.40

주: 연령 미상자 및 15세 미만과 50세 이상인 자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2022g).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2에서 2022. 5. 24. 인출; 통계청. (2022h).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2. 5. 24. 인출; 통계청. (2022ag).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 통계-보건-생명표-간이생명표(5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에서 2022. 9. 2. 인출. ; 인구정책연구실(2022)에서 재인용.

나. 사망

○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남성의 연령별 사망률을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로 나누어 산출

- $\text{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 \frac{\text{남성의 연령별 사망률}}{\text{여성의 연령별 사망률}} \times 100$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0세에서 84세까지 연령대별로 모두 사망자 수가 많으나 85세부터는 여성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음.

- 사망률은 10~1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 대비 남성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여주는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는 2014년에 비해 2023년 10~24세, 40~59세 구간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약간 증가함.

[그림 4-6]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 2014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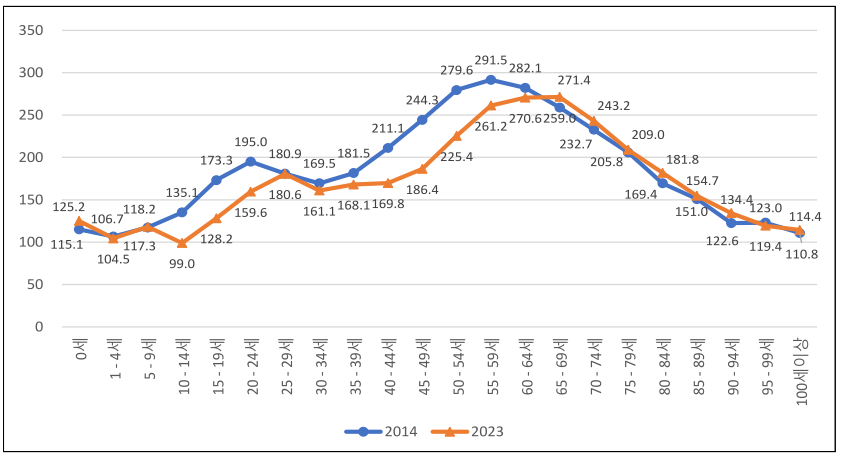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성/연령(5세) 사망자수, 사망률)[데이터 세트]," 통계청, 2024r,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3&conn_path=I3에서 2024. 10. 4. 인출함.

○ 최빈 사망 연령(M): 생명표 사망 연령 분포의 정점에 해당하는 값

- $M = x(\text{사망 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연령}) + \frac{d_x - d_{x-1}}{[d_x - d_{x-1}] + [d_x - d_{x+1}]}$

(d_x: 최다 사망 건수 집계 연령 x세의 사망 건수)

- 최빈 사망 연령(M)은 명칭 그대로 사망자가 가장 최빈(가장 높은 빈도)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령별 사망자 수를 측정하고 이 중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후 $\frac{d_x - d_{x-1}}{[d_x - d_{x-1}] + [d_x - d_{x+1}]}$이 추가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연령을 도출하기 위함임. 미분값이 0이 되는 극대점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연속함수를 가정하여 산출됨.

- 구체적으로, $\frac{d_x - d_{x-1}}{[d_x - d_{x-1}] + [d_x - d_{x+1}]}$을 살펴보면, 분모는 사망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연령과 그 이전 연령에서의 사망자 수 간 변화, 사망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연령과 바로 그 다음 연령에서의 사망자 수 간 변화의 합인데, 이 합은 각 세 단위 기준 사망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연령 전후 각세에서의 증가와 감소분의 합임. 이 중에서 사망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연령과 그 이전 연령에서의 사망자 수 간 변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서, 정확한 연령 도출 가능
- 통계청 생명표(1세별 완전생명표의)의 2023년 기준(가장 최신) 각 세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사망자가 가장 최빈(가장 높은 빈도)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 세 단위 연령은 88세이고, 상기 수식에서의 분모는 80명, 분자는 73명이기 때문에, 0.9125세 만큼 더해져서 89세에 가까운 수치인 88.9125세가 됨. 이는 기본적으로 각 세별 최빈 연령인 88세에 대하여 양쪽 기울기를 판단하여 보다 가까운 지점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

〔그림 4-7〕 완전생명표에서의 각 세별 사망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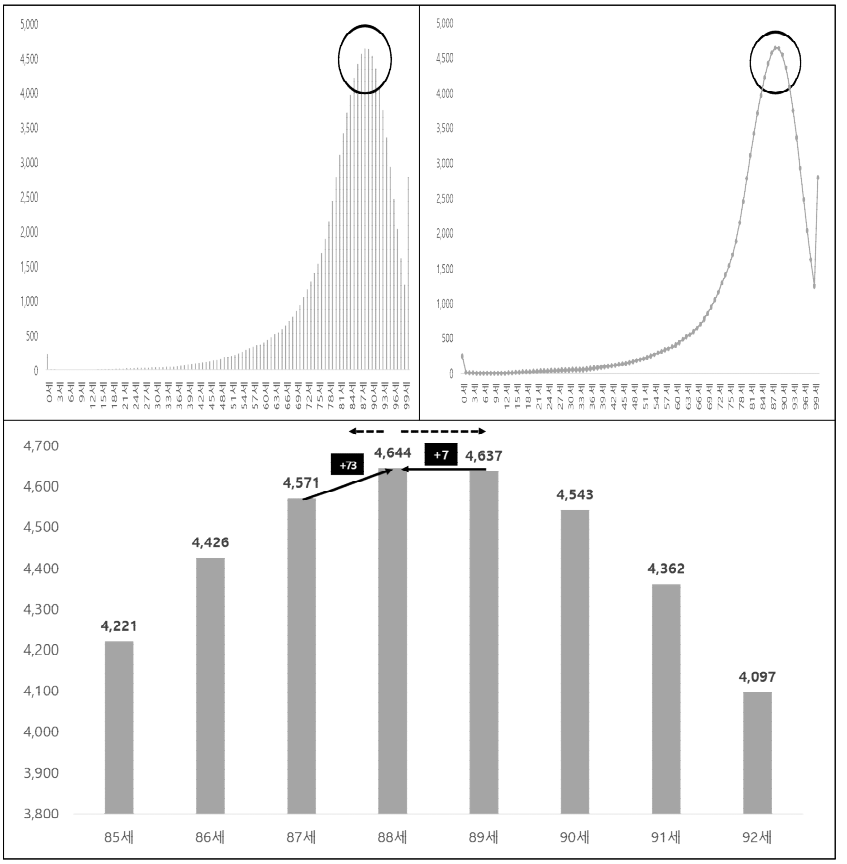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

○ C50: 전체 사망자의 50%가 집중 분포하는 최단 연령 구간

- 완전생명표 상에서 전체 사망자 수 중 각 연령별 사망자 수의 비율을 구하고, 이들 각 비율의 합계가 50%인 지점(연령 구간)을 찾는 과정을 수행
- 예를 들어 2023년 완전생명표 상 81세~92세의 사망자 수의 비율의 누적 합은 49.72%이며 다음 각 세별 구간인 92~93세

에서의 0.28%만 더 포함시키는 것이 C50이라면, 81세~93세까지의 사망자 수 비율의 누적 합 53.48% 중 0.28%포인트에 해당하는 연령을 더하면 되므로, $\frac{(0.28\%\text{포인트})}{(53.48\%-49.72\%)} \fallingdotseq 0.074$만큼을 더하면 되므로, C50은 92.07-81=11.07년이 됨.

○ 최빈 사망 연령을 중심으로 전체 사망자의 50%가 집중 분포하는 최단 연령구간(C50)은 2022년 남성은 12.47년, 여성은 10.36년으로 나타남.

〈표 4-10〉 사망 연령의 중심(M)과 변이(C50) 추이(2018~2022년)

(단위: 년)

연도(년)	남성		여성	
	M	C50	M	C50
2018	85.72	13.10	90.02	10.69
2019	86.27	13.20	90.66	10.79
2020	86.52	13.01	90.80	10.77
2021	86.55	12.97	90.95	10.87
2022	86.02	12.47	89.94	10.36

출처: "생명표(완전생명표(1세별))[데이터 세트]," 통계청, 2023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4. 10. 18.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함.

○ 참고로 관련하여, 시군구 단위 연령대별(65세 이상/75세 이상/8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시군구 단위 전체 20~30대,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속적인 산출과 관리가 필요함.

다. 인구 이동

1) 인구이동 효과성 지수(MEI: Migration Effectiveness Index)

○ 지역(권역) 간 인구 재분배에 있어서 이동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순이동 지표가 많이 사용되지만, 전체 인구이동을 구성하는 유입과 유출이 상쇄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이하 인구정책기획단, 2022).

○ 이러한 순이동 지표의 문제를 보완하여 인구의 재분배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이동의 효과성 지수(Migration Effectiveness Index: MEI)가 있음.

○ 인구이동의 효과성은 인구이동 체계를 구성하는 지역(권역) 간 이동의 균형/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함.

○ 인구이동의 발원지와 목적지 간 격차가 클수록 인구이동의 효과성은 커질 개연성이 높음.

○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커짐.

○ 인구 이동 효과성 지수는 어떤 특정 지역(권역)의 인구 유입을 I, 인구 유출을 O라고 할 때 인구이동의 효과성(MEI)은 총이동(GM)에 대한 순이동(NM)의 비로 측정됨.

$$MEI = \frac{NM}{GM} \times 100 = \frac{I-O}{I+O} \times 100$$

○ 예를 들어, 특정 연도 특정 지역의 전입자 수가 10,000명, 전출자 수가 5,000명이라면, 인구이동 효과성 지수는 $(\frac{10,000-5,000}{10,000+5,000}) \times 100 \fallingdotseq 33.3$임.

○ 이때의 Effectiveness(효과성)는 인구이동이 특정 지역의 인구 재분배(redistribution)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이동이 인구 변화(유입 또는 유출)에 미친 실질적인 순효과를 의미, 즉, 효과성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인구유입(전입)과 인구유출(전출) 중 실제로 인구 재분배에 기여한 순이동의 비중을 의미

○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이동이 유입으로 명확히 치우쳐 인구 재분배의 순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아래 표에서는 2000년대 중반의 수도권, 2010년대 중반의 중부권, 제주도가 인구이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권역별 인구이동의 효과성: 2000~2020년

구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2000년	14.69	-2.59	-13.88	-16.73	-5.34
2001년	13.14	-3.76	-9.19	-16.15	-0.75
2002년	20.13	-5.26	-24.75	-17.06	0.51
2003년	12.63	-1.77	-11.28	-15.43	-3.11
2004년	13.54	3.86	-21.98	-16.48	-0.18
2005년	12.63	-1.35	-14.34	-14.27	-1.78
2006년	10.53	0.26	-12.54	-13.22	-4.11
2007년	7.72	1.92	-8.39	-12.06	-6.34
2008년	5.10	3.03	-6.71	-9.35	-5.16
2009년	4.37	1.82	-2.68	-9.28	-2.37
2010년	3.15	3.76	-2.73	-9.27	1.02
2011년	-0.87	6.10	-0.69	-5.49	5.40
2012년	0.73	5.94	-3.29	-7.50	10.70
2013년	-0.49	5.32	-2.45	-5.55	16.08
2014년	-2.28	6.98	-2.02	-4.93	20.37
2015년	-3.53	8.54	-2.75	-4.72	22.69
2016년	-0.10	7.52	-5.47	-9.02	22.13
2017년	1.82	7.73	-6.62	-12.55	20.15
2018년	6.79	5.09	-10.18	-16.02	12.73
2019년	9.53	1.98	-9.42	-16.61	4.36
2020년	9.73	2.04	-8.77	-17.56	4.82

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중부권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2022b).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인구-국내인구이동통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전출지/전입지(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conn_path=I2에서 2022. 5. 10. 인출.

2) 인구이동 기대(Migration Expectancy, Migration Expectation)[1)]

○ 인구이동 기대란 특정 연령의 개인이 남은 생애에 평균 몇 회의 거주지 이동을 경험할 것인지, 소위 이동 기대 횟수 추정치를 보여주는 인구학적 지표로,

○ Wilber(1963)는 생명표(life table) 내 정지인구 개념 및 연령별 이동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각 연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총 이주 횟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 본 지표의 산식은 다음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령이 n세인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일하여 인구 규모가 일정한 인구규모(생명표의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stable population: 사망률 일정 출생 유지되어 인구 규모의 변화가 없는(증가, 감소 X) 인구, 일정 기간 동안 x세 연령대 생존 인구 수)와 연령이 n세인 인구의 이동율(연령 n세 인구 중 연령 n세 이동자 수의 비율)의 곱으로 이루어짐. 여기에서 출생률, 사망률, 연령구조가 일정한 정지인구를 활용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별 이동형태를 포괄적으로 평균적인 생애의 (이동) 경험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이동도 없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동일하게 항상 똑같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함임.

$$ME_x = \sum_{n=x}^{w} P(n)m(n),$$

$P(n)$은 연령 n세 정지인구, $m(n)$은 연령 n세 인구 중 연령 n세 이동자 수의 비율

○ 즉, 본 지표는 생명표의 정지인구 개념을 활용함으로서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 포착되는 이동자의 비율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한

1) 고지영 외(2025) 발간예정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였으므로, 발간 전까지 인용을 금함.

개인이 생애 전체에서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이주 횟수(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몇 번,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주를 하게 될 것인가)를 파악

○ 상기 수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 연령별로 지역, 특정 코호트 등 다양한 범주로 생애 주기 과정에서의 이동 기대 횟수를 간명하게 산출하고, 다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함.

○ 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구 이동 기대 횟수와 관련하여, 특정 시점(가령, 2020년)에서의 연령대별로 유소년층(0~14세), 청년층(19~39세), 중장년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 등 주요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이동 기대 횟수를 간명하게 비교 가능,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청년층은 학업과 관련한 대학 진학 및 대학 졸업 이후의 입직 등의 생애주기 사건(event) 이행으로 인구 이동 기대 횟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음.

○ 추가로, 특정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 기대 횟수는 그 지역의 정책 수요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가령,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 이동 기대를 정교하게 산출한다면, 정책 수요와 보다 유기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의 인구이동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지역에서는 고령친화주거 환경 조성 및 교통망 확충 등의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유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인구 이동 기대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대학가 내지는 산업단지와 같이 청년층 밀집 지역의 주거 인프라 확충 및 청년친화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만, 인구 이동 기대는 생명표 상의 정지인구 개념을 활용함으로서 현실을 단순화하고 있으며, 본 지표에 대한 특정 산출 기간에서 도출된 연령(대)별 이동율(연령(대) 인구 중 이동자 수의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이주 경험의 이질성이 배제됨과 동시에 특정 코호트가 특정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의 외생적 영향 요인에 따른 이동성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상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동 기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명표의 정지인구 개념과 연령별 이동률을 활용하여 간명한 산출이 가능하며, 연령층 간 이동성의 차이와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음. 또한 이러한 이동성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 수요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전입 기대는 유소년 및 25~29세 연령층의 경우 제주가 경기에 비하여 전입 기대가 높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대의 특성이 나타남. 성별 특성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경우 제주의 전입 기대가 경기 전입 기대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보였다는 점임. 특히 여성은 유소년층(5~9세, 10~14세)를 비롯하여, 20~24세, 25~29세, 35~39세, 40~44세 연령층과 50대 연령층에서 경기의 전입 이동보다 높은 특성을 보임.

○ 전출 기대의 경우 유소년층과 30대 연령층에서 제주가 경기를 크게 추월하는 경향이 두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20~24세 연령층의 전출 기대가 경기에 비하여 상당히 큰 특성이 나타남. 이외에도 3,40대 연령층의 전출 기대도 경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임. 추가로, 남성의 경우 30대 연령층의 전출

기대가 경기에 비하여 낮은 특성과 다르게 여성의 경우 35~39세의 경우 경기보다 큰 특성이 나타남.

○ 요컨대, 제주 지역에서 최근 관측되고 있는 인구의 순유출 특성은 전입보다는 특히 20대 청년층의 전출 기대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전출 특성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8] 제주, 경기 전체(위), 남성, 여성(이상 아래)의 전입 기대(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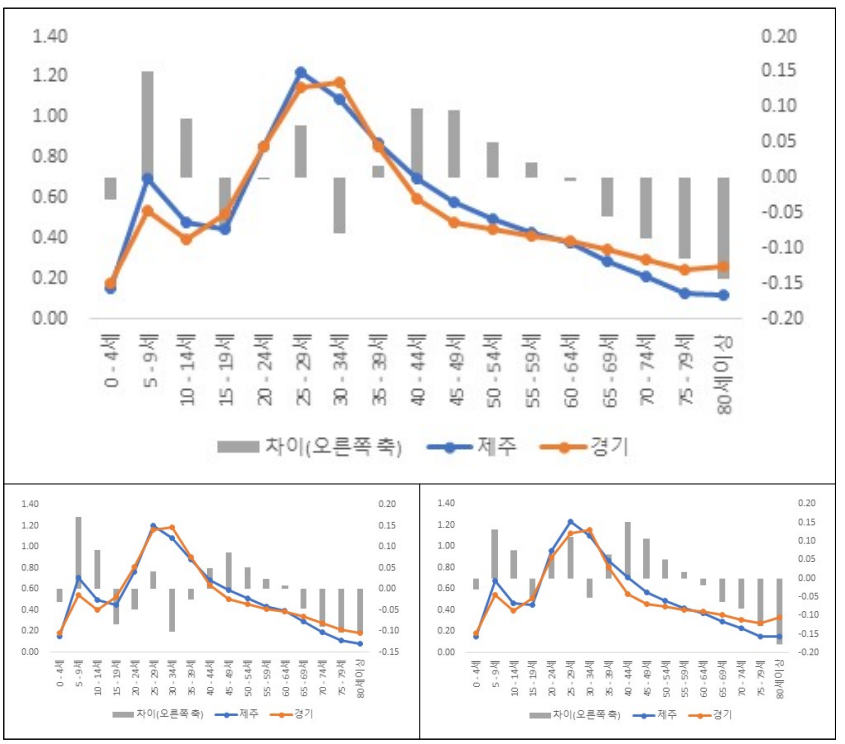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시도별 간이생명표.; 고지영(2025)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그림 4-9〕 제주, 경기 전체(위), 남성, 여성(이상 아래)의 전출 기대(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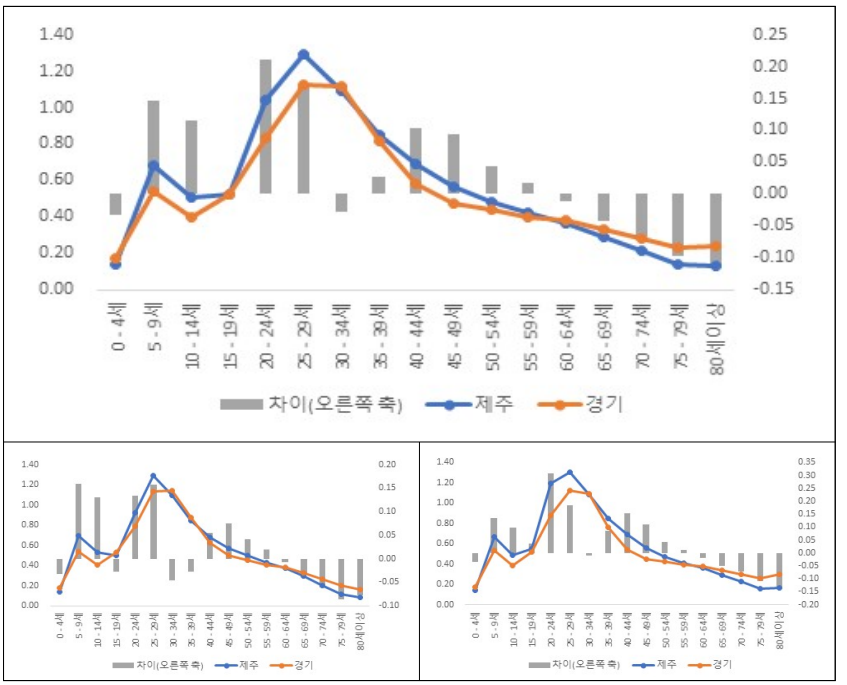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시도별 간이생명표. ; 고지영(2025) 발간예정에서 재인용.

□ 인구 분포(공간적 집중)

○ 지니집중비(Gini Concentration Ratio: G): 인구의 누적구성비와 면적의 누적구성비 좌표에서 공간적으로 완전한 균등 분포인 대각선 아래의 면적 대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면적의 비로 산출. 아래 산식에서 X_i는 인구의 누적 구성비, Y_i는 면적의 누적 구성비를 의미함. 0은 모든 지역에 균등 분포, 1은 한 지역에 100% 인구 분포

- 우리나라의 지니집중비(2023년 기준)은 지역 간 인구 분포가 상당히 불균등한 정도(0.8 이상)

- $G=(\sum_{i=1}^{k} X_i Y_{i+1})-(\sum_{i=1}^{k} X_{i+1} Y_i)$

○ 델타 지수(△): 지니집중비(G)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 x_i와 y_i는 각각 인구 구성비와 면적 구성비이며, 지니집중비와 달리 非누적 수치, 0은 인구가 면적 비율과 정비례(공간적 인구의 균등 분포), 1은 인구가 특정 지역에만 모두 분포(완전 집중 상태)

- 지표의 직관적 의미는 델타지수가 해당하는 비율만큼 인구를 재분배하여야 인구와 면적 간 비례 상태 유지(2023년 기준 0.63449는 전국 인구의 63.45%(수도권 인구 등 포함)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인구밀도가 균등하게 변화한다는 뜻임.

- $\Delta=\frac{1}{2}\sum_{i=1}^{k}|x_i-y_i|$

〈표 4-12〉 시군구(229개) 인구의 공간적 집중: 2020년, 2023년

(단위: ㎢당 명)

구분	2020년		2023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인구밀도 상위 시군구	양천구(서울)	26,098	양천구(서울)	25,050
	동대문구(서울)	24,117	동대문구(서울)	23,998
	동작구(서울)	23,922	동작구(서울)	23,157
	중랑구(서울)	21,340	중랑구(서울)	20,660
	광진구(서울)	20,318	광진구(서울)	19,666
	구로구(서울)	20,100	구로구(서울)	19,500
	송파구(서울)	19,720	송파구(서울)	19,310
	강동구(서울)	18,705	강동구(서울)	18,673
	금천구(서울)	17,798	금천구(서울)	17,471
	성북구(서울)	17,787	서대문구(서울)	17,374
인구밀도 하위 시군구	양구군(강원)	36	영월군(강원)	33
	영월군(강원)	36	양구군(강원)	32
	진안군(전북)	33	진안군(전북)	31

구분	2020년		2023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정선군(강원)	32	청송군(경북)	28
	청송군(경북)	31	정선군(강원)	28
	화천군(강원)	30	평창군(강원)	28
	평창군(강원)	30	화천군(강원)	25
	봉화군(경북)	28	봉화군(경북)	25
	영양군(경북)	22	인제군(강원)	19
	인제군(강원)	20	영양군(경북)	19
지니 집중비(G)	0.78239		0.81307	
델타 지수(△)	0.63294		0.63449	

출처: 1) 2020년: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 시범 사업”, 인구정책연구실, 2022, p.148, 〈표 8-3〉.
2) 2023년: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데이터 세트],” 통계청, 2024a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에서 2024.10.22. 인출함; “국토교통부(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_시군구)[데이터 세트],” 통계청, 2024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300&vw_cd=MT_ZTITLE&list_id=I2_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10.14. 인출함.

○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연구실에서만 고유하게 별도로 지속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음.

지표
(기혼여성 45-49세) **출산 진도비**
(45~49세) 완결 출산율
총재생산율 및 순재생산율
전체 및 연령별 권역별 인구이동의 효과성
전체 및 연령별 국제이동의 효과성 지수
17개 시도별 인구이동 기대
시도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
시군구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
시군구 연령대별(65+/75+/85+) 고령인구비율
시군구 성, 연령대별(20,30대, 65+/75+/85+) 1인가구비율
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시군구 인구의 공간적 집중

제4절 제4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8. 14.(목), 11:00

○ 주제: 돌봄 인력 수급 전망과 쟁점

○ 발표자: 김현경 연구위원, 이지혜C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강지원 연구위원, 최혜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가. 돌봄인력 수급 전망 및 추계를 위한 기초연구(2024년) 개요

□ (연구 배경)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돌봄수요는 계속 커짐. 이에 비해 돌봄인력 공급은 부족한 돌봄인력 부족(care labour shortage),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가족구조 변화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

○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 2022년 3,67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 명 감소, 2072년에 1,658만 명 수준일 전망(통계청, 2023)

○ 돌봄 인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짐.

-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71만 명, 2042년 61~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음.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에 그칠 수 있음을 경고(채민석 외, 2024).[2)]
-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2028년 11만 7천 명)을 전망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21.)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돌봄 인력 수급 전망 연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인력 교육 및 인력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 불일치에 대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음.

□ 수급 전망을 위한 돌봄인력 범위

○ 돌봄 인력 정의

- 돌봄 노동(care work)의 정의
  - ILO(2018) 보고서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에서는 돌봄 노동을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계로 정의함.

2) 한국은행의 영유아 아이 돌봄 인력 수요는 비공식 육아도우미만을 포함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인력 추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우리 연구는 유급노동을 제공하는 직접 돌봄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며, 치료적 목적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제외함.** 돌봄이 필요한 주요 인구집단별 구분에서,

- 간접돌봄: 능력이나 직무 단위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의 목적상, 직접돌봄이라는 돌봄의 본질적 직무 내용만을 포함하고 간접돌봄은 포함하지 않음.
  - 향후에는 포함해야 할 것임.
- 무급노동: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 수급 전망 목적에 따라 무급노동은 본 연구의 전망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무급노동으로 행해지는 비공식 돌봄 가운데 사회적 돌봄의 잠재적 수요(필요)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
- 교육업, 보건업, 복지서비스업이 광의의 돌봄 인력 포괄 범위인데, 돌봄은 교육과 의료인력과의 경계에 있어 논쟁적임.
  - 의료분야의 의료 및 돌봄 인력은 질환·질병 발생이라는 다른 요인 및 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수급 전망하는 독자적인 모형에 기반함.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 영역과의 경계에 있음. 영유아 보육사업, 유치원(, 그리고 유보통합), 초등돌봄교실 모두 교육부 사업임.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지역 기반 초등 돌봄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보건복지부) 등 교육과 돌봄의 경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임. 인력 수급 전망 필요성에 근거하여 포함여부 결정

① 노인 돌봄 서비스 중에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보건업 인력은 제외하고 복지서비스업과 가구 내 고용의 요양보호사(공식) 및 간병인(비공식)을 수급 전망 범위에 포함(파란색 음영)

- 기초연구에서는 생활지원,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노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도 및 서비스 유형을 필요하다면 확장할 계획임.

②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가정 돌봄(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를 포함(시설 연두색, 재가 주황색 음영)

- 장애인 돌봄 인력은 2025년에 인력 수급 이슈를 검토하고 수급 전망 기본 모형을 설계

〈표 4-13〉 돌봄인력 수급 전망 범위

표준산업분류(10차)	목적	사업	직업	표준직업분류(7차)
노인				
86(보건업) 87(사회복지서비스업)	치료	가정간호서비스		
		재택의료		
		요양병원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1(요양 보호사) 42112(간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97(가구 내 고용활동)			간병인	
영유아				
85(교육서비스업) 87(사회복지서비스업)	돌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247(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72(보육교사)** 253(유치원 교사) **2530(유치원 교사)**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9(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96(기타 개인서비스업) 97(가구 내 고용활동)				951(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가사 도우미) 9512(육아 도우미)

표준산업분류(10차)	목적	사업	직업	표준직업분류(7차)
초등 아동				
85(교육 서비스업) 87(사회복지 서비스업)	돌봄/교육	방과후 교실	돌봄교사	247(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71(사회복지사) 2472(보육교사) 2475(청소년 지도사) 252(학교 교사) 2521(중·고등학교 교사)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 전담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97(가구 내 고용활동)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9(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장애인				
87(사회복지 서비스업)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인력 및 제공인력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3(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표 4-14〉 주요 돌봄 인력 행정통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유아	어린이집[1]	어린이집 원장	37,168	35,119	33,087	30,773	28,818
		보육교사	239,973	237,966	236,085	231,304	226,134
	유치원[2]	유치원교사	53,362	53,651	53,457	53,696	55,637
	아이돌봄지원[3]	아이돌보미	24,677	24,469	25,917	26,675	28,0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9]	건강관리사	20,669	18,406	18,757	19,261	-
초등 아동	지역아동센터[4]	생활복지사	5,344	5,301	5,429	5,380	-
	다함께돌봄센터[5]	돌봄선생님	226	495	1,033	1,738	-
노인	노인장기요양[6]	요양보호사	423,057	450,970	507,473	564,243	610,069
	노인맞춤돌봄[9]	생활지원사		28,955	30.968	31,419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7][8]	활동지원인력	78,044	87,908	98,469	106,872	112,570
	발달재활서비스[9]	제공인력	13,099	13,005	13,305	13,248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9]	제공인력	671	1,205	2,113	3,466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9]	제공인력	436	662	1,214	1,697	-
기타	가사간병 방문지원[9]	제공인력	5,558	4,803	4,780	4,959	-

주: -는 인력 현황 파악 불가

출처: 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각 년도,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4
2)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유아교육 규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5
3) “아이돌보미 현황,”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각년도.
https://care.idolbom.go.kr/dolbomi/biz/stts
4)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각 년도,
https://www.data.go.kr/data/15004404/fileData.do?recommendDataYn=Y
5)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과 전망,” 홍현균, 공정승, 2022,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22&vw_cd=MT_ZTITLE&list_id=350_35006_A00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8)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보건복지부, 각 년도. https://www.data.go.kr/data/3084474/fileData.do
9)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3.

□ 돌봄 인력 수요 전망 고려사항 및 활용 방안

① 돌봄 대상 인구의 변화

- 수요 전망 첫 단계에서 성·연령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결과를 적용

② 돌봄 필요 인구의 변화

- 추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 성·연령별 건강/기능상태: ADL/IADL 제약 경험 인구 비율,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등급 인정 비율, 질병 발병률
  - 연령별 돌봄 필요 서비스량: 서비스 이용(희망)률, 돌봄 (희망) 시간, 종일제/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희망)률
- 돌봄 대상별 돌봄 필요 인구 추정을 위한 접근 방법

- (노인) 돌봄 필요는 **노인의 건강/기능상태**에 근거함. 건강/기능상태 변화, 질병 발병률 등 필요 추정을 위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등 모형 고도화를 고려, 효율성 판단하에 결정
- (영유아)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맞벌이 포함)** 미래 전망

- 잠재수요
  - (노인) 돌봄이 필요하나 제공받지 못하는 수요
  - (아동)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잠재적 수요

③ 돌봄 유형 선호의 변화

- 추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또는 고려 사항
  - 시설/재가 돌봄 이용 (희망) 비율, 시설/재가 돌봄 중복 이용 비율
  - 공식/비공식 돌봄 이용 (희망) 비율
  - 공식/비공식 돌봄 간 대체
  - 돌봄서비스간 중복 유형 반영(시설돌봄, 아이돌보미 중복 사용)
  - 외국인 인력 도입시, 언어/선호
  - 서비스 비용 및 포괄범위(coverage)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선호 변화
- 돌봄 대상별 선호에 대한 접근 방법
  - (노인) 시설/재가 돌봄 희망 이용률 및 시설:재가 이용자 비율 정책 지표 활용
  - (영유아) 기관/가정 돌봄 현재 이용 실태(공식/비공식 돌봄

선호 반영되었다 가정), 희망 이용률 가운데 '사회적' 필요의 적정한 지표를 논의

④ 돌봄 욕구 변화

- 요양, 가사,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욕구별 이용, 돌봄 사례관리인력 비율 설정 필요 (직접 돌봄 외) -
- 사회적 돌봄 욕구 변화 및 복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관리 인력, 노인 요양돌봄 아닌 생활지원, 성인 및 아동 상담 인력, 일상돌봄 제공 인력을 인력 전망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함.
  - 노인 IADL 제약, 1인 가구 대상 생활지원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 수급 전망 필요 차년도 논의

□ 돌봄 인력 공급 전망 방법론 고려사항 및 활용 방안

① 돌봄 산업 및 직업 취업자 규모 및 추이

- 추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 성·연령별·학력별 취업자 규모
  - 돌봄 산업 및 직업의 잔존확률
  - 돌봄 산업 및 직업 진입 확률
  - 지역별 취업자 변동

② 돌봄 자격/유휴 인력

- 전공자, 면허취득자, 자격자, 등록자, 활동인력 규모 및 비율
- 사업별 돌봄인력 교육 및 자격에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교사는 학위 과정 요구하거나 학위 과정 동반한 자격 시

험을 통해 자격 취득하는 인력이므로 전공자 수를 파악할 필요 있음.

- 하지만 영유아 돌봄인력 수급에서는 양적인 공급 부족의 문제보다는 근무방식 및 처우, 지역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전공자, 면허취득자 수의 제약을 경험하지 않음. 따라서 공급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계획임.
  - 차년도 연구에서 장애인 돌봄 인력 포함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공자/면허취득자 고려가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공급 모형의 수정을 고려함.
- 노인 돌봄, 아동 가정 돌봄 인력의 경우 전공자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학력자 증가로 인한 진입 감소 추세를 고려해야하는지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결정하고자 함.

③ 노동 생산성/직무 난이도

- 돌봄 인력 1인당 돌봄 필요 인구 비율, **취업자 연령별 노동 생산성**
- 돌봄 노동은 기술변화가 크지 않은 직업으로 ILO(2018)의 적정인력 전망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직접 돌봄 제공인력 전망 시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labour-saving technological changes)를 가정하지 않았음. 국가별 다른 기술 및 공급 인력 특성(연령)에도 **장기요양돌봄은 노동집약적 활동이며 생산 기술은 국가간 동질적임을 가정**하였음(Ilkkaracan & Kim, 2019, p. 35). 따라서 제도적 요구가 아닌 연령별 **생산성 변화**, 이로 인한 돌봄 인력 1인당 돌봄 필요 인구 비율 변화를 **가정**

하지 않음.

- 장기적으로 돌봄 기술 변화(정책적 수요)로 인한 수급 전망은 필요

④ 근로시간

- 전일제/시간제 근로 비율
- 근로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은 필요 돌봄 시간에 근거해 정규 근무 방식을 적용, **전일제 환산 고용(FTEs) 규모를 추정**하는 규범적인 방식과 **현재 전일제/시간제 근로 비율이 이미 반영된 취업률 및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이 있음.
  - 기본 모형에서는 후자의 취업률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 전자는 노인, 영유아 필요/희망 돌봄 시간을 토대로 수요 서비스량 추정 후 고려

□ 정책 변화 요인

① 처우 개선

- 고용보험 DB 분석하여 전망 근거 마련 및 정책 시나리오 작성
  - 임금탄력성, 돌봄 직종간 이동/연령대별 직종간 이동/직종별 이질성 등 처우에 따른 인력 이동 근거 마련
  - 적용 가능성 차년도 연구에서 논의

② 인력 배치 기준 조정

- 각 사업별 인력 배치 목표를 우선 고려(기본모형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 정책 설계에 따른 추계 가능

-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전일제/시간제), 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 법적 인력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방식 등 서비스 정책 변화를 인력비 시나리오로 추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음.

③ 인력 자격 기준 조정

④ 서비스 내용 변화(비용, 시간, 수급요건 등)

- 돌봄 수요 변화 요인. 돌봄의 '필요'에 기반한 수급 요건, 시간 설정, 필요한 경우 접근가능한 비용 설정 등 필요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

⑤ 외국인 인력 도입

- 수급 불균형 대응 위한 외국인 인력 도입 이슈 추후 논의

나. 노인 돌봄 인력 수요 전망

□ 노인 돌봄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쟁점 논의

○ **(비공식 돌봄 인력 포함하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인 돌봄(기능상태로 판정)의 경우는 모두 필요(needs)에 기반한 수요라고 전제**하고,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범위로 간주함. **비공식 돌봄을 공적 돌봄 미충족 수요로 파악하고 전망에 포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비공식 인력인 간병인도 전망 범위에 포함
  - 이희승 외(2023)의 연구와 차별적
- 관리된 인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돌봄 비용 부담 완화, 돌봄 부담으로 인한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 제약(이로 인한 이중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공식 돌봄으로 대체할 필요

○ (수요 추정에 포함하는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정**) 기능제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 필요 여부, 유형, 수요량 달라질 수 있음.

- 기능상태를 판정하는 체계는 ADL, IADL 도움 필요[3], 인지기능 저하 수준. **필요 돌봄 유형, 중증도에 따른 돌봄 필요 대상자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1차년도에는 요양돌봄 필요자라고 판단되는 ADL 1개 이상 도움(부분도움이라도) 필요한 노인을 돌봄 필요 대상자로 정의
  - 인지기능 저하자라도 일상돌봄을 필요로 하는 ADL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간병서비스 필요 노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 IADL 도움 필요자, 인지기능 저하자, 1인 노인가구에게 제공되는 인지정서지원, 생활지원을 돌봄서비스에 포함할 것인가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결정과 함께 차년도 논의

□ 노인 돌봄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데이터 검토

○ 노인 전체 인구를 표본 추출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인 **노인실태조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 노인실태조사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 전수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노인 대상 대표 조사임.
  - 2008년부터 3년 주기 조사, 조사대상: 65세 이상 노인
  - 2023년(6차) 7,556가구, 10,078명 조사

3) 기본적 일상생활(ADL) 능력-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도구적 일상활동수행(IADL) 능력-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 걸고받기, 약 챙겨먹기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 검토)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현황(자격 및 보험료, 장애 및 사망), 의료이용 현황(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 현황 정보를 포함한다는 강점이 있음.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 자료는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 및 등급판정자만을 포함**하고, 맞돌DB는 사업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잠재적 사업대상자 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노인 전체의 기능상태를 알 수 없음
- 노인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노인신체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건강검진코호트 DB, 노인코호트 DB로 접근가능성이 있으나, **만 66세, 70세, 80세에만 검사**하기 때문에[4] 연령별 노인의 신체기능상태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 4-15〉 노인 돌봄 인력 수요 전망 기본모형

변수명	추계방법 및 가정
1) 돌봄 필요 노인	① 시설 돌봄 필요 노인 + ② 재가 돌봄 필요 노인
① 시설 돌봄 필요 노인 (F_{ij}/N_{ij})	성(i=2)·연령별(j=4) 추계인구×셀별 시설 급여 수급자 비율(%) 시나리오 1: 2023년 성·연령별 인구 대비 셀별 급여 수급자 비율 유지 (성·연령별 인구에서 시설 급여 이용자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2023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시설 이용자 비율 2.75%)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에서 얻은 전체 수급자에서 2027년부터 시설:재가 20:80 적용(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② 재가 돌봄 필요 노인 (㉡)	(성(2)·연령별(4) 추계인구-① 시설 돌봄 필요 노인) × 2023년 성·연령별 재가 돌봄 필요 노인 비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성·연령별 재가 돌봄 필요 노인 비율(%)-성·연령별 기능제한 노인 비율(%)

4) https://www.nrc.go.kr/checkup/html/content.do?depth=nc&menu_cd=03_01

변수명	추계방법 및 가정
2) 필요 인력	① 시설 돌봄 필요 인력 + ② 재가 돌봄 필요 인력
① 시설 돌봄 필요 인력	시설 돌봄 필요 노인/이용자 대비 시설 근무자 수 비율(%) ※ 시설이용자 대비 시설근무자수 비율: '25부터 2.1:1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② 재가 돌봄 필요 인력	㉡ 재가 돌봄 필요 노인/재가 인력 돌봄 노인 수 ※ 재가 인력 돌봄 노인 수: 1.684명(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기초 전망 단계별 추정 방법

○ 노인 인구 전망

○ 돌봄 필요 인구 전망

- (시설) 성·연령별 인구에서 시설 급여 이용자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표 4-16〉)
- (재가) 셀별 전체 인구에서 시설 노인을 제외하고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노인실태조사 모집단)에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셀별 ADL 1개 이상 도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을 적용**
  - 성·연령별 인구에서 시설 이용자를 뺀 노인을 전체 대상으로 함.

〈표 4-16〉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급여 이용 수급자 수(명)	시설 요양(A)		방문 요양		노인 인구 수 (B,명)	시설 이용자/ 인구(A/B)×100(%)
			명	(%)	명	(%)		
여자	계	748228	198741	(26.6)	549487	(73.4)	5289587	**3.76**
	65-69세	25397	4051	(16.0)	21346	(84.0)	1689360	**0.24**
	70-74세	49527	8339	(16.8)	41188	(83.2)	1189249	**0.70**
	75-79세	104303	20594	(19.7)	83709	(80.3)	914385	**2.25**
	80세이상	569001	165757	(29.1)	403244	(70.9)	1496593	**11.08**
남자	계	294106	60,284	(20.5)	233,822	(79.5)	4146229	**1.45**
	65-69세	29711	5167	(17.4)	24544	(82.6)	1584823	**0.33**
	70-74세	40525	6940	(17.1)	33585	(82.9)	1045428	**0.66**

구분		급여 이용 수급자 수(명)	시설 요양(A)		방문 요양		노인 인구 수 (B,명)	시설 이용자/ 인구(A/B)×100(%)
			명	(%)	명	(%)		
	75-79세	53993	10280 (19.0)		43713 (81.0)		722713	**1.42**
	80세이상	169877	37897 (22.3)		131980 (77.7)		793265	**4.78**

주: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conn_path=I3, 〈표〉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재구성

[그림 4-10] ADL 1개 이상 도움 필요 노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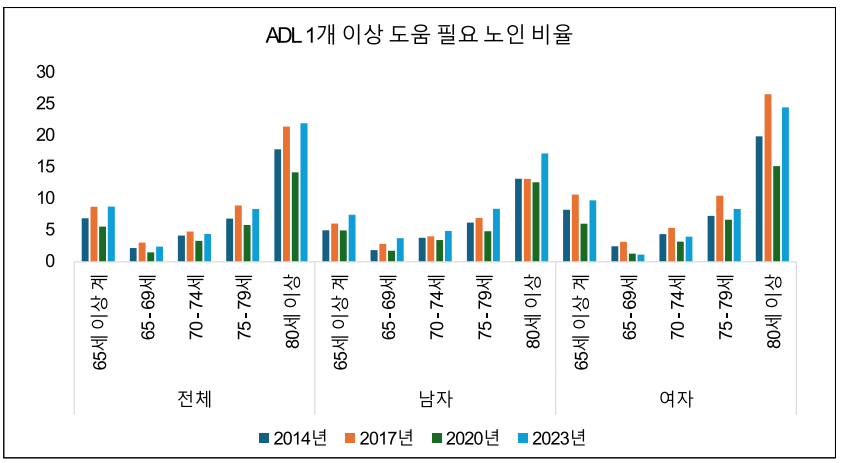

출처: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노인실태조사," 각 년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설 이용자 수(A)와 재가 이용자 수(B) 비율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현재 비율 유지(2023년 노인실태조사 20.5%, 이희승 외(2023)의 2022년말 기준 22.86%), (시나리오 2)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5]에 따른 2027년 목표치(시설:재가 20:80)를 2027년부터 적용

- (시설) 시나리오 1에 따른 서비스 필요 인력 노인 수에 제3차

5) 보건복지부(2023.8).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2027년

장기요양기본계획의 2027년 시설:재가 목표치 20:80을 2027년부터 적용

○ 필요 인력 산출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식을 기준으로 산출
- **시설 돌봄은 2025년부터 노인:돌봄인력 2.1:1**
- 재가 돌봄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력비를 적용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표 6-71〉 '지난 1개월 동안 담당 이용자 수 및 1일 최대 방문 이용자 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p.725)를 보면 요양보호사 1인이 1명의 이용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47.6%, 2명이 36.7%, 3명이상이 15.8%이므로 방문요양의 경우 1.684:1의 인력비를 보임. 즉, **1명의 요양보호사가 1.684명의 노인을 돌봄**.

〈표 4-17〉 시나리오별 요양 돌봄 필요 노인 수와 필요 인력 수

(단위: 만 명)

구분	노인 인구수	필요 노인 수			필요 인력 수		
		전체	시설	재가	**전체**	시설	재가
시나리오 1: : 노인 인구 대비 시설 이용자 비율, 자택 거주자 중 ADL 1개 이상 도움 필요 노인 비율 유지							
2023	943.6	106.2	25.9	80.3	**60.0**	12.3	47.7
2024	993.8	111.8	27.3	84.5	**63.2**	13.0	50.2
2025	1051.4	118.3	28.9	89.4	**66.9**	13.7	53.1
2030	1298.0	146.1	35.6	110.4	**82.5**	17.0	65.6
2035	1520.8	171.1	41.7	129.4	**96.7**	19.9	76.8
시나리오 2: 시설:재가 20:80 가정(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	943.6	106.2	25.9	80.3	**60.0**	12.3	47.7
2024	993.8	111.8	27.3	84.5	**63.2**	13.0	50.2
2025	1051.4	118.3	28.9	89.4	**66.9**	13.7	53.1
2030	1298.0	146.1	29.2	116.8	**83.3**	13.9	69.4
2035	1520.8	171.1	34.2	136.9	**97.6**	16.3	81.3

출처: 통계청(2023.12). 장래인구추계로 저자추정

〈참고〉 장기요양보험DB로 2023년 시도별 인력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요양보호사)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표 4-18〉 시도별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수요(필요)** 추계

(단위: 명)

시도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국	707,129	895,871	1,122,362	1,413,838	1,726,208	1,961,137
서울특별시	114,126	147,657	184,363	227,695	273,162	306,130
부산광역시	46,604	59,115	72,578	86,904	98,477	103,949
대구광역시	33,239	41,859	51,710	63,743	75,544	83,345
인천광역시	42,754	56,572	73,839	96,254	120,768	139,511
광주광역시	24,892	31,320	38,603	47,581	57,307	64,921
대전광역시	20,877	26,486	33,263	41,841	50,805	57,341
울산광역시	11,069	15,031	20,224	26,734	33,131	37,300
세종특별자치시	2,467	3,414	4,728	6,666	9,195	11,844
경기도	168,367	222,466	289,713	378,186	477,375	557,951
강원도	21,085	25,795	31,285	39,340	48,312	54,740
충청북도	22,835	27,719	34,159	43,589	54,005	61,946
충청남도	34,536	41,655	50,858	64,011	79,400	92,127
전라북도	30,831	36,395	42,762	50,943	59,773	66,250
전라남도	31,612	36,089	41,396	49,260	58,497	65,612
경상북도	44,058	52,518	63,203	77,857	93,007	103,474
경상남도	52,123	64,742	81,008	102,317	123,678	138,358
제주특별자치도	5,654	7,037	8,669	10,918	13,774	16,340

출처: "장기요양DB," 건강보험공단, 각 년도

다. 영유아 돌봄 인력 수요 전망

〈표 4-19〉 아동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유형 및 개요

구분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역 아동센터	초등방과후 돌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사	초등방과후 돌봄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대상	0~만5세	만3~만5세	만3개월~ 만12세	만18세 미만	만6세~만12세 주로 초1~3학년	만6세~만12세

구분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역 아동센터	초등방과후 돌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사	초등방과후 돌봄센터(다함께 돌봄센터)
근거법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	아이돌봄지원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달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위탁사무)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서울시))
유형 및 운영 형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병설/단설, 사립	지자체(직영), 위탁(가족센터, 사서원(공공), 여성단체 여성인력, 사회복지관 등)	공립, 민간	교육지원청 소속 (무기계약직), 지자체 소속 (정규직 (서울시 중구 등))	지자체 출현기관 직영, 위탁 운영
제공 기관 수	28,954개소 ('23.12월 기준)	8,294개소 ('24년 4월 기준)	228개 기관('24년 10월)	4,219개소 ('24년. 10월 기준)	14,970 ('22년)	1,130개소 ('24년 10월 기준)
종사자 자격 및 특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보육교사 2급 : 학점이수제 * 2~4년제 대학 아동·보육 학과, 기타학과* 사이버대, 방송통신 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교육부 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유치원 교사 2급 : 학과제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등)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100시간교육+20시간실습)) 후 자격 부여(나라배움카드)/ 보육교사, 의료인, 교사 등 보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만 하면 가능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3급 이상, 유, 초,중등 학교교사 자격, 보육교사 1급)	초등돌봄 전담사(유, 초,중등 학교교사 정교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각1, 2급 소지자, 학교근무경험 경력 있는 자)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유치원, 초등 or 중등교사 자격, 관련기관 2년 이상 종사경력)

구분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역 아동센터	초등방과후 돌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사	초등방과후 돌봄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노동자 수	302,800명 (보육교사 226,134명) ('23년12월 기준)	55,404명 (정규직 4,802명) (유치원교사 36,844명) ('24.4월 기준)	광역, 기초센터 인력: 1,002명 아이돌보미: 28,071명 ('23년 12월 기준)	5,380명 (생활복지사)/ 시설장 4,007명(총 9,387명) ('22.12월 기준)	14,970명 (1교실당 전담사 추계)	2,759명(센터장+돌봄선생님) ('21년 자료로 현재 개소 수에 따라 추계)
임금 체계	국공립_ 별도의 호봉제 vs 민간 최저임금 (비용만 통제, 노동자 급여는 사용주에게 일임]	교육공무원 호봉 VS 단일(준) 호봉(6호봉+수당)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기준(시간당 인건비 단가+제수당)	정부보조금 (인건비 기준)_정액 급여(서울시와 제주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생활임금 수준)	교사와 분리된 "돌봄전담사"임금체계(공무직, 기간제교원)	구립이지만 지배적인 시장화에 따른 임금 적용 (단일임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호봉제) 적용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 중인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
보육교사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야간연장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직원, 연장반전담 교사, 비담임(선임)교사 포함

출처: 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3,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2) "초등돌봄교실," https://www.afterschool.go.kr/intro/state/state1.do
3)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4)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go.kr/front/biz/stts, 내부자료

□ 영유아 돌봄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쟁점 논의

○ **(비공식 돌봄 인력 포함하는가?)** 영유아 대상 돌봄유형을 비공식 돌봄(부모돌봄, 친인척)과 공식돌봄(시설돌봄, 아이돌보미 등)으로 구분함. 1) 영유아 돌봄은 부모의 선호에 근거한 선택으로 보고 **기본적인 전망 범위를 공식돌봄**에 한정하는 접근, 2) (노인과 같이) **비공식돌봄의 일부를 미충족 수요로 보고 전망**하는 접근 두 가지를 활용함.

- 1) 보육실태조사, 가족과 출산조사의 이용실태에 근거함
- **2)의 미충족수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공식과 비공식 돌봄 중복을 허용하면서(예. 어린이집+아이돌보미, 유치원+친인척), 미충족수요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자료는 현재 가족과 출산조사의 희망 돌봄 질문이 유일함(2024년 연구에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대별 미스매칭이나 대기자, 그리고 긴 대기로 인해 대기자 명단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잠재적 수요자[6], 기관 보육·교육 이용 시간량과 시간대, 긴급돌봄 등의 방식 등 다양한 시설 및 가정 미충족 수요 조사 필요**
  - 시설 보육·교육 등이 제공되는 시간에 부모, 친인척 돌봄 희망하는 경우(무급돌봄)는 미충족 수요에 포함하지 않음

□ 영유아 돌봄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데이터 검토

○ 돌봄수요의 기초가 되는 돌봄 이용자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본으로 하고, 돌봄유형별(중복 허용) 이용률 및 이용시간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자료는 가족과 출산 조사 및 보육실태조사로 판단

- 2021년 가족과 실태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여 196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배우자 대상, 최종 9,999가구, 14,538명 표본

6) 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전문가 자문회의)

-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과 가족 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로,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특성(영유아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경제활동 등) 및 양육 현황을 포함함.
- 영유아기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만 0~6세 자녀 3,010명에 대한 가구 내 육아 및 가사 분담,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 실제 이용 돌봄유형 및 희망 돌봄유형, 돌봄 만족도 및 어려움, 양육비(돌봄기관 및 돌봄인력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경제활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돌봄 수요 추정에 적합한 조사로 판단됨.

- 교육부((구)보건복지부)의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로, 2021년 6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영유아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조사) 영유아(보육연령 만0~5세)가 포함되어 있는 전국 2,500가구, 아동 3,471명 표본
  -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 및 가구의 특성, 주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모든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1)보육료 지원 (2)유아학비 (3)양육수당의 수급 현황을 포함하여, 아동 및 부모의 특성(취업 현황), 시간대별 돌봄 유형, 선호하는 양육 형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책 및 이용 경험,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혈연, 비혈연) 이용 현황, 양육비 지출 등의 영유아 돌봄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집 조사) 어린이집 조사는 2012년부터 어린이집 설

치 및 운영, 보육 영유아 현황 및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어린이집 질 관리 등으로, 보육교사 조사는 보육교사 근무조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본은 총 3,300개소(국공립 604개소, 사회복지법인 302개소, 민간 878개소, 가정 1,007개소, 직장 296개소 등)임.

-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 현황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영유아 돌봄 수요(중복 돌봄유형, 돌봄 시간, 시간대별 돌봄유형, 희망 돌봄유형 등) 및 어린이집 돌봄 인력 수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적합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 관련 행정자료로는 교육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1990~2023년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 등),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1999~2024년 유치원현황(지역별·설립주체별유치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등)),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현황 등으로 전반적인 연도별·지역별 영유아의 돌봄 현황 파악

〈표 4-20〉 영유아 돌봄 인력 수급 전망 모형

변수명	추계방법 및 기초율 가정
1-1) 돌봄 필요 영유아(이용자)	0~6세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추계인구×돌봄유형별 이용률
연령별·지역별 추계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별, 출산율 가정에 따라 저위·중위·고위)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인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영유아의 가구유형별 분포)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이용률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황, 교육부의 유치원 현황,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통계 -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어린이집, 유치원, 돌보미 돌봄 이용 비율(%)(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중복허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변수명	추계방법 및 기초율 가정
1-2) 돌봄 필요 영유아(잠재수요)	0~6세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추계인구×돌봄유형별 희망률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희망률	연령별 어린이집, 유치원, 돌보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두 희망하는 경우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중복허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2-1) 필요인력 환산(이용자 수 기준)	0~6세 연령별·지역별·돌봄유형별 이용자수× 1인당 필요인력수 시나리오 1: 현행 교사대 아동수 적용 - 어린이집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 유치원 3세 1:13, 4세 1:16, 5세 1:18 - 돌보미 1:1 시나리오 2: 유보통합 계획 상 교사대 아동수 적용(2026년 이후) - 어린이집 0세 1:2, 1세 1:5, 2세 1:7, 3~5세 1:8 - 유치원 3~5세 1:8 - 돌보미 1:1
2-2) 필요인력 환산(이용시간 기준)	돌봄유형별 돌봄 필요시간 / 돌봄인력 1인당 근로제공시간 (주 또는 월단위)

□ 기초 전망 단계별 추정 방법

○ 1) 영유아 돌봄 대상자 수

- 0~6세 각세별 인구 추계(보육연령 기준으로 조정, 영아는 0~3세(보육연령 0~2세), 유아는 4~6세(보육연령(3~5세))
- 자료: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현 조사시점(7월 1일) 기준의 만연령(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작성되나,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제공되어 차이가 발생

〈'24년 보육연령-출생년도 기준〉

만0세: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24년 0세반의 경우 최대 23개월 월령의 영아까지 포함 가능)
만1세: ’22년 1월 1일~12월 31일생 등

○ 2) 돌봄유형별 이용률 추정

- **(연령별·돌봄유형별 이용률 추산)** 시설 및 아이돌보미 등 공식 돌봄 통계는 2021~23년 교육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육 통계」, 교육부의 「유치원 현황 통계」, 여성가족부의 2021년 「아이돌보미 이용현황」의 이용률을 활용
- **(연령별·돌봄유형별 희망 이용률)**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연령별 돌봄유형별(부모돌봄만,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친인척, 돌보미 등 5개 유형) 희망 이용 현황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조합하여 중복유형을 포함하여 희망 이용률을 산출

〈표 4-21〉 2021년 보육연령별 공식 돌봄유형별 이용률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현재 돌봄유형						
어린이집	0.2118	0.7893	0.8677	0.4932	0.3748	0.3608
유치원	-	-	-	0.3452	0.4830	0.5478
돌보미	0.0428	0.0563	0.0553	0.0313	0.0261	0.0293
희망 돌봄유형						
어린이집	0.5944	0.8861	0.9395	0.3714	0.2755	0.2440
유치원	-	-	-	0.5881	0.6630	0.6980
돌보미	0.1247	0.0998	0.0643	0.0787	0.1025	0.0805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황, 교육부의 유치원 현황,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통계(2021~23년). 보건복지부,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원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돌봄유형별 돌봄필요인구(이용자 수) 추정

- 영유아 연령별·가구유형별 돌봄 대상자 수에 연령별·가구유형별·돌봄유형별 이용률을 곱하여 돌봄유형별 이용자 규모를 산출함.

〈표 4-22〉 2022~35년 돌봄유형별 이용자 수 추계 결과(중복유형 반영)

(단위: 만 명)

연도	인구수	수요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돌보미
현재 돌봄유형					
2022년	230.6	173.9	109.5	55.3	9.1
2023년	211.8	161.8	101.2	52.2	8.4
2024년	196.2	149.4	94.0	47.6	7.8
2025년	183.1	139.2	88.0	43.9	7.3
2030년	162.6	117.3	78.0	32.6	6.7
2035년	184.8	134.5	89.5	37.4	7.6
희망 돌봄유형					
2022년	230.6	214.0	121.7	75.8	16.5
2023년	211.8	196.1	112.4	68.6	15.2
2024년	196.2	181.4	104.7	62.6	14.1
2025년	183.1	169.1	98.3	57.7	13.2
2030년	162.6	146.7	91.7	42.9	12.1
2035년	184.8	167.3	104.4	49.3	13.6

출처: 저자 작성

○ 4)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전제로 연령별 돌봄유형별 필요 인력 산출

- 장래 돌봄유형별 돌봄 제공 인력 인구수는 앞서 도출한 연령별·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이용자수에 1인당 필요 돌봄 제공 인력을 곱하여 추계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전제로 연령별 돌봄유형별 필요 인력 산출

- 현행 교사대 아동수 적용(2021~25년)
  - 어린이집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 유치원 3세 1:13, 4세 1:16, 5세 1:18
  - 돌보미 1:1
- 유보통합 계획 상 교사대 아동수 적용(2026년 이후)

〔그림 4-11〕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자료: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교육부, 2024. 6. 27 보도자료.

〈표 4-23〉 2022~35년 필요 돌봄인력 추계결과

(단위: 만 명)

연도	영유아 인구수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돌보미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2022년	230.6	23.1	23.5	5.2	7.2	2.5	4.4
2023년	211.8	22.6	23.0	5.4	7.1	2.3	4.1
2024년	196.2	21.0	21.5	4.9	6.5	2.1	3.8
2025년	183.1	19.7	20.1	4.6	6.0	2.0	3.5
2030년	162.6	17.4	18.9	4.1	5.4	1.9	3.3
2035년	184.8	20.0	21.4	4.7	6.2	2.1	3.7

□ 2025년 모형 정교화 방안

○ 영유아 및 초등 돌봄 대상을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로 세분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연령 및 지역별) 상의 저위, 중위, 고위 가정 시나리오 적용
- 가구유형 반영: 맞벌이 유무 반영(지역별고용조사 상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

○ 장래 돌봄유형별 이용률 및 희망률 추정 방안

- (영유아) 공식 돌봄에 대한 기초 통계(보육통계, 교육통계, 아이돌보미 통계) 활용, 맞벌이 가구의 공식 돌봄 이용률은 가족과 출산조사 혹은 보육실태조사 자료 적용
- (초등) 공식 돌봄에 대한 기초 통계(통계청의 초증고사교육비 조사(맞벌이 포함)) 활용
- (희망 이용률 – 잠재수요) 보육실태조사나 가족과 출산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지역별·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희망률(잠재수요)**을 산출함.
- 장래 이용률 가정은 해당 자료들의 최근 2~3년간의 이용률 추세 등 시나리오 적용

○ 필요인력 전환에 대한 가정(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등) 추가 고려

라. 돌봄인력 공급 전망

□ 돌봄 인력 공급 전망 방법론

○ ㉮ (반영이 가능한 최대한 시계열을 포함하기 위해) **2021~23년**

평균 취업률 증가율을 전망 기간에도 적용(시나리오 1), ㉯ **미국**[7] **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23년의 취업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시나리오 2) 모두 적용(한국은행, 2023 동일)

- 경제활동 여부 및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인 성별, 연령별 전체 인구에서 특정 직업에 취업한 인구의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 **(**돌봄 인력 공급 전망을 위한 데이터 검토) **2021~23년 지역별 고용조사 B형(통계청) 자료 이용**
  - **직업 세분류 접근이 가능**하고, 전망 대상 인력 합산한 취업자 수 및 증감 추이가 행정 데이터로 얻은 취업자 규모가 근사하여 **신뢰성이 높음**.
  -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속성, 결혼 여부 및 배우자 유무과 같은 가구특성, 임금, 근로시간, 근속년수 등 개인의 경제활동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본 모형 실행이 가능하고 향후 모형의 확장성이 있음.
  -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력 수급 전망(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서도 사용되는 자료임.
- (분석단위) **각 직업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별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직업 세분류 단위 전망이 적합**
  - 직업별 소분류에는 인적 속성과 일자리 특성이 매우 이질적인 직업군이 포함되어 분석단위로 적절치 않음.

---

7) 미국 보건의료인력 전망 모형의 장기요양인력 전망 모듈
- 성·연령·인종별 전체 인구 대비 전일제 환산 일자리(FTE) 비율 이용

〈표 4-24〉 인력 전망 공급 선행연구 방법론 요약 및 우리 연구 계획

구분	선행연구 접근 방법	검토 결과 및 우리 연구 계획
① 미국 보건의료 인력 전망 모형의 장기요양 인력 전망 모듈 (기본 전망 모형)	성·연령·인종별 전체 인구 대비 전일제 환산 일자리(FTE) 비율	각 시점별 성·연령별(·학력별) 전체 인구에서 각 직업에 취업한 비율을 미래 인구 추계에 적용 - 성별·연령별 또는 성별·연령대별(5세 단위) 인구 대비 각 직업(세분류) 취업 인구의 비율(취업률) 적용, 셀별 장래 인구추계에 취업률 적용 $N^{i,j,t}_{a-a+4} = EMP^{i,j}_{a-a+4} P^{i,t}_{a-a+4}$ - 최근 3년 증가세 유지 가정(㉮ 시나리오 1: $EMP^{j,\,Y21-23}_{a-a+1}$), 최근 비율 유지 가정(㉯ 시나리오 1: $EMP^{j,\,Y23}_{a-a+1}$), 취업률을 각 셀별 장래 인구 적용 - ㉯ 시나리오 2에 잠재 수요(예. 노인, 영유아 인구 증가율) 고려한 조정)(차년도 적용)
② 이철희 외(2023) (차년도 적용)	현재 **산업·학력·연령별** 고용인구 및 장래인구추계와 **산업잔존확률**, 진입비율, 고용률 이용하여 장래(다음 기) 산업·학력·연령별 취업인구 변화(노동공급 변화) 전망 - 지역별 고용조사 이용(2014~19년) - 5년 단위 연령구간 이용.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0~24세로 가정. t기에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20~24세 k 학력을 가진 인구의 고용인구에서 θ의 비율로 j 산업으로 진입한 인구(즉, t기 20~24세 k 학력자인 j 산업 취업자)가 S의 잔존확률로 다음 기($t+5$, 5년 후) 동일 산업 j에 있는 25~29세 k 학력 취업자 수, 이렇게 구한 5세 단위 취업자 수 합산 $N^{k,j,t+5}_{25-29} = S^{k,j}_{20-24}\,\theta^{k,j}_{20-24} E^{k}_{20-24} P^{k,t}_{20-24}$	현재 **직업(세분류)·성별·연령별** 고용인구 및 장래인구추계와 **직업잔존확률**, 진입비율, 고용률 이용하여 장래(다음 기) 취업인구 변화(노동공급 변화) 전망 - **지역별 고용조사 이용(2021~23년)** - **5년 단위 (이동 평균) 연령구간** 이용.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0~24세로 가정. t기에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20~24세 i 성별을 가진 인구 대비 직업 j 취업인구 비율(취업률)을 장래 인구에 적용한 고용인구($N^{i,j,t}_{a-a+4}$ = $EMP^{i,j}_{a-a+4} P^{i,t}_{a-a+4}$)가 S의 잔존확률로 다음 기($t+1$) 동일 직업 j에 있는 25~29세 i 성별 취업자 수 5세 단위 연령별 합산 $N^{i,j,t+1}_{a+1-a+5} = S^{i,j,t+1}_{a-a+4} EMP^{i,j}_{a-a+4} P^{i,t}_{a-a+}$
③ 길은선 외(2023)	취업통계등록부에 ② 적용 및 진입 비율 적용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가 속한 성별·연령별 장래인구에서 j 직업 진입비율 고려
④ 고용정보원 모형	1) 학력별 수급 전망 위해 ②, ③의 동태분석 적용 2) 경제활동결정 방정식 추정(경제활동 인구 결정)	1) 위 모형 적용 2) 경제활동 결정방정식 설명변수로 직업 j 결정의 어려움, 따라서 적용하지 않음.

출처: 저자 작성

〈표 4-25〉 2024년 돌봄 인력 공급 전망을 위한 모형

변수명	추계방법 및 가정
인력 수	성별(2)·5세 단위 연령별(13)(26개 집단, i) 인구($P^{i,t}_{a-a+4}$) 대비 각 직업(세분류, j) 취업인구의 비율(취업률, $EMP^{i,j,t}_{a-a+4}$) 적용, 셀별 장래인구 추계에 취업률 적용 $N^{i,j,t}_{a-a+4} = EMP^{i,j}_{a-a+4} P^{i,t}_{a-a+4}$
성·연령별 추계인구(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셀별 각 직업 취업률(EMP)	㉮ 시나리오 1: 최근 3년 증가세 유지 가정 ($EMP^{j,\,Y21-23}_{a-a+4}$), ㉯ 시나리오 2: 가장 최근 취업한 비율 유지 가정($EMP^{j,\,Y23}_{a-a+4}$)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출처: 저자작성

□ 기초 전망 단계별 추정 방법

① 성·연령대별(5세 단위) 장래 인구

② 성·연령대별(5세 단위) 취업률

- ㉮ 시나리오 1: 전체 성·연령 인구집단(2×13=26개)별 해당 직업 취업률 2021~23년 연평균 증가율 미래에도 적용
  - 〔그림 4-12〕 2021~23년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결과, 6개 반기 동안 60~64세, 65~69세, 70~74년 여성 취업률 가파르게 증가
  - 〈참고〉 〔그림 4-14〕 2009~2024년 장기요양보험DB 분석 결과, 여성 15~49세, 50~54세, 55~59세는 2022~24년 감소세,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60~64세 증가세 둔화, 65세 이상 높은 증가율; 남성 취업률 낮지만 꾸준한 증가세
- ㉯ 시나리오 2: 전체 성·연령 인구집단(2×13=26개)별 해당 직업 **2023년 취업률 유지**(HRSA 장기요양 모듈, 한국은행 인력 공급 시나리오 중 하나)

③ 동태적 특성 반영: 잔존확률, 진입비율

○ ②에서 얻은 한 시점, 각 직업의 취업자가 그 직업에 그대로 남거나(잔존) 새롭게 진입하는 동태적 행위를 통해 다음 시점의 취업자 규모가 됨.

- 〔그림 4-13〕 각 년도 상반기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돌봄서비스종사원(요양보호사 등)을 보면 다른 연령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60대 여성의 신규 진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수치화하여 취업자 수를 추정하고자 함(차년도)

〔그림 4-12〕 주요 돌봄 직종 여성 연령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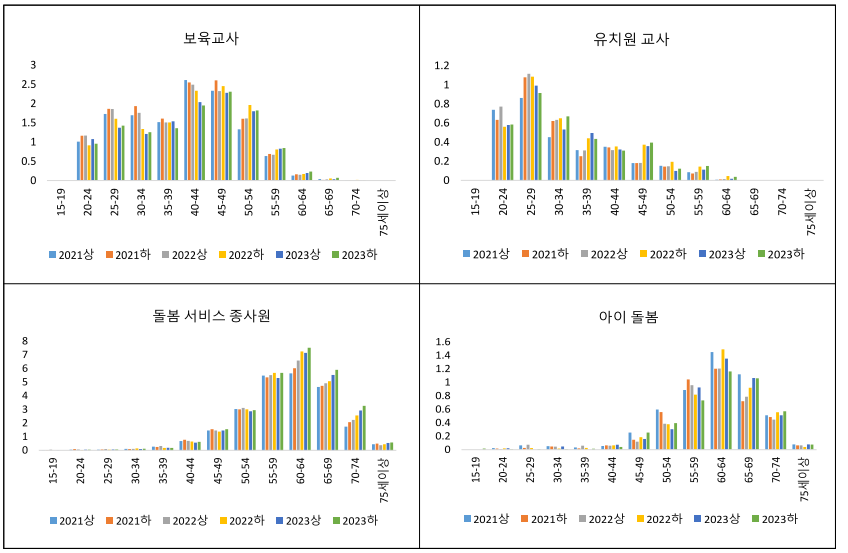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각 년도, MDIS 원격 분석 결과

[그림 4-13] 주요 돌봄 직종 연령별 취업자 진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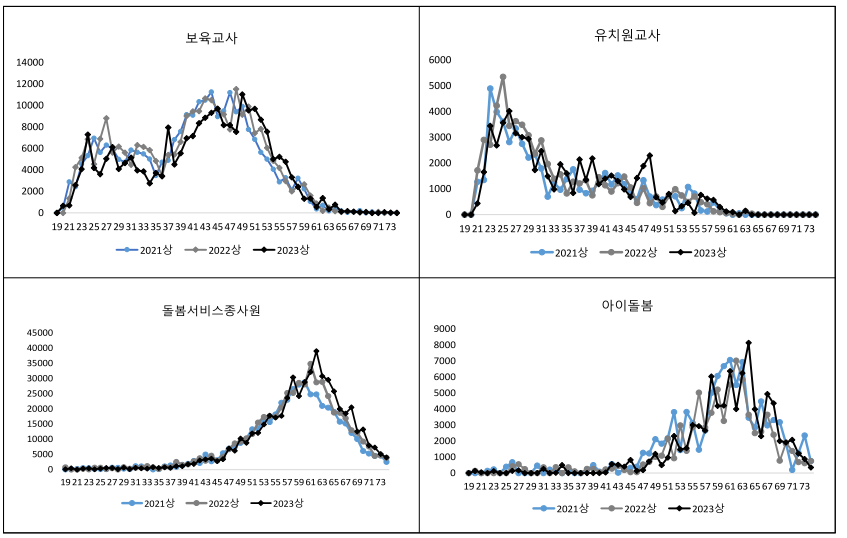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각 년도, MDIS 원격 분석 결과

[그림 4-14] 장기요양보험 DB로 본 시도별 성별 5세 단위 요양보호사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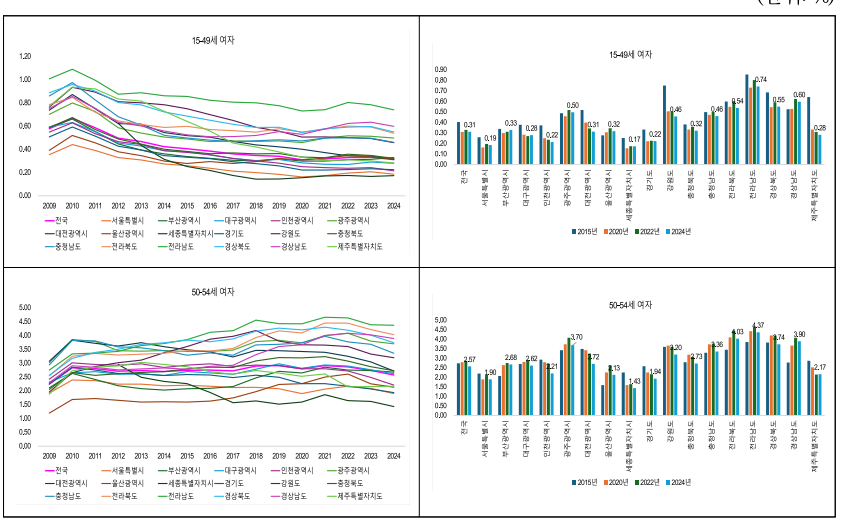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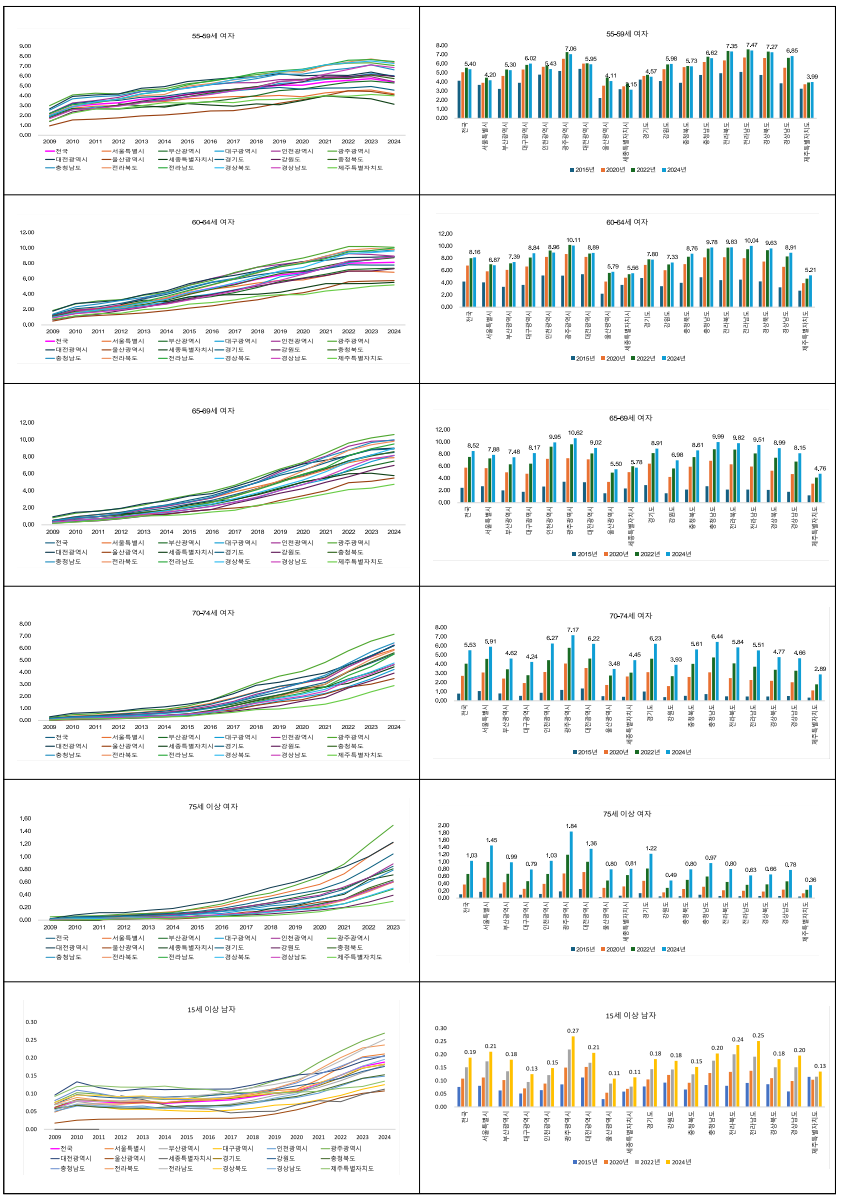

주: 여성 15~49세, 75세 이상, 남성 15세 이상 전체는 5세 단위 요양보호사 수가 적어 이와 같이 연령 묶음

출처: “장기요양DB,” 건강보험공단, 각 년도, 내부 원자료 분석 결과

마. 돌봄인력 수급의 쟁점

□ ☞ 〈돌봄 인력 수요 전망 고려사항 및 활용 방안〉의 정책 변화 요인으로!

제5절 제5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10. 23.(목), 11:00

○ 주제: 가족과 출산 조사 변화 과정과 전망

○ 발표자: 박종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가. 조사 개요

□ 개요(2024년 조사 기준)

○ 통계명칭(영문): 가족과 출산 조사(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 통계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매 3년 주시 출연금사업(정부 예산분류: 특수목적사업-일반사업)

○ 작성목적

- 이 조사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경제활동과 같은 생애사건(과정)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 파악,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재생산 행동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피임, 건강, 산전후 관리, 수유 실태 파악
- 인구행동과 가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관찰하여 행동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조사자료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함.

○ 작성대상: 전국 표본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및 19~49세 가구원

○ 모집단: 2024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및 19~49세 가구원

○ 표본설계:

- 1차 층화: 17개 시도
- 2차 층화: 동부/읍면부
  (8개 특별시·광역시·자치시: 동부로 통합, 9개 도: 동부/읍면부로 구분)
- 층화2단 집락추출방법 이용
- 분류지표: 17개 지역(700개 조사구별 14~15 가구)

- 표본배정방식
  - 17개 시도별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
  - 동부/읍면부: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기준 비례배분

○ 표본규모: 전국 700개 표본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0,000가구(목표 표본규모 10,500가구)

○ 조사항목: 총 334문항
- 가구원 및 가족 사항 18문항
- 동거와 결혼 55문항
- 임신·출산·건강 43문항
- 산전·산후 관리 22문항
- 자녀 양육 30문항
- 일 42문항
- 부모와의 관계 43문항
- 주거이동과 독립 18문항
- 가치와 인식 50문항
- 가구 일반 특성 13문항

○ 작성방법: 노트북 PC를 활용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 자료수집 체계(용역)
- 조사원 → 직접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작성주기 및 조사기간
  - 작성주기: 3년 주기
  - 조사기간: 2024년 8월~11월

○ 공표범위

- 지역: 전국
- 내용: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가구소득수준별, 지역 특성별 등

○ 공표방법: 보고서 발간 및 KOSIS 게재

○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가구원 사항과 가구 일반 특성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실제 출생 연월일, 만연령, 교육정도, 교육상태,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국적 ○ 주택 유형, 점유 형태, 공공임대주택 여부, 대출 여부와 금액, 타 주택 소유 여부,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지출, 총 자산, 총 부채
동거와 결혼	■ 공통 ○ 배우자 또는 사귀는 사람 유무, (신규)연애 시작 시점, (신규)만남 계기, (신규)연애 의향 ○ 혼인 및 부부관계 판단, 동거 여부, 혼인신고 여부, 하지 않는 이유, 신고 계획,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 경험 ○ 이혼에 관한 사항: 시기, 형태, 이유, 자녀 사항 ■ 법률혼, 사실혼 ○ 결혼식 여부와 시기, 동거 시작 시기, 결혼 시점에 대한 생각, 결혼 당시 고려사항, (신규)결혼생활 만족도 ■ 동거 ○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 (신규)동거 알린 범위와 동거 계기, (신규)동거파트너 연령, 성, 교육, 경제활동 상태 ○ (신규)현재 사귀는 사람과 결혼 의향, 3년 이내 결혼하지 않는 이유 ■ 미혼, 기혼싱글 ○ 동거할 의향, (신규)동거 형태 인식, 결혼(재혼) 의향, 예정 연령, 결혼 고려사항, (신규)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지 않을 경우 동거인

구분	조사 내용
임신·출산 건강	■ 건강과 피임 ○ 생식계 증상 경험 여부, 대처방법, 병의원·보건(지)소에 가지 않은 이유 ○ (신규)피임 인식 정도, 지식 습득 경로, 현재 피임 여부, 피임방법, 피임하지 않은 이유, 피임 결정 주체 ■ 임신·출산 경험 ○ 총 임신횟수, 원했던 임신 여부, (신규)계획임신 여부, 임신시기, 임신 시기의 적절성, 임신방법, 임신 종결 형태, 종결 시기, 태아수, 분만시기와 출생시 체중 ○ (신규)임신 당시 합병증 유무, 출생아 성별, 생존여부 ■ 난임 ○ 경험, 검사 여부, 시술 경험, (신규)시술 종류와 횟수, 결과, 힘들었던 점 ■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 결혼 당시 출산 계획과 수, 출산 결정 주체, (추가)출산 계획과 수, 의향 강도 ○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 (신규)제3자 생식세포 수증 의향, (신규)입양 자녀 유무, 명수, (신규)입양 의향 유무
산전·산후 관리	■ 산전 관리와 분만 ○ 진찰 기관, 초진 시기, 진찰 횟수, 분만장소, 분만방법 ■ 산후 관리 ○ 산후진찰 경험여부와 횟수, 산후우울감 경험 여부, 진단·상담 경험 유무, 진단·상담 기관, (신규)산후조리 장소 ■ 수유 ○ 모유수유 여부, 출생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현재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계획/중단), 월령별 수유형태, (신규)출산 전 수유 계획
자녀 양육	■ 영유아 및 초등 자녀 돌봄 ○ 막내자녀 희망 돌봄유형(방과후 돌봄), 실제 돌봄유형(방과후 돌봄) ■ 부부의 육아 분담 및 가사분담 ○ 육아 시간, 분담 정도, 육아분담 만족도, (신규)양육 관련 감점 ○ 가사 시간, 분담 정도, 가사분담 만족도 ■ 자녀양육비 및 생활 지원 ○ 자녀부양(경제적) 시기, 항목별 양육비, (신규)양육 관련 정부 지원
일	■ 공통 ○ 경제활동 여부,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직종, 업종, 직장 유형,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현직장(사업) 취업(사업시작) 시기, 일-가정-여가생활 어려움 정도, 지난주 한 일 ■ 일자리 이력 ○ 일자리 취업 상태, 시작 및 종료 시기,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직장유형, 입사 시, 퇴사 시 월 임금(수입), (신규)최종학교 졸업 시기 ■ 일가정양립 휴가 휴직 제도 ○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와 기간,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기간, 분할이용 여부, 최초 이용 기간과 총 이용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연속 이용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여부와 기간 ○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용 여부, (신규)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기간, (신규) 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전후 변화

구분	조사 내용
부모와의 관계	○ 부모와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부모 생존 여부, 동거 여부, 부모 출생연월, 교육, 취업, 직업, (신규)형제·자매 수 ○ 부모에게 정기적 현금 지급 여부, 금액, 비정기 현금과 현물 지급 여부, 횟수와 금액, 부모로부터 정기적 현금 지원 여부, 금액, 비정기 현금과 현물 지원 여부, 횟수와 금액 ○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주관적 계층 의식, 순자산 수준
지역 이동과 독립	○ 어린 시절 거주지, 부모와 동거 여부, 주관적 계층 의식, 분거 경험 여부, 시점 ○ (신규)성인 이후 분거한 주거의 비용과 분담비율, (신규)신혼집 여부, (신규)생활비용 분담 비율, (신규)신혼집 주거의 비용과 분담 비율 ○ 분거 이후 1년 이상 함께 산 경험 및 이유 ○ (신규)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 시기와 시점 ○ (신규) 지역 이동 시기, 이동 전후 거주지역
가치와 인식	■ 종교와 행복 ○ 종교, (신규)현재(5년후) 행복도 ■ 가족 가치 ○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본인 자녀 필요성,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 이상자녀수, 자녀 가치 ■ 성역할 ○ 인식, 부부 역할 인식, 이상적인 부부간 역할 분담 ■ 사회적 가치 ○ 신뢰, 안전 인식, (신규)현재(5년후) 국민 행복 수준 인식, (신규)남녀평등 수준, (신규)본인 미래 예측가능성, 우리 사회 미래 전망 인식

○ 내용상 특징

- 이력 관찰: 전생애 혼인, 이혼, 임신, 출산, 직업이동, 지역 이동
- 주요 쟁점 내용: 동거, 청년 독립, 지역 이동, 양육비, 보조생식술, 모유수유

□ 가족과 출산 조사의 위상

○ 국가 지정 통계(승인번호: 제33101호), 1982년 4월 15일 지정

※ 지정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로, 통상 승인통계 중에서 통계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통계

※ 그 외 승인통계는 일반통계로 분류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 승인통계 중에서 지정통계는 93종이고 일반 통계는 1,265종이다. 93종의 지정통계 중에서 연구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가족과 출산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는 교육기본통계 2종 뿐이다. 상세 현황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KOSIS)의 국내통계 작성현황 참조(https://kosis.kr/serviceInfo/statisWriteStatus.do)

○ 대표 지표 산출

- 통계청, 61개 저출생 통계지표체(정기): 출산의향, 기대자녀수
- 한국의 사회지표(정기): 이상자녀수
- 법원 양육비 산정 근거로 활용(비정기)

○ 국제기구 요구 지표(비정기적): 모유수유율 피임율(피임실천율)

나. 변천사

□ 역대 조사 명칭과 대상

조사 년도	조사명칭	조사대상
1964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에 거주 하는 15~54세의 기혼부부(4,000명)
1965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에 거주 하는 45세 미만의 유배우부인(3,445명)
1966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에 거주 하는 45세 미만의 유배우부인(3,368명)
1967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에 거주 하는 50세 미만의 유배우부인(3,624명)
1968	전국 출산력 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8,774가구) 와 동 가구에서 50세 미만의 기혼부인(7,477명) 및 유배우부인 (6,889명)
1971	전국 출산력 및 인공임신 중절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6,800가구)와 동 가구에서 55세 미만의 기혼부인(6,285명) 및 유배우부인(5,629명)
1973	가족계획 종합실태 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3,160가구) 와 동가구에서 50세 미만의 기혼부인(3,038명)과 18~27세의 미혼여성
1974	한국 출산력 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20,932가구)와 동가구에서 1/3에 해 당하는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기혼부인(5,417명)과 표본 조사구에 대한 지역특성조사

조사 년도	조사명칭	조사대상
19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8,160가구) 와 동가구에서 50세 미만의 기혼부인(6,020명) 및 유배우부인(15~44세: 5,008명)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5,069가구)와 동가구에서 표본추출에 의한 50세 미만의 유배우부인(3,603명)
1979	피임보급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19,788가구)와 동가구에서 표본추출에 의한 50세 미만의 기혼부인(14,303명)
1982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의 가구조사(7,375가구) 와 동가구에서 49세 이하 기혼부인(5,371명) 및 44세 이하 유배우부인(4,35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7,415가구) 및 15~49세 기혼부인(8,421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1,864가구) 및 15~44세 기혼부인(7,792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1,540가구) 및 15~49세 기혼부인(7,384명) 및 18~34세 사이의 미혼남녀(3,715명: 남성 1,991명, 여성 1,724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0,613가구) 및 동 가구에 거주하는 15~49세 기혼부인(6,060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1,216가구) 및 동 가구에 거주하는 50세 미만(15~49세)의 기혼부인(6,450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자녀가치관 ·성선호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조사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1,388가구) 및 동가구에 거주하는 15~64세의 기혼부인(8,935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5,758가구) 및 동가구에 거주하는 15~59세 기혼가구(11,111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4,497가구) 및 동 가구에 거주하는 15~59세 기혼가구(10,132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3,883가구) 및 동 가구에 거주하는 15~64세 기혼가구(9,961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전국표본지역내 가구조사(14,970가구) 및 동 가구에 거주하는 15~64세 기혼가구(10,071명: 임신·출산·피임·모자보건 분석대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5~49세 기혼여성 가구(11,009명)/미혼남녀(2,383명)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5~49세 기혼여성 가구(11,207명)/20~44세미혼남녀(2,462명)

□ 최근 조사의 명칭과 표본 특성

조사 년도	조사명칭	가구 조사	기혼 가구	기혼여성	유배우부인 (임신,출산 등 분석)	비고
1982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7, 375가구		15~49세, 5,371명	15~44세, 4,35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7,415가구		15~49세, 8,421명	15~44세, 7,010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864가구		15~44세, 7,792명	15~44세, 6,515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540가구		15~49세, 7,384명	15~44세, 6,270명	18~34세 미혼남녀 (3,715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0,613가구		15~49세, 6,060명	15~44세, 5,183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216가구		15~49세, 6,450명	15~44세, 5,420명	65세 이상의 노인(2,207명)*
2000 김승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388가구		15~64세, 10,715명	15~44세, 6,408명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5,758가구	15~59세, 11,111명	15~59세, 10,078명	15~44세, 6,598명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497가구	15~59세, 10,132명	15~59세, 8,774명	15~44세, 5,395명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3,883가구	15~64세, 10,777명	15~64세, 9,807명	15~44세, 4,868명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970가구	15~64세, 10,071명	15~64세, 8,179명	15~44세, 4,537명*	
2015 이삼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009가구		15~49세, 11,009명	15~49세, 10,324명	20~44세 미혼남녀 (2,383명)
2018 이소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207가구		15~49세, 11,207명	15~49세, 10,630명	20~44세 미혼남녀 (2,462명)
2021 박종서	가족과 출산 조사	9,999가구		19~49세 4,632명	19~49세 7,032명 (미혼여성 포함)	기혼, 미혼, 남, 여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
2024	가족과 출산 조사	10,387가구		19~49세 6,175명	19~49세 8,791명 (미혼여성 포함)	기혼, 미혼, 남, 여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

주: 2021, 2024년 표본 규모는 가중치 적용 전

다. 2021년 개편 과정과 주요 내용

1) 기존 조사의 개요

□ 기존 조사 이력

○ 출산력 조사는 매 3년 주기 조사사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행 중

-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출산력조사)'는 1964년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7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로 개편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2003년부터 현재 체계로 지속해 옴.
  -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 추가
  -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
  -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복지 측면이 강화됨.

- 2015년부터 기혼여성을 대상표본으로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 조사 내용을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경제활동 중심으로 정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존 조사의 표본 특성

○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남성과 여성, 기혼여성과 유배우 여성, 연령기준 등에서 일관성이 떨어짐.

○ 2015년부터 표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혼과 미혼의 표본을 구분하였고, 미혼조사는 부가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 미혼조사대상이 본 표본에서 제외되면서, 출산율과 출산행동관련 사항이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한계

〈기존 출산력 조사 표본특성 변화 내용(1982~2018)〉

조사 년도	조사명칭	가구조사	기혼가구	기혼여성	유배우부인 (임신,출산 등 분석)	비고
1982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7, 375가구		15~49세, 5,371명	15~44세, 4,351명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7,415가구		15~49세, 8,421명	15~44세, 7,010명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864가구		15~44세, 7,792명	15~44세, 6,515명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540가구		15~49세, 7,384명	15~44세, 6,270명	18~34세 미혼남녀 (3,715명)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0,613가구		15~49세, 6,060명	15~44세, 5,183명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216가구		15~49세, 6,450명	15~44세, 5,420명	65세 이상의 노인(2,207명)*
2000 김승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1,388가구		15~64세, 10,715명	15~44세, 6,408명	

조사 년도	조사명칭	가구조사	기혼가구	기혼여성	유배우부인 (임신,출산 등 분석)	비고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5,758가구	15~59세, 11,111명	15~59세, 10,078명	15~44세, 6,598명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497가구	15~59세, 10,132명	15~59세, 8,774명	15~44세, 5,395명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3,883가구	15~64세, 10,777명	15~64세, 9,807명	15~44세, 4,868명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4,970가구	15~64세, 10,071명	15~64세, 8,179명	15~44세, 4,537명*	
2015 이삼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009가구		15~49세, 11,009명	15~49세, 10,324명	20~44세 미혼남녀 (2,383명)
2018 이소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11,207가구		15~49세, 11,207명	15~49세, 10,630명	20~44세 미혼남녀 (2,462명)

□ 기존 조사의 목적

○ (2012년 조사의 목적) 1964년 이래 22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정책환경 변동을 적극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음.

-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등 임신·출산관련 요소(factors)의 행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

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함.
-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2018년 조사의 목적)

-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을 파악
-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또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
- 본 조사는 여기에 더해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2018년도 조사는 24번째(1979년부터 3년 주기) 조사로 정부지정통계 제331001호를 생산함. 조사 결과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한국 지표를 생산하고,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과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2018년 조사의 내용(기혼 여성)

대영역	중영역	문항 수	문항소계	비중(%)
가구사항	가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37	10.0
	상주 가구원에 관한 사항	15		
	비동거 거족에 관한 사항	18		
가구의 일반특성	주거, 주택 관련	6	14	3.8
	소득, 지출, 부채, 자산	8		
영역 1. 결혼	결혼 전 거주지	4	52	14.1
	결혼 관련 태도	12		
	결혼 관련 사항	14		
	결혼 관련 사항(과거 결혼 경험)	7		
	결혼 비용	5		
	결혼 정책	10		
영역 2. 임신, 출산, 피임	임신횟수	8	84	22.7
	임신 순위별 응답	12		
	총 출산	3		
	사망 자녀	4		
	자녀 선호, 가치, 자녀 계획	9		
	출산관련 태도	15		
	피임 관련 사항	14		
	난임	19		
영역 3. 산전, 산후 관리	현존 자녀 정보	6	34	9.2
	산전 관리 및 분반	11		
	산후 관리	9		
	수유	8		
영역 4.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육아, 가사 분담	30	79	21.4
	취학 전 자녀의 돌봄	11		
	초등학교 재학 자녀 돌봄	8		
	자녀 경제적 부양 기간	1		
	양육을 위한 직접 지출	9		
	보육 정책 관련 인지, 중요도, 경험, 도움정도	20		
영역 5. 일가정 양립	부인과 남편의 현 취업 상태	19	66	17.8
	부인의 직업활동, 가치관	11		
	결혼 전후 근로 상황	8		
	임신, 출산 전후 근로상황	12		
	일가정양립 정책, 제도 인지, 중요도, 경험, 도움정도	16		
영역 6. 출산 및 양육 지원	저출산, 국가의 양육 지원 등에 대한 의견	4	4	1.1
전체		370	370	100.0

□ 2018년 조사의 내용(미혼 남녀)

대영역	중영역	문항 수	문항소계	비중(%)
가구사항	가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36	20.8
	상주 가구원에 관한 사항	15		
	비동거 거족에 관한 사항	17		
가구의 일반특성	주거, 주택, 비동거 경험	9	18	10.4
	소득, 지출, 부채, 자산	9		
영역1. 교육 및 경제활동	교육 및 취업 기간	13	44	25.4
	취업활동(현재의 경제활동)	8		
	취업활동(마지막 경제활동)	11		
	취업활동(최초의 경제활동)	11		
	직업 관련 가치관, 태도	1		
영역2. 이성교제 및 결혼	현재의 이성교제	5	24	13.9
	결혼 가치관	19		
영역3. 자녀 및 가족 가치관	자녀 및 가족 가치관	25	25	14.5
영역4.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출산 및 양육 지원, 저출산 의견	26	26	15.0
전체			173	100.0

□ 기존 조사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 조사 목적의 측면: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복지영역이 확대되면서, 출산력조사의 내용이 취약가족 중심의 제한적 복지 관점, 가족의 정상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문항에 집중 등의 문제점 드러남. 2015년 이후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 단순문항(저출산 대책 관련 청년, 신혼부부, 자녀양육, 모자보건, 일가정양립 정책 사항)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음.

○ 조사 내용의 복잡성: 전체적으로 조사 문항이 과도하고 문항의 연계가 복잡하여 조사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표본의 모호성: 2000년대 이후 조사 내용에서 복지, 정책 영역이 확대되면서 조사대상 또한 연령기준, 남성 포함 여부, 미혼 포함 여부 등에서 명확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인구현상에 대한 조절과 통제라는 전통적 관점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이는 단순한 용어와 조사명칭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인권과 개인 선택의 자율성이 확장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됨.

2) 2021년 조사 추진계획 및 개편 검토사항

가) 2021년도 조사 개요

□ 명칭

○ 기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변경 안: 2021년 전국 가족과 출산 조사, 2021년 가족형성과 출산동향조사, 2021년 가족과 출생 조사
Korea Family and Fertility Survey(KFFS)/ Family Formation and Child Birth Survey

□ 사업예산: 1,240,000천원

□ 조사 방법 및 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직접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현한 CAPI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구 면접조사

○ 700개 조사구 표본추출, 조사구 당 15가구 내외, 총 10,000가구 목표

○ 조사팀 구성: 15개 팀, 조사원 75명

○ 조사 기간: 2021.07.28.~11.10.(105일간, 조사원 이동 및 휴게시간 포함)

업무	일정	비고
- 조사표 개발 및 통계 변경 승인신청	2021.6.4.(금) 이전	• 조사표 개발 완료 → 통계 변경 승인 신청(4주 예상)
- CAPI 시스템	2021.6.7.(월)~7.5.(월) 중	• 약 4주 예상
- 연구진 CAPI Test	2021.7.13.(화)~7.14.(수)	• 연구진 의견 반영 CAPI 수정
- 표본추출	2021.6.30.(수)~7.5.(월) 중	• 이혜정 부연구위원
- 조사구 정보 및 요도&가구명부 전달	2021.7.9.(월) 이전	• 요도&가구명부 → 팀별 조사구 배부
- 파일럿조사	2021.7.12.(월)~7.15.(목)	• 설명회 1일, 조사 2일, 결과 논의 1일
- 조사 설명회	(1차)21.7.27.~7.29. (2차)21.9.6.~9.8.	• 복지/의료 패널 종료 후 순차
- 본 조사 실시	1차 2021.7.30.~11.21. (115일간) 2차 2021.9.9.~11.21. (74일간)	• 15개 팀, 조사원 75명
- Data 정리(1차)	2021.11.22.~11.28.(7일간)	• 취합 자료 정리
- Data Cleaning	2021.11.29.~12.24.(20일간)	• 응답 논리 점검과 오류 수정

나) 조사의 목적

□ 조사의 기본방향과 목적

○ 접근 방향에 대한 검토

- 가족구성과 임신·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의 결정

- 인구학적 생애 사건의 자기 결정권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개인의 역동적 생애 맥락에서 인구이벤트의 결정/비결정의 사회조건을 파악
- 피임, 임신, 난임, 출산 등과 관련되는 재생산건강과 권리는 혼인 여부,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의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
-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모든 인구의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중요하게 고려함. 결혼제도 내외부의 생활 모두를 조사함.
- 민감한 사적 영역에 대한 조사의 정당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행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구학적 행동 및 재생산건강과 가족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

□ 2021년 조사의 목적

○ (목적)이 조사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단위와 가족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작용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
- 재생산행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건강의 문제와 건강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함.

- 인구현상과 생애 과정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
- 조사자료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함.

다) 조사 내용 구성

□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주요 항목	문항 수	문항 소계
가구사항	이름, 관계,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교, 국적, 동거여부, 비동거이유	11	24
	주거, 소득, 지출, 자산, 부채	13	
성장배경 및 세대 관계	○ 15세대 성장환경 - 지역, 동거부모, 부모직업, 15세 때 경제형편	5	30
	○ 주거 이력 및 세대 관계: - (현재)부모 연령, 학력, 생존여부, 혼인상태, 직업, 경제상황 - 주거독립, 자립인식, 결혼전후 주거 - 세대관계	 7 9 9	
가족형성	- 유배우자: 결혼시점, 동거시점, 혼인신고시점, 결혼식 시점, 결혼기대 척도(4)	12	46
	- 동거 중: 시작시기, 동거기대 척도(4), 결혼이행, 차별	12	
	- 미혼(기혼싱글): 결혼의향, 결혼기대 척도(4), 동거의향 등	13	
	- 결혼이력	3	
	- 이혼경험자: 자녀유무, 양육비 지급 사항	6	
임신출산 건강	피임: 생식계 건강, 대처방안, 피임인지도, 경험, 방법, 이유, 의사결정	12	37
	- 임신출산: 임신횟수, 시기, 계획여부, 방법, 결과, 총출생아수, 사망자녀수	10	
	- 배우자 있음: 결혼당시 계획, 향후 계획, 의사결정척도(3)	5	
	- 배우자 없음: 향후 출산 의향	1	
	- 난임(불임): 경험, 검사, 원인, 시술경험, 결과, 기간 등	9	

구분	주요 항목	문항 수	문항 소계
산전후 관리	- 산전, 분만: 진찰장소, 횟수, 초진시기, 불편사항, 분만장소, 자연분만여부, 분만시기와 체중 - 산후관리: 산후진찰경험, 산후조리 장소, 우울경험 및 치료 - 수유: 방법, 정보취득, 모유여부 및 계획, 이력	7 5 9	21
자녀양육	- 분담: 육아와 가사 시간 분담, 만족도 - 미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양육비: 돌봄기관, 공/사교육비, 돌봄인력비용, 기타	4 6 6 7	23
일	- 본인과 배우자 현취업: 근로시간, 소득, 직종, 종사상지위 등 - 일하는 경우: 야간 근로, 일생활균형 척도(4) - 일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 주로 하는 일 - 항목별 시간 량과 적정성 - 생애사건 시 취업이력: 상태, 직종, 종사상지위, 수입 등	12 6 6 5 10	39
가치관과 인식	- 성역할태도와 가치: 성역할척도(4), 부성과 모성척도(6), 가족가치척도(10), 생애전망(2), 결혼조건(8) - 자녀출산 태도: 필요성, 영향요인척도(8), 이상자녀수, 자녀가치척도(6) - 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도, 집단신뢰척도(3), 기관 신뢰척도(4)	30 18 8	56
전체			276

라) 조사대상 및 표본 설계

□ 조사 대상 범위의 쟁점: 혼인상태, 성, 연령

○ (혼인상태)미혼 표본 통합

- 2018년조사에서 표본이 분리되었던 미혼 남녀를 전체표본에 통합함. 결혼환경, 결혼의 이행-미이행 등 다양한 생애경로 파악. 출산율 측정의 정확성을 기함.

○ (성)미혼남녀, 기혼 남녀 및 배우자가 없는 기혼 남녀를 포함

-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의 배우자 관점에서 포함, 남성에 대해서 가구 공동항목과 경제활동, 결혼이력,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

- 출산행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지만,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뚜렷한 역할이 존재함. 그동안 출산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지만, 2021년 조사부터 남성의 출산 의향, 가치관 등도 파악하여 분석함.
- 남성의 출산이력은 조사하지 않고, 결혼이력과 건강 영역에서 일부 항목 조사함.

○ (연령)

- 조사대상 연령은 19~49세로 한정 함. 연령 하한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고려하여 18세로, 상한은 대체로 출산이 완결되는 44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하한 연령은 조사민감성 등 고려 필요, 상한 연령은 자녀양육기, 미혼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여 19~49세가 적절

□ 2021년 표본 개편 방안

구분	기존(2018년)	개편(2021년)	
연령	15~49세	19~49세	
성별/혼인상태	기혼여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개인 조사	
		배우자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 각각 조사
		배우자 없는 경우	여성, 남성 개인 조사
표본 구분	기혼/미혼 표본 분리	전체 통합 표본	
목표 표본규모	기혼 11,207(미혼 2,400)	전체 10,000가구	

제6절 제6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11. 13.(목), 11:00

○ 주제: 인구정책 성과관리의 현황과 쟁점

○ 발표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자료



01 인구정책 평가센터

◆ 조직 및 인력 구성

- '24. 6월 출범
- 현원 박사급 3명(겸직), 석사급 9명
- 전략연구팀, 정책평가팀으로 구성

◆ 설립 배경

- 예산 투입 대비 인구정책의 효과성 논란
- 인구정책의 성과관리 또는 평가체계의 실효성 논란
-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의 적용 필요성 제기

01 인구정책 평가센터

◆ 주요 업무

- **인구정책 평가**
  - 인구정책 심층평가
  - 시행계획 평가
- **인구정책 성과관리 연구**
  - 성과지표 체계 수립 연구
  - 시행계획 수립 연구
  -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연구
- **인구정책 연구**
  -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 연구 등

02 수행 실적

◆ 인구정책 심층평가

- **양육분야 주요사업 심층평가 ('24)**
  - 학령기 이전, 초등돌봄, 현금성 지원사업
- **일가정양립 주요사업 심층평가 ('25)**
  - 육아휴직, 유연근무 장려, 가정친화경영 기업지원사업

◆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24, '25)

- **예산집행율, 성과지표 목표달성율 점검**
- **중앙부처 핵심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평가**

02 수행 실적

◆ 인구정책 성과관리 연구

- **저출산 사업 성과지표 체계 수립 연구 ('24)**
  - 6.19 대책 관련 15대 주요 지표 수립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연구 ('25)**
  - 저출산 직결 예산 분류(중앙부처, 지자체), 고령화 예산 분류 체계 연구
  -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중앙부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연구 ('25)**

◆ 인구정책 연구

- **'24년 연구 실적**
  -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한 인구정책 효과, 국가 간 출산율 실증비교 및 머신러닝 분석, 저출생 정책 인식 및 영향도 분석, 지출생 정책 소득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등
- **'25년 진행 중 연구**
  - 중앙·지자체 현금지원 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조건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등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제도 개요

-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인구정책에 적용**
- **평가 항목 1: 사업 성과**
  - 효과성: 목표 달성도(outcome), 궁극적 효과(impact) 등
- **평가 항목 2: 사업 설계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 재정 지원·조달방식·분담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유사 중복성
- **정책제언**
  - 재원 조달의 적정성 개선방안,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개선방안, 사업 모니터링·평가·환류 체계의 개선방안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평가 방법

- **논리모형에 따라 효과성 평가**
  - 자원 투입의 정책 목표 전달 효과와 과정상의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투입	→	산출	→	단기성과	→	중장기성과
유연근무제도 장려금 지원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 증가 유연근무이용 근로자 증가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출산의향 증가 출산율 증가

- **평가질문**
  - (산출) 유연근무 장려금에 반응하여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가?
  - (산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내에서 실제로 유연근무가 활성화 되는가?
  - (단기성과) 유연근무 사용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가?
  - (중장기성과) 유연근무제 사용이 근로자의 출산의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효과전달의 병목구간 진단, 사업 설계 상의 문제점 및 원인 파악**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효과성 평가 결과 (현금성 지원 사업)

● **(메타평가) 지자체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 합치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함**

구분	선행연구
효과 有	박창우·송헌재(2014), 김우잉·이정만(2018), 이철희(2019, 2022), 이철희 외(2023), 최혜진 외(2023), Hong et al.(2016), Kim(2024)
효과 無	신효영·방은령(2008), 석호원(2011), 홍소정(2011), 백지훈(2012), 이미옥·명성준(2015), 김민곤·천지은(2016), 정호용(2020)
효과 혼재	김현숙(2021), 이송희·황진영(2018)

- 출산지원금의 충분한 변이가 존재하는 데이터, 고정효과모형 사용, 내생성 통제, 지원금에 의한 출산의 향 有 가정의 유입 고려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양(+)의 효과가 나타남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효과성 평가 결과 (현금성 지원 사업)

● **(실증분석: 지자체 사업) 지자체 출산장려금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 0.0072~0.0089 증가하는 효과 발견**

- 출산지원금에 충분한 변이가 존재하고, 고정효과모형 사용, 내생성 통제, 인구 유입 고려한 대다수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
-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사업유형(돌봄 서비스 등)보다 투입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함 (지자체 사업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 사업이기 때문)

● **인접 지자체의 현금지원 증가시 해당 지자체의 현금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지자체 간 현금성 지원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

- 현금성 지원 경쟁이 심화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투입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효과성 평가 결과 (현금성 지원 사업)

- **(실증분석: 중앙부처 사업) '22년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 전후 1년 내 월별 임신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음**
  - 데이터의 한계로 정책도입 직후 효과만 분석되었으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결정은 중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는 대로 장기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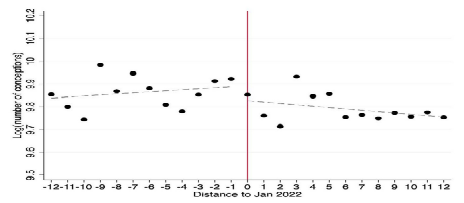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사업설계 평가 결과 (현금성 지원 사업)

- **중앙정부의 현금성 수당은 영아기에 필요 이상 지원하고 만 7세 이후 단절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60~70만원 수준이며 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비 등이 포함되면서 월평균 양육비가 증가하는 구조
  - 현금성 지원은 0~1세에 집중, 7세 이후 단절되어 지출 패턴과 괴리

- **첫만남 이용권은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사중복성이 높음에도 상호연계없이 설계되어 지자체 출산지원금 남발 등 비효율성 발생**
  -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지급 결정 시, 중앙정부의 유사사업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없음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남발될 가능성
  - 중앙과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용, 홍보됨에 따라 전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인지도 낮은 편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정책 제언 (현금성 지원 사업)

-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예로, 중앙-지방 연계한 개인의 수급한도(benefit cap) 식용 등
  - 단기적으로 지자체 현금지원을 기초 레벨이 아닌 광역 레벨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지원금액 평탄화) 양육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양육비 지출패턴에 부합하도록 현금수당 지급 시기를 조정하되,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총액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수용성 확보 필요**
  - 현재 0~1세에 집중되어 있으나, 만 2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
  - 영아기에 집중되는 부모급여 지급을 평탄화(smoothing)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정책 제언 (현금성 지원 사업)

-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예로, 중앙-지방 연계한 개인의 수급한도(benefit cap) 식용 등
  - 단기적으로 지자체 현금지원을 기초 레벨이 아닌 광역 레벨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지원금액 평탄화) 양육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양육비 지출패턴에 부합하도록 현금수당 지급 시기를 조정하되,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총액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수용성 확보 필요**
  - 현재 0~1세에 집중되어 있으나, 만 2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
  - 영아기에 집중되는 부모급여 지급을 평탄화(smoothing)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한계

- **평가결과의 활용성**
  - 예산 재구조화
  - 사업 개선 방안
- **수행환경**
  - 시간, data, 거버넌스
  - 전문성의 다양성 결여
  - 기대 - 현실 간 괴리

03 인구정책 심층평가

◆ 향후 과제

- **심층평가 제도 설계 및 운영 개선**
  - 활용성 강화, 휘입 활성화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시행계획 평가와의 연계 등
- **사전예산심의제와의 연계 방안 강구**

제7절 제7차 인구정책세미나

1. 개요

○ 일시: 2025. 11. 27.(목), 10:30

○ 주제: 대체출산율(RF)의 의미와 인구학적 함의

○ 발표자: 우해봉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료

〈인구정책세미나 2025. 11. 27.〉

대체출산율(RF)의 의미와 인구학적 함의

인구정책연구실 우해봉

Ⅰ.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F)의 개념

○ 대체출산율(RF) 개념이 자명한 것처럼 보이고 인구학적 연구는 물론이고 미디어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개념임(오류 개연성 ↑).

- (사례 1) 통계청: 대체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수준"으로 정의함.
  - ☞ 대중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정의이지만, 엄밀한 개념 정의가 아닌 동시에 대체로 사실이 아님(후술).
- 사례 2)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 보고서에서 '균형 인구'(balancing population)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합계출산율'을 2.3명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나 2017년 보고서에서 2.07명으로 수정함.
  - ☞ 인구학적 이론에 대한 검토 없이 인구추계 모형을 통해 안정인구를 논의함.
  - ☞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균형 인구' 개념은 (보고서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구학의 '정지인구,' '대체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 사례 3) Elon Musk(2025):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1/3 수준이며, 3세대 후 한국의 인구는 현재 인구의 3~4% 수준까지 축소
  -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7, 대체출산율을 2.1 수준으로 이해하고, 1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의 1/3이 감소하기에 3세대 후에는 현재 인구의 3~4% 수준에 도달한다는 논리임($100 \times (1/3) \times (1/3) \times (1/3) \fallingdotseq 3.7\%$).

Ⅱ. 재생산 지표와 대체출산율

○ 인구의 성장은 **재생산** 지표(reproduction measures), 즉 부모 세대와 이어지는 자녀 세대의 크기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도 있음.

- 예컨대, '자녀 세대의 규모' 〉 '부모 세대의 규모' → 상황 지속 시 인구의 증가 예상

○ 대체출산율의 '대체'(replacement) 개념은 단일-성별 인구(single-sex population) 모형(여성)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순재생산율(Net Reproduction Rate: NRR) 지표가 여기에 해당하며, NRR 기준으로 'NRR = 1.0'이 **대체출산율**임.
  - NRR은 특정 기간(년)에 관측된 연령별 '여아' 출산율과 '여성' 사망률을 가임기 동안 경험하는 여성 코호트가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여아 수를 의미함.
  - $$NRR = \sum_{x=15}^{49} \frac{B_x^f}{P_x^f} \times \frac{L_x^f}{l_0} = \sum_{x=15}^{49} F_x^f \times \frac{L_x^f}{l_0} = \frac{\sum_{x=15}^{49} F_x^f \times L_x^f}{l_0} = \frac{G(t+1)}{G(t)}$$
  - $$GRR = \sum_{x=15}^{49} \frac{B_x^f}{P_x^f} = \sum_{x=15}^{49} F_x^f \cong TFR \times \frac{1}{1+SRB}$$
  - F_x^f = TFR과 동일한 산출 과정을 거치되, 출생 여아(female births)만을 고려하는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maternity rate)
  - ☞ L_x^f = x세 여성 인구 ← **사망력**의 **영향**이 **반영**됨!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l_0 = L_x^f$; NRR = GRR)
  - ☞ $\frac{L_x^f}{l_0}$는 **생존확률**(probability of survival)을 표시 (※ $\frac{l_x^f}{l_0}$와의 차이는?)
  - ☞ SRB = 출생 성비(여아 1명 기준), 예컨대 2023년(통계청)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 기준으로 남아 105.1명이면 SRB = 1.051
  - 대체출산율을 의미하는 'NRR = 1.0'은 **특정 연령별 출산율(여아)과 사망률(여성)을 적용받는 여성 코호트가 정확히 자신을 대체하는 규모의 자녀(여아) 세대를 출산**함을 의미함. → 물론 'NRR = 1.0'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연령별 출산율(여아)과 사망률(여성)의 조합이 가능함.

○ 정지인구 사례(II): 폐쇄 안정인구 + 대체출산율

- 출산율이 2023년부터 대체 수준(TFR=2.07)까지 상승하여 유지되더라도 장기 균형 인구는 기준 인구(2023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전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후에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진입함. → 인구 모멘텀 효과(population momentum; 아래 그림의 ↕ 표지)

※ 폐쇄인구에서 대체출산율(RF) 조정 시 주요 인구 지표: 2023~25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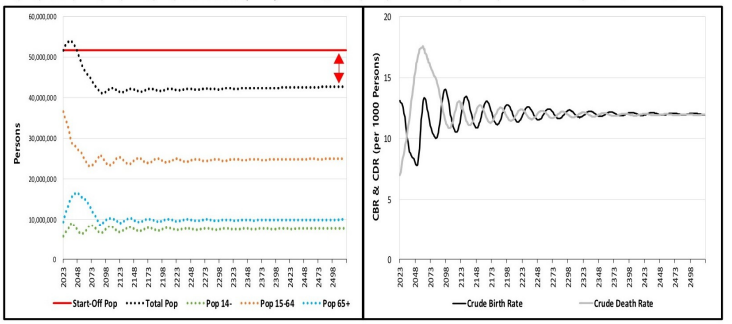

○ 정지인구 사례(III): 개방 안정인구 + 규모 및 성별-연령 구조 고정 이민자 유입

-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출산율과 이민자 순유입(replacement migration)의 수많은 조합이 가능함(조건: TFR < RF).
- (사례 III-1) 2023년의 출산율(TFR=0.721) 조건에서 연간 72만 명의 이민자 순유입 시 장기적으로 2023년 수준의 인구에 도달함.

※ 현 출산율 & 대체이민 조합 시 주요 인구 지표: 2023~23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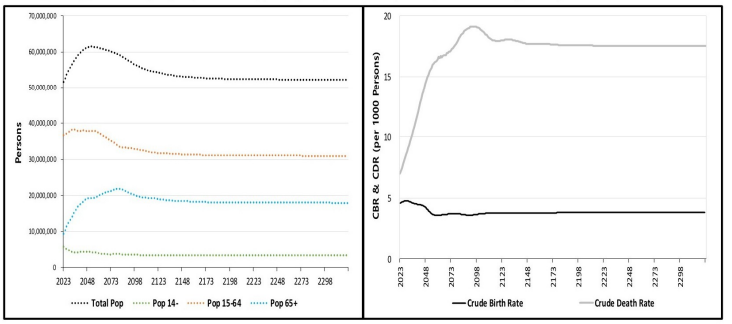

※ 완전생명표(여성: 통계청, 2023)

연령	사망확률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정지인구	총생존년수	기대여명
	$_nq_x$	l_x	$_nd_x$	$_nL_x$	T_x	e_x^o
0	0.00214	100,000	214	99,834	8,642,134	86.42
1	0.00014	99,786	14	99,779	8,542,300	85.61
2	0.00014	99,772	14	99,765	8,442,521	84.62
3	0.00013	99,758	13	99,752	8,342,756	83.63
4	0.00011	99,745	11	99,739	8,243,004	82.64
5	0.00009	99,734	9	99,729	8,143,265	81.65
6	0.00007	99,725	7	99,721	8,043,536	80.66
7	0.00006	99,718	6	99,715	7,943,814	79.66
8	0.00006	99,711	6	99,708	7,844,100	78.67
9	0.00006	99,705	6	99,702	7,744,391	77.67
10	0.00007	99,699	7	99,695	7,644,689	76.68
11	0.00008	99,692	8	99,688	7,544,993	75.68
12	0.00010	99,684	10	99,679	7,445,306	74.69
13	0.00012	99,673	12	99,667	7,345,627	73.70
14	0.00015	99,661	15	99,653	7,245,960	72.71
15	0.00018	99,646	18	99,637	7,146,307	71.72
16	0.00020	99,628	20	99,618	7,046,670	70.73
17	0.00021	99,608	21	99,597	6,947,052	69.74
18	0.00022	99,586	22	99,575	6,847,455	68.76
19	0.00023	99,564	23	99,553	6,747,880	67.77
20	0.00024	99,541	24	99,529	6,648,327	66.79
21	0.00026	99,517	26	99,504	6,548,798	65.81
22	0.00027	99,491	27	99,478	6,449,294	64.82
23	0.00030	99,464	29	99,449	6,349,816	63.84
24	0.00032	99,435	31	99,419	6,250,366	62.86
25	0.00033	99,403	33	99,387	6,150,948	61.88
26	0.00033	99,370	33	99,354	6,051,561	60.90
27	0.00032	99,337	32	99,321	5,952,207	59.92
28	0.00033	99,305	33	99,289	5,852,886	58.94
29	0.00036	99,272	35	99,255	5,753,597	57.96
30	0.00039	99,237	39	99,218	5,654,342	56.98
31	0.00042	99,198	42	99,177	5,555,125	56.00
32	0.00043	99,156	43	99,135	5,455,947	55.02
33	0.00044	99,113	44	99,092	5,356,812	54.05
34	0.00046	99,070	45	99,047	5,257,721	53.07
35	0.00048	99,025	48	99,001	5,158,674	52.09
36	0.00051	98,977	50	98,952	5,059,673	51.12
37	0.00055	98,927	54	98,900	4,960,721	50.15
38	0.00060	98,873	59	98,843	4,861,822	49.17
39	0.00066	98,814	65	98,781	4,762,979	48.20
40	0.00072	98,749	71	98,713	4,664,197	47.23
41	0.00077	98,678	76	98,640	4,565,484	46.27
42	0.00081	98,602	80	98,563	4,466,844	45.30
43	0.00085	98,523	84	98,481	4,368,281	44.34
44	0.00090	98,439	89	98,394	4,269,801	43.38
45	0.00096	98,350	95	98,303	4,171,406	42.41
46	0.00103	98,255	102	98,204	4,073,104	41.45
47	0.00111	98,154	109	98,099	3,974,899	40.50
48	0.00118	98,044	116	97,986	3,876,800	39.54
49	0.00123	97,928	121	97,868	3,778,814	38.59
50	0.00126	97,807	124	97,746	3,680,946	37.63

51	0.00133	97,684	130	97,619	3,583,200	36.68
52	0.00143	97,554	140	97,484	3,485,581	35.73
53	0.00158	97,414	154	97,338	3,388,097	34.78
54	0.00172	97,261	167	97,177	3,290,760	33.83
55	0.00183	97,094	178	97,005	3,193,582	32.89
56	0.00191	96,916	185	96,824	3,096,577	31.95
57	0.00197	96,731	191	96,636	2,999,754	31.01
58	0.00205	96,540	198	96,441	2,903,118	30.07
59	0.00217	96,342	209	96,237	2,806,677	29.13
60	0.00233	96,133	224	96,021	2,710,440	28.19
61	0.00255	95,909	245	95,786	2,614,419	27.26
62	0.00280	95,664	268	95,530	2,518,633	26.33
63	0.00304	95,396	290	95,251	2,423,103	25.40
64	0.00324	95,106	308	94,952	2,327,852	24.48
65	0.00348	94,798	330	94,633	2,232,900	23.55
66	0.00382	94,468	361	94,288	2,138,267	22.63
67	0.00424	94,108	399	93,908	2,043,978	21.72
68	0.00478	93,708	448	93,485	1,950,070	20.81
69	0.00544	93,261	507	93,007	1,856,586	19.91
70	0.00619	92,754	574	92,467	1,763,579	19.01
71	0.00709	92,179	654	91,852	1,671,112	18.13
72	0.00808	91,525	739	91,156	1,579,259	17.25
73	0.00921	90,786	836	90,369	1,488,103	16.39
74	0.01035	89,951	931	89,485	1,397,735	15.54
75	0.01175	89,020	1,046	88,497	1,308,250	14.70
76	0.01358	87,974	1,195	87,376	1,219,753	13.86
77	0.01602	86,779	1,390	86,084	1,132,377	13.05
78	0.01921	85,389	1,640	84,569	1,046,293	12.25
79	0.02303	83,749	1,929	82,784	961,725	11.48
80	0.02741	81,819	2,243	80,698	878,941	10.74
81	0.03231	79,577	2,572	78,291	798,242	10.03
82	0.03787	77,005	2,916	75,547	719,951	9.35
83	0.04438	74,089	3,288	72,445	644,404	8.70
84	0.05157	70,801	3,651	68,975	571,959	8.08
85	0.05991	67,150	4,023	65,138	502,984	7.49
86	0.06928	63,127	4,373	60,940	437,846	6.94
87	0.07971	58,753	4,683	56,412	376,906	6.42
88	0.09128	54,070	4,935	51,602	320,494	5.93
89	0.10401	49,135	5,110	46,579	268,892	5.47
90	0.11794	44,024	5,192	41,428	222,312	5.05
91	0.13310	38,832	5,168	36,248	180,884	4.66
92	0.14946	33,664	5,032	31,148	144,636	4.30
93	0.16703	28,632	4,782	26,241	113,489	3.96
94	0.18576	23,850	4,430	21,634	87,248	3.66
95	0.20559	19,419	3,992	17,423	65,613	3.38
96	0.22642	15,427	3,493	13,680	48,190	3.12
97	0.24816	11,934	2,962	10,453	34,510	2.89
98	0.27066	8,972	2,429	7,758	24,057	2.68
99	0.29378	6,544	1,922	5,583	16,298	2.49
100+	1.00000	4,621	4,621	10,716	10,716	2.32

※ 간이생명표(여성: 통계청, 2023)[1)]

연령	사망확률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정지인구	총생존년수	기대여명
	${}_nq_x$	l_x	${}_nd_x$	${}_nL_x$	T_x	e_x^o
0	0.00214	100,000	214	99,834	8,642,134	86.42
1	0.00053	99,786	52	399,036	8,542,300	85.61
5	0.00035	99,734	35	498,576	8,143,265	81.65
10	0.00053	99,699	53	498,382	7,644,689	76.68
15	0.00105	99,646	105	497,980	7,146,307	71.72
20	0.00139	99,541	138	497,379	6,648,327	66.79
25	0.00167	99,403	166	496,605	6,150,948	61.88
30	0.00214	99,237	213	495,668	5,654,342	56.98
35	0.00279	99,025	276	494,476	5,158,674	52.09
40	0.00404	98,749	399	492,791	4,664,197	47.23
45	0.00552	98,350	542	490,460	4,171,406	42.41
50	0.00730	97,807	714	487,364	3,680,946	37.63
55	0.00990	97,094	961	483,143	3,193,582	32.89
60	0.01388	96,133	1,335	477,540	2,710,440	28.19
65	0.02156	94,798	2,044	469,321	2,232,900	23.55
70	0.04026	92,754	3,734	455,329	1,763,579	19.01
75	0.08088	89,020	7,200	429,309	1,308,250	14.70
80	0.17929	81,819	14,670	375,957	878,941	10.74
85	0.34439	67,150	23,126	280,672	502,984	7.49
90	0.55890	44,024	24,605	156,699	222,312	5.05
95	0.76202	19,419	14,798	54,898	65,613	3.38
100+	1.00000	4,621	4,621	10,716	10,716	2.32

주: 생명표의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l_0 = 100{,}000$, ${}_nd_x = l_x - l_{x+n}$, ${}_nq_x = {}_nd_x / l_x$, ${}_nm_x = {}_nd_x / {}_nL_x$,

${}_nL_x = n l_{x+n} + {}_na_x \, {}_nd_x$, $T_x = \sum_x^{\infty} {}_nL_x$, $e_x^o = T_x / l_x$

1) 일반적으로 생명표 지표 가운데 ${}_nL_x$(생존 인년 수: number of person-years lived)를 정지인구로 명명하지만, l_x 지표가 정지인구 개념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음. 참고로, l_x는 생존분석(사건사분석)에서 사용되는 생존곡선(survivor function)의 의미도 지님. l_x 곡선 아래의 면적이 ${}_nL_x$임.

Ⅲ. 대체출산율과 인구 성장

○ **현시점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2023년 기준, TFR = 2.07)**까지 즉각적으로 상승하여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현재**(2023년) **인구가 유지되는가? →** 사실이 아님.

- **대체출산율**은 국제인구이동이 없는 안정인구(closed stable population)에 기초한 개념임.
-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이더라도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Alfred Lotka(1939; PAA President in 1938-39)의 **안정인구**(stable population)

- **연령별 출산율-사망률이 일정**하고 **연령별 순이동률**이 0(혹은 폐쇄 인구)인 조건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인구가 출현함을 밝힘.
  - 동일한 출산율과 사망률을 장기간 적용받으면 **초기의 연령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 구조**가 출현함(ergodicity).

○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안정인구의 특수 사례**

- **안정인구 조건**에서 (고정된 연령별 출산율 대신에) **단위당**(예, 연간) **출생아 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추가되면 장기적으로 **정지인구**가 출현함.
  - 일반 안정인구와 비교해 정지인구는 연령 구조는 물론이고 연령별 인구 및 총인구도 일정하게 유지됨(**인구 성장률 = 0**).

○ **정지인구 사례(I): 생명표(life-table)**

- 기본적으로 생명표는 가상 혹은 실제 코호트의 사망력 패턴을 요약하는 도구임.
- 비록 정지인구가 생명표 모형과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생명표에 기초하여 정지인구 모형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음. → **생명표 = 수리인구학 모형**
- 정지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에서 매년 새롭게 유입되는 출생아 수로 l_0를 해석할 수 있음.
  - $l_0 = \sum_{0}^{100+} d_x$ → 매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동일**함.
  - **연령(대)별 인구**($_nL_x$) 및 **총인구**(T_0)가 **고정**됨.

※ 기대수명과 대체출산율(model life-table; Kohler & Ortega, 2003)

e_0	Replacement TFR
25	5.21
35	3.83
45	3.08
55	2.61
65	2.30
75	2.11
80	2.06

주: 평균 출산 연령은 29세로 가정됨.

※ 세계/대륙/지역별 대체출산율, 1995-2000(Espenshade et al., 2003)

Region	TFR	Replacement TFR (TFR_R)	TFR/2.1	TFR/TFR_R	$2.1/TFR_R$
World	2.816	2.335	1.341	1.206	0.899
More developed regions	1.567	2.091	0.746	0.749	1.004
Less developed regions	3.097	2.370	1.475	1.307	0.886
Least developed countries	5.471	2.748	2.605	1.991	0.764
Northern America	1.999	2.085	0.952	0.959	1.007
Europe	1.408	2.097	0.670	0.671	1.001
Oceania	2.411	2.176	1.148	1.108	0.965
Latin America/Caribbean	2.687	2.170	1.280	1.238	0.968
Central America	3.044	2.164	1.450	1.406	0.970
South America	2.572	2.166	1.225	1.187	0.969
Caribbean	2.500	2.234	1.190	1.119	0.940
Africa	5.273	2.699	2.511	1.954	0.778
Eastern Africa	6.093	2.944	2.901	2.069	0.713
Middle Africa	6.409	2.745	3.052	2.334	0.765
Northern Africa	3.576	2.302	1.703	1.553	0.912
Southern Africa	3.294	2.442	1.569	1.349	0.860
Western Africa	5.945	2.772	2.831	2.145	0.758
Asia	2.699	2.320	1.285	1.163	0.905
Eastern Asia	1.762	2.230	0.839	0.790	0.942
South-eastern Asia	2.826	2.251	1.346	1.256	0.933
South-central Asia	3.577	2.426	1.703	1.474	0.866
Western Asia	3.855	2.230	1.836	1.729	0.942

☞ 향후 사망률이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대체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출생 성비'에 의해 결정될 것임.

- 2023년의 연령별 출산율(ASFR), 연령별 사망률(ASMR) 및 출생 성비(SRB=1.051)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대체출산율은 TFR = 2.07 수준임.

※ 대체출산율(RF) 산출 관련 주요 지표(2023년)

Age	l_x (여성) ① (생명표)	${}_nL_x$ (여성) ② (생명표)	Pop (여성) ③ (연앙인구)	Births (남+여) ④ (출생아)	ASFR (남+여) ⑤=④/③	LT Births (여성) ⑥=②×⑤ ÷(1+SRB)	Replacement ASFR ⑦=⑤×2.872	LT Births (남+여) ⑧=②×⑦	LT Births (여성) ⑨=②×⑦ ÷(1+SRB)
0	100,000	99,834							
1	99,786	99,779							
2	99,772	99,765							
3	99,758	99,752							
4	99,745	99,739							
5	99,734	99,729							
6	99,725	99,721							
7	99,718	99,715							
8	99,711	99,708							
9	99,705	99,702							
10	99,699	99,695							
11	99,692	99,688							
12	99,684	99,679							
13	99,673	99,667							
14	99,661	99,653							
15	99,646	99,637	234,062	21	0.000090	4	0.000258	26	13
16	99,628	99,618	228,796	21	0.000092	4	0.000264	26	13
17	99,608	99,597	213,396	57	0.000267	13	0.000767	76	37
18	99,586	99,575	218,835	86	0.000393	19	0.001129	112	55
19	99,564	99,553	232,141	214	0.000922	45	0.002648	264	129
20	99,541	99,529	236,100	329	0.001394	68	0.004003	398	194
21	99,517	99,504	251,390	647	0.002574	125	0.007393	736	359
22	99,491	99,478	285,536	1,024	0.003587	174	0.010302	1,025	500
23	99,464	99,449	299,639	1,379	0.004603	223	0.013220	1,315	641
24	99,435	99,419	299,695	1,871	0.006241	303	0.017924	1,782	869
25	99,403	99,387	313,055	2,756	0.008803	427	0.025279	2,512	1,225
26	99,370	99,354	322,893	4,038	0.012506	606	0.035914	3,568	1,740
27	99,337	99,321	328,011	6,242	0.019029	922	0.054646	5,428	2,647
28	99,305	99,289	332,345	9,133	0.027479	1,330	0.078913	7,835	3,821
29	99,272	99,255	331,856	12,679	0.038205	1,849	0.109714	10,890	5,310
30	99,237	99,218	336,449	17,028	0.050610	2,449	0.145339	14,420	7,032
31	99,198	99,177	337,495	21,536	0.063811	3,086	0.183249	18,174	8,862
32	99,156	99,135	316,574	22,908	0.072363	3,498	0.207808	20,601	10,045
33	99,113	99,092	300,798	22,963	0.076342	3,689	0.219233	21,724	10,593
34	99,070	99,047	299,757	21,643	0.072202	3,487	0.207344	20,537	10,014
35	99,025	99,001	299,102	19,384	0.064809	3,129	0.186113	18,425	8,985
36	98,977	98,952	300,475	16,510	0.054945	2,651	0.157787	15,613	7,613
37	98,927	98,900	307,983	13,055	0.042388	2,044	0.121725	12,039	5,870
38	98,873	98,843	317,973	10,419	0.032767	1,579	0.094097	9,301	4,535
39	98,814	98,781	341,798	8,118	0.023752	1,144	0.068208	6,738	3,285
40	98,749	98,713	381,291	6,435	0.016876	812	0.048464	4,784	2,333
41	98,678	98,640	403,190	4,424	0.010973	528	0.031512	3,108	1,516
42	98,602	98,563	406,295	2,678	0.006591	317	0.018927	1,865	910
43	98,523	98,481	405,587	1,408	0.003472	167	0.009972	982	479
44	98,439	98,394	375,106	637	0.001699	81	0.004878	480	234
45	98,350	98,303	363,785	234	0.000643	31	0.001848	182	89
46	98,255	98,204	374,953	87	0.000232	11	0.000667	65	32
47	98,154	98,099	376,678	36	0.000096	5	0.000275	27	13
48	98,044	97,986	399,775	15	0.000038	2	0.000108	11	5
49	97,928	97,868	425,617	13	0.000031	1	0.000088	9	4
계	-	-	11,198,424	230,028	0.720825	34.822	2.070014	205.078	100.000

주: 2023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에서 연령 미상을 보정한 후 15세 미만은 15세, 50세 이상은 49세로 분류함; SRB = Sex Ratio at Birth; RF는 연령별 출산율(ASFR)에 조정계수(2.872 ≒ 100,000/34,822)를 곱하여 합산한 값이며, 조정계수는 생명표 인구의 출생아 수(여아; 34,822명)를 생명표 기수(radix(l_0); 100,000명)와 일치시키는 값임.

○ TFR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하는 양성 인구(two-sex population)를 대상으로 한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TFR = 2.1'은 대체출산율에 대한 '근사적인' 표현임(선진국의 사망력 조건; model life-table(p.5) 참고).

- TFR은 표준화(연령) 지표인 동시에 해석상의 이점으로 인해 인구학에서 출산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음.
  - ☞ (정의) 어떤 여성이 **가임기 종료 시점까지 생존하여 연령별로 특정 수준의 출산율을 경험할 때 낳는 평균 출생아 수**(cohort/period). → 가임기 종료 시점까지 생존하여 특정 기간(년)의 연령별 출산율을 경험하는 '가상 코호트'에 속한 여성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period)
  - ☞ 비록 TFR(기간)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이론적' 집단**의 **출산 행동**을 **묘사**하지만, TFR은 특정 기간(년)의 '출생아 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기본적으로 '세대의 규모'를 결정하기에 총인구 및 인구의 연령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침.
- **기본적으로 어떤 인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그 규모(siz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여성 1명이 여아 1명을 출산하는 구조가 지속되어야 함.**
  - 만일 남아와 여아가 같은 수로 태어나고(출생 성비 = 100), 모든 여아가 가임기 종료 시점(예, 50세)까지 생존한다면 평균적으로 2명이 태어나야 자녀 세대가 부모(父 + 母) 세대를 대체함(TFR = 2.0 ← 대체출산율).
  -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생 성비가 불균형한 동시에 가임기 종료 이전에 여성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함. →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대체출산율은 TFR ≠ 2.0.
  - (사례)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인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SRB = 1.05)에서 가임기 종료 이전에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미래 세대에 걸쳐 인구가 '대체'되기 위해서는 **여성 100명**(혹은 남성+여성 = 200명)**이 여아 100명과 남아 105명**을 출산해야 함. → 이러한 조건에서 대체출산율은 'TFR = 2.05'임.
  - 만일 위의 출생 성비(SRB = 1.05) 조건에서 가임기 종료 이전에 사망이 발생한다면 대체출산율(RF)과 'TFR = 2.05'의 차이(= RF − 2.05)는 사망률 차이를 반영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출생 성비가 **자연 성비** 수준이고 **사망률**이 매우 **낮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대체출산율은 TFR 2.06~2.07 수준임. →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사망률의 영향이 성비의 영향보다 줄어든 상황**임.

- (사례 III-2) 2023년 수준(12만 명)의 국제순이동 조건이 지속될 때 'TFR = 1.86' 수준이면 장기적으로 2023년 수준의 인구에 도달함.

Ⅳ. 종합 및 결론

○ '대체출산율'은 출산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며, '폐쇄 안정인구' 조건에서 인구성장률이 0인 '출산력'과 '사망력'의 조합으로 정의됨.

○ 폐쇄인구에서 대체출산율 미만의 출산율은 음(-)의 인구 증가율과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며, 대체출산율을 초과하는 출산율은 양(+)의 인구 증가율과 인구 고령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안정인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체출산율'이 인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모멘텀' 효과에 의해 조정됨.

※ 폐쇄인구 조건에서 현 출산율(2023년) 지속 시 인구 전망: 2023~23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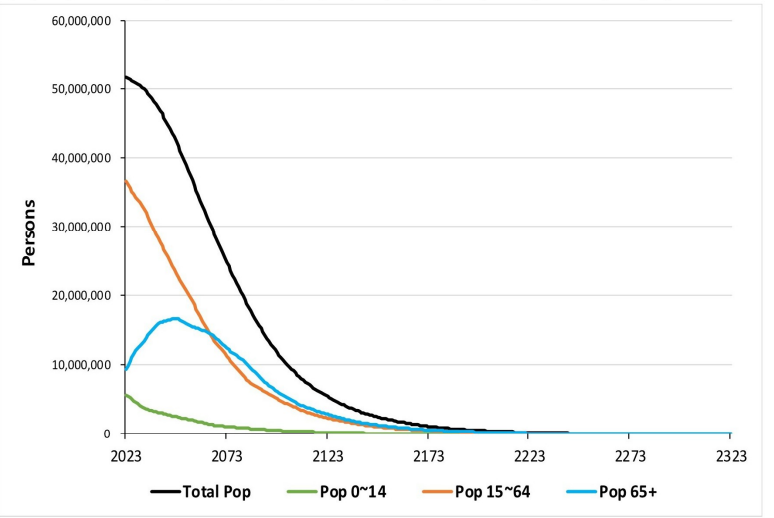



제5장

결론

제1절 성과 종합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제 5 장 결론

제1절 성과 종합

□ 인구정책실의 정체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표 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직제 규정

제18조(인구정책연구실)

인구정책연구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구정책 의제 개발, 평가 방법 및 정책 평가 연구
2. 인구 구조 변화와 연관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연구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의제 개발 및 국가전략연구
4.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화 추이 및 특성 분석
5.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의 내·외생적 영향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6.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구변동 모니터링 수행
7. 인구·가구 추계 모형 연구 및 인구 기초·가공통계 개발
8. 저출산과 연관된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주요 특성 연구
9. 인구고령화와 연관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과 대응 연구
10. 인구정책 국제비교 연구

□ 2025년 운영 결과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인구정책연구실의 주된 업무를 수행함.

- 인구현상 심층 분석 관련 5개 연구과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관련 7개 연구과제,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관련 4개 연구과제 등 총 16개 과제 수행을 통해 인구정책 의제 개발, 평가 방법 및 정책 평가 연구, 인구 구조 변화와 연관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의제 개발 및 국가 전략 연구,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화 추이 및 특성 분석,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의 내·외생적 영향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인구·가구 추계 모형 연구 및 인구 기초·가공통계 개발, 저출산과 연관된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주요 특성 연구, 인구고령화와 연관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과 대응 연구를 수행하였음.

○ 총 4개의 사업 과제를 통해 직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구변동 모니터링, 인구정책 국제비교 등을 수행함.

○ 인구정책연구실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구정책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고, 인구정책연구실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실워크숍을 추진하였음.

□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음.

〔그림 5-1〕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과제 선정 과정

1단계	연구과제계획서 신청 접수	- 인구정책연구실 및 타실로부터 총 19개 과제 접수
⇩		
2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 원내 전문가 2인과 원외 인구정책분야 전문가 2인의 평가 - 평가 기준 ① 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연구과제로서의 학술적 우수성, 사회 정책적 기여도
⇩		
3단계	평가 결과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의 편차 등에 대한 인구정책연구실 검토
⇩		
4단계	과제별 순위 산출	- 각 과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토대로 순위 도출
⇩		
5단계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2026년 과제 확정

○ 5단계 과정을 통해 9개의 2026년 수행될 세부 연구 과제가 편성됨.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 방향

○ 2026년 수행될 세부 과제는 출산·고령화 현상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인구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차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국외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공론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인구 변동 추이 및 요인 분석, 장래인구 변화 및 파급효과 전망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 수행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성인돌봄제도, 생활인구 관련 정책 분석과 제안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안 연구 수행
-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및 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및 정책에 관한 실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국민 홍보 및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표 5-2〉 2026년 과제 편성

구분	분야		과제명
	대영역	소영역	
연구 과제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인구 변동 추이 및 요인 분석	인구변동의 단기적 추세 및 변이 분석과 모니터링 방안 가족과 출산 조사(2015~2024)를 활용한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 심층 분석 연구
		장래인구변화 및 파급효과 전망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 인구변동과 사회보장 수요 예측 연계를 중심으로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추계 연구
	인구 정책	저출산 대응	일과 돌봄의 새로운 균형(a new equlibrium)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세부1). 일과 돌봄의 성평등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세세부2). 일과 돌봄이 조응하는 근로시간과 돌봄지원 정책 연구 (세세부3). 고용형태별 부모의 생애과정과 일·돌봄 균형
		고령화 및 축소사회 대응	초고령사회 성인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과제
사업 과제	연보발행 및 연구 기반 조성		인구변동 연보 발행 및 통계 시각화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인구정책 총괄기구를 중심으로 인구포럼 운영 2026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 단기 및 중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연구 방향

○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실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은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혁과 지속가능성, 불평등 완화, 생활 기반 중심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음.

- 출산 장려나 이민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인구 규모 조정 정책보다는, 양육 환경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지역 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통해 인구 변동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이해됨.

○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생애과정 관점에서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노후 등 주요 생애 전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노동·주거 정책을 인구학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연구를 주요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더해 단기적인 인구 변동과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분석과 대응 전략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 대응의 실질적인 추진(실현) 가능성, 실효성 등을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전문분야별 검토 필요

- 제시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내용이 그간의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논의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과 이에 따른 정책 수요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재구조화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 도출 필요

□ 단기 및 중기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연구 주제

○ 첫 번째 주제는 지역인구일 것임.

- 향후 3년 이내 '지역 인구'가 화두가 될 것이므로 지역 인구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가 중요함.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원내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인구정책실 내로 편재되어 인구+서비스실+보건의료실 협업 구조로 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인구 대응은 단순 저출산이 아니라, 지역이동에 대해 연구, 지역일자리와 연동한 인구 대응, 지역 청년인구 이동 유인요소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및 수도권 집중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인구불균형 및 그 파급효과가 인구 핵심키워드임.
- 지역 간 불균형(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역 인구감소 대응한 생활인프라, 필수시설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두 번째 주제는 인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임.

- 총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 집단의 세대내/세대간/지역간 계층화와 불균형, 이로 인한 인구현상의 양상과 예측이 필요
- 저출산 추세의 반등 지속 여부(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
- 인구행태의 새로운 변화양상과 원인 분석이 필요. 특히 2026~2027년을 포함한 중기 인구정책 국면에서는 인구 변동 자체를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새롭게 나타나는 인구행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분석하며, 그 사회적 함의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임.전통적인 혼인·출산·사망 중심의 분석을 넘어, 기존 인구지표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비전통적 인구행태와 새로운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혼외출산

의 인구학적 배경과 원인, 생식보조술을 활용한 출산의 확산 양상, 국내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출산의 구조적 특징, 고령출산의 실태와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현상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연구는 인구 변동의 질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세 번째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인력 대응 체계임.

- 돌봄인력난에 대비하는 수요 예측-인력 양성-모니터링이 국정과제에 담겨있으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법안 발의되어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고용정보원에 돌봄인력 수급 전망 의뢰, 노동실태에 대한 정보 축적(고용정보분석과), 경사노위 의제로 상정, 고용영향평가 확대 등 다방면으로 대응을 계획하고 있음 .
- 현재 돌봄인력 수급 전망 연구 2년차 진행 중임. 이를 체계화 및 발전시킬 필요
- AI, 통합돌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AI, 통합돌봄, 아빠 육아휴직)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과 향후 대응을 논의할 필요

○ 네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임.

-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 및 공간(지역)적 불균형 분포 문제의 양상 분석과 정책 방향 제시 필요
- 지역 산업전략, 청년의 일에 대한 가치·환경변화(그냥쉼 청년 비율 최고치) 및 사회정책 통합적 접근 필요(정신건강 등)

- 이주민 이슈 역시 다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함. 일하고(고용노동부), 아이키우고(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미래를 설계하고(교육부) 이 모든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이주배경 가정은 전형적인 근로빈곤층 가구로 빈곤 및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로 개발할 여지가 있음(현재 이주배경 가구 보육서비스 접근성, 이주배경 청년 고용, 이주민 공공부조 해외사례, 이주민 돌봄노동자 등에 대한 원내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다섯 번째는 기술 변화와 인구 변동임.

-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상황에서 기술 혁신의 역할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탐색하고, 인구정책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여섯 번째는 세부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추진 기반과 관련된 연구임.

- 남성 육아휴직이나 난임 지원 서비스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주요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의 특성과 이용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나 부작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보완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

- 내실 있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작업(그간 추진된 정책 대응 사업 기획 및 추진과정, 결과에서의 타산지석, 반면교사 요인의 심층적인 검토 및 정리) 및 구체적 수준으로의 실질적인 향후 개선 대안 도출 필요(법제도 기반, 부처(부서)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정책사업 주체별 기획 및 추진력 제고 방안 등)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정립

○ 인구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단기(5년) 국정과제와 중장기 인구정책 과제(예, 교육, 노동시장, 성평등)의 체계적 연계 및 실행 방안 마련

○ 향후 인구정책 영역에서는 거버넌스 개편과 부처 간 조정·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큼. 인구문제가 단일 정책이나 개별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핵심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단·중기 인구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 작업 역시 중요함. 이는 향후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정책 간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의 경우 무엇보다도 정책 범위 확대 및 기능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별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